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최종의정서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리히텐슈타인공국·노르웨이왕국 및 스위스연방(이하 집합적으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라 한다)의 전권대표들은 당사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종결짓기 위하여 회합하여,

- (1)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서명하고,
- (2) 이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 (3) 이에 관한 양해록에 서명하는 데에 합의한다.

이 계기에, 대한민국과 해당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전권대표들은 또한,

- (1)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에 의한 의료기기에 관한 선언을 채택하고,
- (2)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리히텐슈타인공국·스위스연방 간의 투자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고,
- (3)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고,
- (4)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고,
- (5)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에 서명하는 데에 합의한다.

이 모든 협정문들은 이 최종의정서에 첨부된다.

2005년 12월 15일 홍콩에서 영어로 1부 작성된 원본이 노르웨이 정부에 기탁된다. 기탁치는 모든 서명국들에게 인증사본을 전달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아이슬란드공화국을 대표하여

리히텐슈타인공국을 대표하여

노르웨이왕국을 대표하여

스위스연방을 대표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 문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리히텐슈타인공국·노르웨이왕국 및 스위스연방(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라 한다)(이하 집합적으로 “당사국들”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존재하는 중요한 유대를 고려하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이러한 유대를 강화하고, 이로써 긴밀하고 영속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하며,

자유무역지대가 당사국들의 영역에서 보다 확장되고 확고한 상품 및 서비스 시장을 창설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을 조성하여, 이로써 세계시장에서 당사국의 기업들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확신하며,

국제연합현장과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당사국들의 약속을 재확인하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무역에 대한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특히 유럽과 아시아 간,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하고 보다 넓은 국제적인 협력에 대하여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을 결의하며,

무역과 투자 흐름의 확대를 통하여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고, 실질소득의 크고 지속적인 증가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 협정이 당사국들 간 경제·무역 및 투자 관계를 촉진하는 환경을 창출할 것임을 확신하며,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이에 따라 협상된 그 밖의 협정(이하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한다)과 당사국들이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협력에 관한 그 밖의 다자·양자적 합의문서상의 각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기반으로 하며,

무역자유화가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이

라는 목적에 따라 세계자원의 최적의 사용을 고려하여야 함을 인식하며,

위 내용을 추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장 총 칙

제 1.1 조 목 적

1.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 지대를 창설한다.
2. 시장경제 간 무역관계에 기반을 둔 이 협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1994년도 GATT”라 한다) 제24조에 합치되게 상품무역의 자유화 및 촉진을 달성한다.
 - 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하 “GATS”라 한다) 제5조에 합치되게 서비스무역의 자유화를 달성한다.
 - 다. 당사국 경제에서의 경쟁, 특히 당사국들 간 경제적 관계에 관련된 경쟁을 촉진한다.
 - 라. 당사국들의 정부조달 시장의 상호적인 추가 자유화를 달성한다.
 - 마. 국제적 기준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확보한다. 그리고
 - 바. 이러한 방식으로,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투자흐름의 증가를 이끄는 환경을 개발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한다.

제 1.2 조 지리적 범위

1. 부속서 I 을 저해함이 없이, 이 협정은 다음에 적용된다.
 - 가. 당사국의 영토·내수 및 영해와 국제법에 따른 영역 위의 상공. 뿐만 아니라
 - 나.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이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여 취한 조치에 대하여는 영해 밖
2. 부속서 II는 노르웨이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 1.3 조 이 협정이 규율하는 무역 및 경제 관계

1. 이 협정의 규정은 한편으로 대한민국과, 다른 한편으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무역 및 경제 관계에 적용되나, 개별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무역 관계에 대하여는,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적용되지 아니한다.
2. 「1923년 3월 29일의 스위스연방과 리히텐슈타인공국 간의 조약」에 의하여 설립된 관세동맹의 결과로, 스위스연방은 그 조약에 포함되어 있는 사안에 있어 리히텐슈타인공국을 대표한다.

제 1.4 조 투자

투자에 대하여, 일방으로 대한민국과 타방으로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및 스위스 간에 별개로 체결된 투자 협정을 참조한다. 이들 당사국들에 대하여 그 협정은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 문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1.5 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이 협정의 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과 당사국들이 회원국인 그 밖의 국제협정

상의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1.6 조 지역 및 지방 정부

각 당사국은 자국의 지역 및 지방 정부 또는 당국이, 그리고 중앙·지역 및 지방 정부 또는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이 자국 영역 안에서 이 협정상의 모든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도록 보장한다.

제 1.7 조 특혜 협정

이 협정은 이 협정에 의하여 규정된 무역 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관세동맹, 자유무역지대, 국경무역을 위한 협정 및 그 밖의 특혜 협정의 유지 또는 설립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 2 장 상품 무역

제 2.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가 1994년도 GATT에 의하여 규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다음의 상품에 적용된다.

- 가. 부속서 III에 열거된 상품을 제외하고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라 한다) 제25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모든 상품
- 나. 부속서 IV에 규정된 가공농산물. 그리고
- 다. 부속서 V에 규정된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물

2. 대한민국과 각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양자적으로 농산물 무역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협정들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 문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2.2 조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에 관한 규정은 부속서 I에 규정된다.

제 2.3 조 관세

1. 이 협정이 발효한 때에는,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부속서 VI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모든 관세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부과금을 철폐한다.

2.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새로운 관세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부과금은 도입되지 아니한다.

3. “수입 및 수출에 관한 관세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부과금”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된 모든 형태의 부가세 또는 부가부과금을 포함하여,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 또는 부과금을 포함하나, 1994년도 GATT 제3조 및 제8조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부과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 2.4 조 관세의 기준 세율

1. 각 상품에 관하여 부속서 IV·V 및 VI에 규정된 연속적 감축이 적용될 관세의 기준 세율은 2005년 1월 1일 적용되는 최혜국대우(이하 “MFN”이라 한다) 관세율로 한다.

2. 당사국이 특정 시점에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하나 이상의 상품에 대한 MFN 관세율을 감축할 경우, 그 관세율이 부속서 IV·V 및 VI에 규정된 관세철폐계획에 따라 계산된 관세율보다 낮을 경우 및 낮은 기간 동안 그 관세율이 적용된다. 감축된 MFN 관세율이 적용되는 동안, 당사국들은 감축된 MFN 관세율에 기초하여 철폐계획을 지속하기 위하여, 요청에 따라, 협의한다.

3. 부속서 IV·V 및 VI에 따라 계산되어 감축된 관세율은 소수점 첫째 자리 까지 반올림하여 적용된다.

제 2.5 조 수입 및 수출 제한

1. 이 협정이 발효된 때에는, 부속서 V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들은 쿼타, 수입 또는 수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효력을 발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 및 조세 외의 당사국들 간의 상품 무역에 관한 모든 수입이나 수출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각 당사국의 모든 상품에 대하여 철폐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조치는 새로이 도입되지 아니한다.

제 2.6 조 내국민대우

당사국들은 그 주해를 포함한 199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내국민대우를 적용한다. 그 규정은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

제 2.7 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2. 당사국들은 기술적 협의 및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접촉선의 성명 및 주소를 교환한다.

제 2.8 조

기술규정

1.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에 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이하 “TBT 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협정은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

2.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의 제도에 대한 상호 이해를 높이고 각 당사국의 시장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국들은 특히 다음에 협력한다.

- 가. 적합성평가절차를 포함한, 기술규정에 대한 기초로서 국제표준의 역할을 강화
- 나. 국제표준화기구(ISO)/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관련 표준 및 지침을 기초로 한 적합성평가기관의 인증을 촉진. 그리고
- 다. 각 당사국의 인증 체제 또는 기관 간 적절한 다자협정에 따라 인정되고 제2항나호에 규정된 기관의 적합성평가 결과의 상호 수용을 촉진

3. 당사국들은, 이 조의 맥락에서, 정보의 교환을 신속히 확대하고 서면의 협의 요청에 대하여 우호적으로 고려한다.

4. 당사국들은 다른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수행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에 대한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방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한다.

- 가. 다른 당사국의 영역 안에 위치한 기관이 특정 규정에 대하여 수행한 적합성평가절차의 결과에 대한 상호 수용에 관한 협정
- 나. 적합성평가기관에 자격을 부여하는 인정 절차
- 다. 정부의 적합성평가기관 지정

라. 다른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수행된 적합성평가 결과에 대한 당사국의 인정

마. 각 당사국 영역에 위치한 적합성평가기관 간의 자발적 약정. 그리고

바. 공급자의 적합성 선언에 대한 수입 당사국의 수용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늦어도 3년 이내에 제8.1조에 규정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에서 당사국들 간 적합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수용에 관하여 진전사항을 평가하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추가적인 조치에 합의한다.

5.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당사국들은 특정 기술규정, 표준 및 적합성평가 절차의 적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고, 대한민국 또는 하나 이상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당사국들 간 무역에 장애를 초래하였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다루고, TBT 협정에 합치하는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전문가 협의를 가질 것을 합의한다. 이러한 협의는 공동위원회에 통보된다.

제 2.9 조 보조금 및 상계조치

1. 보조금 및 상계조치와 관련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제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994년도 GATT 제6조 및 제16조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2. 당사국이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제11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서 협의가 있다고 주장된 모든 보조금의 존재·정도 및 효과를 판정하기 위한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조사 개시를 검토 중인 당사국은 조사 대상이 된 상품의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30일 동안의 기간을 둔다. 당사국이 통지수령 후 10일 이내에 요청할 경우 협의는 공동위원회에서 개최한다.

제 2.10 조

반덤핑

1. 당사국들은 다음을 조건으로 1994년도 GATT 제6조 및 「1994년도 GATT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이하 “「반덤핑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이라 한다) 상의 권리와 의무를 보유한다.

- 가. 당사국들은 다른 당사국에 대하여 반덤핑 절차의 개시를 자제하도록 노력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국이 적합하게 기재된 신청서를 접수하고 「반덤핑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른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당사국은 상품을 덤플링하고 있는 것으로 주장되는 다른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하여 협의를 허용한다. 협의의 결과는 그 밖의 당사국들에게 전달된다.
- 나. 당사국이 「반덤핑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을 하는 당사국은 덤플링마진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여도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할 경우 그러한 낮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낮은 관세 적용” 원칙을 적용한다.

2.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5년이 경과한 때, 당사국들은 당사국 사이에 반덤핑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공동위원회에서 검토한다. 당사국들이 첫 번째 검토 후에 가능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국들은 그 이후부터 공동위원회에서 이 사안의 검토를 격년 단위로 수행한다.

제 2.11 조

양자긴급수입제한조치

1.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어느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 수입 당사국의 영역 안에 동종 또는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하는 조건하에서,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으로 수입 당사국의 영역 안으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이 조의 다음 항들의 규정

을 조건으로 하여, 피해를 구제하거나 방지하는데 필요한 긴급조치를 최소한도로 취할 수 있다.

2. 긴급조치는,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조사에 의거하여, 증가된 수입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거나 심각한 피해의 초래가 우려된다는 명백한 증거에 근거하여서만 취하여야 한다.

3. 이 조 상의 긴급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즉시,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 밖의 당사국들 및 공동위원회에 통지한다. 통지는 증가된 수입에 의하여 초래된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의 우려에 관한 증거, 관련 상품과 제안된 조치에 관한 정확한 기술, 제안된 개시일, 예상되는 존속기간 및 그 조치의 점진적인 제거를 위한 일정을 포함하는 모든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국은 그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자유화의 형태로 보상을 제공받는다.

4.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그 상품에 관하여 이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추가적 관세율 인하의 정지. 또는

나. 그 상품에 대하여 다음 중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수준까지의 관세율 인상

- (1) 그 조치가 취하여질 때에 적용된 MFN 관세율. 또는
-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 일에 적용된 MFN 관세율

5. 긴급조치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취하여야 한다. 매우 예외적 상황에서, 공동위원회의 검토 후, 조치는 최장 3년의 기간까지 취하여질 수 있다. 조치 종료 후 최소 3년의 기간 동안, 종전에 그러한 조치의 대상이 되었던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는 어떠한 조치도 적용되어서는 아니된다.

6. 공동위원회는 사안의 상호 수용 가능한 해결방안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3항에 규정된 정보를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한다. 그러한 해결방안이 없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문제를 치유하기 위하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채택할 수 있고, 상호 합의된 보상이 없는 경우, 조치의 대상이 된 상품의 당사국은 보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보상조치는 즉시 그 밖의 당사국들과 공동위원회에 통지되어야 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 및 보상조치의 선택에 있어 이 협정의 기능을 최소한으로 저해하는 조치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보상조치는 통상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갖는 양허의 정지 또는 긴급조치로부터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 관세액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 기간 동안만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적용되고 있는 동안에만 그 조치를 적용한다.

7. 그 조치가 종료될 때, 관세율은 조치가 없었더라면 유효하였을 세율이 된다.

8. 자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당사국은 증가 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심각한 피해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 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예비판정에 따라 잠정 긴급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당사국은 그 밖의 당사국들과 공동위원회에 즉시 통지한다.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조치를 포함하여 제2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적절한 절차가 개시되어야 한다. 모든 보상은 잠정 긴급조치 및 긴급조치의 총 적용기간에 기초한다.

9. 모든 잠정조치는 늦어도 200일 이내에 종료되어야 한다. 잠정조치의 적용 기간은 제4항에 규정된 조치의 존속기간과 그 연장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2항에 규정된 조사가 제1항의 조건이 충족된다는 조사결과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은 즉시 반환되어야 한다.

10.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5년이 경과한 때, 당사국들은 당사국 사이에 긴급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공동위원회에 서 검토한다. 당사국들이 첫 번째 검토 후에 가능성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당사국들은 그 이후부터 공동위원회에서 이 사안의 검토를 격년 단위로 수행한다.

제 2.12 조 국제수지 위기

1. 당사국들은 국제수지 목적의 제한적인 조치의 부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심각한 국제수지 위기에 처하거나 그러한 위기에 처할 급박한 우려가 있는 당사국은 1994년도 GATT와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세계무역기구양해」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무역제한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그 조치는 한정된 기간 동안 비차별적으로 취하여지고 국제수지 상황을 치유하는데 필요한 이상으로 취하여져서는 아니된다. 1994년도 GATT와 「국제수지 규정에 관한 세계무역기구양해」의 관련 규정은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
3. 이 조 상의 조치를 도입하는 당사국은 그 밖의 당사국들과 공동위원회에 즉시 통보한다.

제 2.13 조 예외 및 그 밖의 권리와 의무

당사국들의 다음의 권리와 의무는 1994년도 GATT의 해당 조항들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조항들은 이 협정에 통합되어 이 협정의 일부가 된다.

- 가. 국영무역기업에 관하여, 제17조와 「제17조의 해석에 관한 양해」
- 나. 일반적 예외에 관하여, 제20조. 그리고
- 다. 안보 예외에 관하여, 제21조

제 3 장 서비스무역

제 3.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이 그리고,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이 취하는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이 장은 제4.1조에 규정된 분야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 분야의 조치에 적용된다. 이 장은 「항공운송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 제3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운수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또는 항공운수권의 행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3.4조·제3.5조 및 제3.6조는 상업적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 공급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서비스의 정부기관의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규정 또는 요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3.2 조 GATS 규정의 통합

이 장의 규정에서 GATS 규정이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언제나, GATS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이 양해된다.

- 가. “회원국”이라 함은 “당사국”을 말하며, 예외적으로 “회원국 간”은 “세계무역기구 회원국 간”을 말한다.
- 나. “양허표”라 함은 제3.16조에 규정되고, 부속서 VII에 포함된 양허표를 말한다. 그리고
- 다. “구체적 약속”이라 함은 제3.16조에 규정된 양허표 상의 구체적 약속을 말한다.

제 3.3 조 정 의

이 장의 목적상,

1. GATS 제1조의 다음의 정의는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 가. “서비스무역”
 - 나. “서비스”. 그리고
 - 다.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
2. “서비스 공급자”라 함은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공급하고자 하는 모든 인을 말한다.¹⁾
3. “당사국의 자연인”은 당사국의 법률상, 그 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그 당사국이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관하여 영주권자에게도 자국 국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대우를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의 영주권자이다.
4. “당사국의 법인”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가. 그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달리 조직되고,
 - (1) 어떠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종사하거나,
 -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그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1)의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법인,
 - 또는
 - 나.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법인
 - (1) 그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 (2) 가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
5. GATS 제28조의 다음의 정의는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 가. “조치”
 - 나. “서비스의 공급”
 - 다.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회원국의 조치”

1) 서비스가 법인에 의하여 직접 공급되지 아니하고 지점이나 대표사무소와 같은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공급되는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공급자(즉, 그 법인)는 그러한 주재를 통하여 이 장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에게 주어지는 대우를 부여받는다. 그러한 대우는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공급하고자 하는 상업적 주재에까지 부여되며, 서비스가 공급하거나 공급하고자 하는 영역 밖에 위치한 공급자의 그 밖의 부분에까지 부여될 필요는 없다.

- 라. “상업적 주체”
- 마. 서비스의 “분야”
- 바. “다른 회원국의 서비스”
- 사. “서비스의 독점 공급자”
- 아. “서비스 소비자”
- 자. “인”
- 차. “법인”
- 카. “소유”. “지배” 및 “제휴”. 그리고
- 타. “직접세”

제 3.4 조 최혜국대우

1. GATS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취해진 조치를 저해함이 없이, 그리고 부속서 VIII에 포함된 MFN 면제목록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다른 당사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비당사국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즉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부여한다.
2. 당사국들 중 하나가 GATS 제5조 또는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체결하고 통보한 그 밖의 협정에서 부여하는 대우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한다.
3. 각 당사국이 제2항에 규정된 형태의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협정에서 부여된 혜택을 협상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요청한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4. 인접국에 부여되는 혜택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2조제 3항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3.5 조 시장접근

시장접근에 대한 약속은 GATS 제16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3.6 조

내국민대우

내국민대우에 대한 약속은 GATS 제17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3.7 조

추가적 약속

추가적 약속은 GATS 제18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3.8 조

국내규제

국내규제에 대한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6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3.9 조

인정

- 당사국이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된 면허나 증명을 협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기존의 또는 장래의 것인지에 관계없이, 자국과 그러한 협정이나 약정에의 가입을 협상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협정이나 약정을 협상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다른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한 교육이나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된 면허나

증명도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다른 당사국이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2. 그러한 협정이나 약정, 또는 자율적인 인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관련 규정, 특히 GATS 제7조와 합치하여야 한다.

3. 부속서 IX는 무엇보다도 서비스 공급자의 교육이나 경험, 자격, 면허, 증명 또는 인증의 상호인정에 적용된다.

제 3.10 조 자연인의 이동

서비스를 공급하는 당사국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GATS 부속서」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부속서는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3.11 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3.12 조 영업관행

영업관행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9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3.13 조 지불 및 송금

1. 당사국은, 자국의 구체적 약속을 조건으로 그리고 제3.14조에서 상정된 상황을 제외하고, 다른 당사국과의 서비스 공급과 관련한 경상거래에 대하여 국제적인 송금 및 지불에 대한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통화기금협정에 합치하는 외환조치의 이용을 포함하여, 국제통화기금협정에 따른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당사국은, 제3.14조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국제통화기금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본거래에 대하여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불합치하게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 3.14 조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1. 당사국들은 국제수지를 보호하기 위한 제한을 부과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그러한 제한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12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3. 그러한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당사국은 이를 신속하게 공동위원회에 통보한다.

제 3.15 조 예 외

일반적 및 안보상의 예외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14조와 제14조의2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3.16 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제3.5조·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행한 구체적 약속을 양허표에 규정한다. 그러한 구체적 약속이 행하여진 분야에 대하여, 각 양허표는 GATS 제20조제1항가호 내지 라호에 규정된 사항을 명시한다.
2. 제3.5조 및 제3.6조 모두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GATS 제20조제2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처리된다.
3. 당사국들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는 부속서 VII에 규정된다.
4. 통신서비스와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에 적용되는 시장접근·내국민대우 및 추가적 약속의 특별한 측면은 부속서 X과 XI에서 다루어진다.

제 3.17 조 양허표의 수정

당사국들은, 어느 당사국의 서면요청이 있는 경우,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상의 구체적 약속의 수정 또는 철회를 고려하기 위한 협의를 개최한다. 그 협의는 요청 당사국이 요청한 후 3월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그 협의에서, 당사국들은 호혜적인 약속의 일반적인 수준이 그러한 협의 이전에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서 규정된 것보다 무역에 불리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양허표의 수정은 제8.1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

제 3.18 조 투명성

투명성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3조제1항·제2항 및 제3조의2에 의하여 규정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3.19 조 검 토

당사국들 간 서비스무역의 추가적인 자유화를 목적으로, 당사국들은 각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와 MFN 면제목록을 매 2년마다 검토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한 첫 번째 검토는 이 협정이 발효한 이후 늦어도 3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 3.20 조 부속서

이 협정에 첨부된 다음의 부속서는 이 장의 통합된 일부를 구성한다.

- 부속서 VII (구체적 약속의 양허표)
- 부속서 VIII (MFN 면제목록)
- 부속서 IX (상호 인정)
- 부속서 X (통신 서비스). 그리고
- 부속서 XI (방송프로그램의 공동제작)

제 4 장 금융서비스

제 4.1 조 적용범위

1. 이 장은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이, 그리고 중앙·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이 취하는 금융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제4.4조·제4.5조 및 제4.6조는 상업적 재판매 또는 상업적 판매를 위한 서비스 공급에 사용할 목적이 아니라 정부의 목적으로 구매되는 정부기관의 금융서비스 조달을 규율하는 법률·규정 또는 요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3장은 이 장에 명확하게 규정된 경우에, 제1항에서 기술된 조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 4.2 조 GATS 규정의 통합

제3.2조는 이 장에 적용된다.

제 4.3 조 정의

1. 제3.3조는 이 장에 적용되며, 제3.3조제1항다호는 예외로 한다.
2. 「금융서비스에 관한 GATS 부속서」의 다음의 정의는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 가. “정부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공급되는 서비스” (부속서 제1항나호 및 다호)
 - 나. “금융서비스” (부속서 제5항가호)
 - 다. “금융서비스 공급자” (부속서 제5항나호). 그리고
 - 라. “공공기관” (부속서 제5항다호)

제 4.4 조 최혜국 대우

제3.4조는 이 장에 적용된다.

제 4.5 조 시장접근

시장접근에 대한 약속은 GATS 제16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4.6 조 내국민대우

1. 내국민대우에 대한 약속은 GATS 제17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2. 그에 더하여,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는 조건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에 설립된 다른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불 및 청산 제도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이용가능한 공적 자금조달 및 재금융 기관에 대한 접근을 부여한다. 이 항은 당사국의 최종 대부기관에 대한 접근을 부여하려는 의도는 아니다.

3.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자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와 동등한 기초하에 금융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규제기관, 증권 또는 선물 거래소 또는 시장, 청산기관, 또는 그 밖의 조직 또는 협회에 가입 또는 참여, 또는 접근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당사국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그러한 기관에게 금융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특권 또는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당사국은 그러한 기관이 자국의 영역에 설립된 다른 당사국의 금융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한다.

제 4.7 조 추가적 약속

추가적 약속은 GATS 제18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4.8 조 국내규제

1. 국내규제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6조에 의하여 규율되

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다음을 포함하여 건전성 사유로 합리적인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투자자, 예금자, 보험계약자, 보험청구자, 금융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신탁상의 의무를 지고 있는 인, 또는 유사한 금융시장 참여자의 보호.
또는

나. 당사국의 금융제도의 보전 및 안정성의 확보

그러한 조치가 이 장의 규정과 합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조치는 그러한 규정에 따른 당사국의 약속이나 의무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상으로 부담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3.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개별 고객의 사적 사항 및 계좌와 관련된 정보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비밀 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4.9 조

인 정

1. 제3.9조는 이 장에 적용된다.

2. 그에 더하여, 당사국이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자국의 조치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비당사국의 건전성 조치를 인정할 경우, 그 당사국은, 동등한 규정·감독·그러한 규정의 이행이 존재하고, 적절한 경우, 그 협정이나 약정의 당사국 간에 정보 공유에 관한 절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자국과 그러한 협정이나 약정에의 가입을 협상하거나 또는 이와 상응하는 협정이나 약정을 협상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다른 당사국에게 제공한다.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그러한 인정을 부여할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에게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제 4.10 조 자연인의 이동

서비스를 공급하는 당사국의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GATS 부속서」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부속서는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4.11 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4.12 조 영업 관행

영업 관행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9조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4.13 조 지불 및 송금

제3.13조는 이 장에 적용된다.

제 4.14 조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제3.14조는 이 장에 적용된다.

제 4.15 조

예 외

일반적 및 안보상 예외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제 4.16 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각 당사국은 제3.1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4.3조제2항나호에 정의된 서비스에 대하여 행한 구체적 약속을 제3.16조에 규정된 양허표에 명시한다.

제 4.17 조

양허표의 수정

제3.17조는 이 장에 적용된다.

제 4.18 조

투명성

1. 투명성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GATS 제3조제1항 및 제2항과 제3조의2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 규정은 이 장에 통합되어 이 장의 일부가 된다.

2. 그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금융서비스에 있어서 규제상의 투명성을 증진하기로 약속한다. 따라서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규제 절차를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적절히 협의한다.

- 가. GATS에서 당사국들이 수행한 작업과 금융서비스 무역에 관련한 그 밖의 회의에서 당사국들의 작업. 그리고
- 나. 공개적으로 소통되거나 달리 입수 가능한, 식별할 수 있는 정책목표 및 명확하고 일관되게 적용되는 규제절차의 규제적 투명성의 중요성

제 4.19 조

검 토

제3.19조는 이 장에 적용된다.

제 4.20 조 금융서비스 소위원회

1. 금융서비스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공동위원회 산하에 설치한다. 각 당사국의 주요 대표는 이 협정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금융당국 출신으로 한다.
2. 소위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 가. 이 장의 이행을 관리하고, 그 기능을 평가하며, 심화 발전을 감독한다.
 - 나. 당사국이 소위원회에 제기한 금융서비스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한다.
3. 소위원회는 공동위원회 회의와 함께 또는 당사국들 간에 달리 합의한 바에 따라 소집된다.
4. 대한민국 그리고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중 하나가 소위원회의 공동의장이 된다. 소위원회는 컨센서스에 의하여 운영된다.

제 4.21 조 분쟁해결

1. 제9장의 관련 규정은 이 장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에 대하여 이 조에 의하여 수정된 대로 적용된다.
2. 제9장에 따라 개최된 금융서비스에 관련된 협의는 이 협정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 또는 금융당국자의 공무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당사국들은 협의 결과를 소위원회에 보고한다.
3. 제9.4조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 적용된다.

- 가. 분쟁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경우, 패널은 제4항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으로 전원 구성된다. 그리고
 - 나. 그 밖의 경우,
 - (1) 각 분쟁당사국은 제9.5조제7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을 선발할 수 있다. 그리고
 - (2) 피소 당사국이 제4.8조를 원용하는 경우,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패널의 의장은 제4항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4.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금융서비스 패널위원은,
- 가. 제9.5조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리고
 - 나. 금융기관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법률 또는 관행에 대한 전문식견 또는 경험을 보유하여야 한다.
5. 제9.10조제5항에 대하여, 실행가능한 경우 언제나 다음이 적용된다.
- 가. 분쟁중인 조치가, 금융서비스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우선 금융서비스 분야만의 혜택을 중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나. 분쟁중인 조치가, 금융서비스 분야 및 그 밖의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우선 각 분야에서 피소의 대상이 된 조치의 효과에 상응하는 효과만큼 각 분야에서 혜택을 중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는
 - 다. 분쟁중인 조치가, 금융서비스 분야 외의 분야에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혜택을 중지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5 장

경 쟁

제 5.1 조 기업과 관련된 경쟁 규칙

1. 당사국들은 반경쟁적 기업행위가 이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혜택을 저해 할 수 있음을 인식한다. 그러므로 그러한 행위는 그것이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 연합 회원국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 이 협정의 적절한 운용과 양립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반경쟁적 기업행위”는,
 - 가. 당사국들의 영역의 전체에서 또는 그 실질적 부분에서 지배적 지위에 있는 하나 이상 기업의 남용행위 뿐만 아니라 기업 간의 모든 합의, 사업자 단체의 결정과 기업 간 담합 관행으로서 경쟁의 방해·제한 또는 왜곡을 그 목적이나 효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 나. 상품 또는 서비스의 무역에 대하여 발생할 수 있다. 그러한 행위는 민간 또는 공공 기업에 의하여, 또는 그 기업에게 부여된 특정업무를 저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별하거나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받는 기업에 의하여 초래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기업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창설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 당사국들은 반경쟁적 기업행위를 제거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경쟁법을 적용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한 목적으로, 당사국들은 관련된 집행활동에 대하여 서로 통보하고 정보를 교환한다. 당사국은 자국법상 비밀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되어서는 아니된다.
5. 요청이 있을 때, 당사국들의 경쟁당국 및/또는 그 밖의 관련 당국은 반경쟁적 기업활동의 제거를 촉진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 요청받은 당사국은 그 요청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한다.
6.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 영역에서의 반경쟁적 기업행위가 당사국들 간 무역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하는 경우, 협의는 요청이 있을 때 공동위원회에서도 개최된다. 협의는 요청이 접수된 지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해당

당사국들은, 공동위원회가 그 사안을 검토하고 해당 당사국들이 그 대상이 된 행위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적절한 경우 이 협정상의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재정립하는 것을 돋기 위하여, 모든 지원과 정보를 공동위원회에 제공한다.

제 6 장 정부조달

제 6.1 조 적용범위

1. 정부조달에 대한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는 「정부조달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이하 “GPA”라 한다)에 의하여 규율된다.
2.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 제도에 관한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정부조달 시장의 추가적인 자유화 및 상호 개방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위원회에서 협력할 것에 합의한다.

제 6.2 조 정보교환

정부조달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당사국들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정부조달 분야의 규칙 및 규정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책임질 접촉선을 부속서 XII에 명시한다.

제 6.3 조 추가 협상

1. GPA의 개정을 목표로 하는 협상의 틀에서 각 당사국의 정부조달 시장의 추가적 자유화에 대한 당사국들 간의 양자 협상이 종결되는 때에, 추가적 자유화와 관련이 있는 한 GPA의 주요 부분을 개정하는 협정의 규정을 포함하여, 그러

한 자유화는 이 협정에 포함된다. 공동위원회는 이러한 양자 협상이 종결된 후 3월 이내에 이러한 취지의 결정을 한다. 이러한 결정은 당사국들의 비준 또는 수락을 조건으로 한다.

2. 이 협정이 발효된 후, 당사국이 비당사국에게 자국의 정부조달 시장에의 접근에 관한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다른 당사국에게 이러한 혜택의 확대 가능성에 관한 협상을 개시할 것에 합의한다.

제 7 장 지적재산권

제 7.1 조 지적재산의 보호

1. 당사국들은 이 조·부속서 XIII과 부속서 XIII에서 규정된 국제협정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충분하고, 효과적이며 비차별적인 보호를 부여하고 보장하며, 위조 및 도용을 포함하여, 침해에 대응한 그 권리의 집행을 위한 조치를 제공한다.

2. 당사국들은 자국이 자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이 의무로부터의 면제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이하 “TRIPS 협정”이라 한다)의 제3조 및 제5조의 실체적 규정에 따라야 한다.

3. 지적재산 보호에 대하여, 당사국들은, TRIPS 협정, 특히 그 협정의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제3국의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당사국의 국민에게 부여한다.

4. 당사국들은, 어느 당사국이 공동위원회에 요청하는 때, 그리고 당사국들의 컨센서스를 조건으로 하여, 지적재산권 보호의 실제적인 수준에 의하여 야기된 무역 왜곡을 회피하거나 또는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당사국들 간의 무역 및 투자

를 촉진시키는 지적재산의 보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지적재산에 관한 규정을 적절하게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제 7.2 조 지적재산의 범위

“지적재산”이라 함은 컴퓨터 프로그램 및 자료 편집을 포함하는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상품 및 서비스의 상표권, 원산지 명칭을 포함하는 지리적 표시, 산업디자인, 특히, 식물 다양성, 집적회로 배치설계와 미공개 정보를 특히 지칭한다.

제 7.3 조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협력

1. 당사국들은 사회적·경제적 및 문화적 발전의 요소로서 지적재산권의 증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이 분야에서 당사국들의 협력을 증진한다.
2. 당사국들은, 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지적재산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제3국과 당사국들의 관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정보를 교환할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조화·운영 및 집행에 대하여 확인되었거나 또는 미래의 국제협약에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그리고 세계무역기구 및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같은 국제기구에서의 활동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3. 당사국들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다.
 - 가. 심사관을 포함하여, 당사국 간 인력 상호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 나. 지적재산에 대한 정보시스템 분야
 - 다. 지적재산 분야에서 각 당사국의 정책·활동 및 경험의 상호 이해 증진. 그리고
 - 라. 지적재산 및 발명인식에 관한 교육의 증진

제 8 장

조직규정

제 8.1 조 공동위원회

1. 당사국들은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는 장관 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장관이 임명한 고위공무원이 수석대표를 맡은 당사국들의 대표로 구성된다.
2. 공동위원회는,
 - 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특히 이 협정 규정의 적용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에 의하여, 이 협정에 포함된 구체적인 견해를 적절히 고려하여 이 협정의 이행을 검토한다.
 - 나.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무역과 관련된 무역장벽 및 그 밖의 제한적 조치를 추가적으로 제거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 다. 이 협정의 추가적인 발전을 감독한다.
 - 라.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소위원회 및 작업반의 업무를 감독한다.
 - 마.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리고
 - 바.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한다.
3. 공동위원회는 자신의 임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위원회 및 작업반을 설치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위원회 및 작업반은 공동위원회가 정한 권한 하에서 활동한다.
4. 공동위원회는, 컨센서스에 의하여, 이 협정에서 규정된 결정을 내려야 하고 권고를 할 수 있다.
5.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집된다. 그 후, 공동

위원회는 상호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필요한 때에는 소집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매 2년마다 소집된다. 공동위원회의 회의에는 대한민국, 그리고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중 한 국가가 공동의장이 된다. 공동위원회는 자신의 절차규칙을 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언제든지, 다른 당사국들에 대한 서면통지를 통하여, 공동위원회의 특별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회의는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요청의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한다.

7.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부속서 및 부록을 개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제8항을 조건으로 하여, 공동위원회는 그러한 결정의 발효일을 정할 수 있다.

8. 공동위원회에서 어느 당사국의 대표가 현법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결정을 수용하였을 경우, 이러한 결정은, 결정 그 자체가 그 이후의 날짜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마지막 당사국이 자국의 내부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통지하는 날부터 발효된다. 공동위원회는, 대한민국이 자국의 내부 요건을 충족한 당사국의 하나인 경우, 자국의 내부 요건을 충족시킨 당사국들에 대하여 결정이 발효된다고 결정할 수 있다. 당사국은, 자국의 현법상 요건을 조건으로, 공동위원회의 결정이 발효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이러한 결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 8.2 조

사무국

1.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권한있는 기관을 각 당사국의 사무국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지정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외교통상부. 그리고

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경우,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국

2. 제10.7조를 저해함이 없고,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거나 또는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목적상 당사국에 대한 또는 당사국에 의한 모든 공식적인 의사소통 또는 통지는 자국의 사무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제 9 장 분쟁해결

제 9.1 조 적용범위

1. 이 협정의 제4.21조 및 부속서 I의 제25조에 규정된 방식을 고려하여, 이 장의 규정은 이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적용된다.
2.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상에서 발생하는 동일한 사안에 대한 분쟁은 제소 당사국이 선택하는 분쟁해결 절차에서 해결될 수 있다. 그 선택된 절차는 다른 절차를 배제하고 이용된다.
3. 이 조의 목적상, 세계무역기구협정 또는 이 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는 당사국의 패널설치 요청이 있을 때 개시되는 것으로 본다.
4. 당사국이 이 협정 및 세계무역기구협정상에서 발생하는 사안과 관련하여 다른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자국의 의도를 모든 당사국들에게 통지한다.
5. 제9.4조 내지 제9.10조에 규정된 중재 규칙은 제2.7조·제2.9조·제2.10조 및 제5장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9.2 조 주선·조정 또는 중개

1. 주선·조정 및 중개는 관련된 당사국들이 합의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채택되는 절차이다. 그 절차는 언제든지 개시되고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2. 주선·조정 및 중개를 포함하는 절차는 비공개로 하며, 그 밖의 절차에서 당사국들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9.3 조 협 의

1.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다한다.

2. 당사국이 요청의 대상이 된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에 의하여 적용된 조치가 이 협정과 불합치하거나, 이 협정상 자국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혜택이 그러한 조치에 의하여 침해되거나 무효화 된다고 간주하는 때에는 언제나, 하나 이상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또는 그 반대로 대한민국이 하나 이상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 대하여 협의를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협의는, 협의요청을 하거나 접수하는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이 반대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동위원회에서 개최된다.

3. 협의는 협의요청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된다. 부패 가능한 농산물에 대한 사안을 포함하여, 긴급한 사안에 대한 협의는 협의요청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된다.

4. 협의에 관련된 당사국들은 그 조치 또는 그 밖의 사안이 이 협정의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완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과정에서 교환된 비공개 또는 독점적 정보는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이 취급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한다.

5. 협의는 비공개로 하며 후속적인 절차에 관련된 당사국들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6. 협의에 관련된 당사국들은 사안에 대하여 상호 합의한 해결방안을 그 밖

의 당사국들에게 통보한다.

제 9.4 조 중재패널의 설치

1. 사안이 협의요청 접수일 후 60일 이내 또는 긴급한 사안에 관련된 경우에 는 30일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안은 하나 이상의 관련 당사국에 의하여 피소 당사국 또는 당사국들에게 제출되는 서면요청의 방식으로 중재에 회 부될 수 있다. 이러한 요청의 사본은 각 당사국이 그 분쟁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당사국들에게도 전달된다.
2. 2개 이상의 당사국이 동일한 사안과 관련하여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이를 제소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단일 중재패널이 설치되어야 한다.²⁾
3. 중재요청은 문제가 된 조치의 확인과 제소의 법적 기반에 대한 표시를 포함한 제소의 사유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9.5 조 중재패널

1. 제9.4조에 규정된 중재 패널은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2. 각 분쟁당사국은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요청 접수로부터 15일 이내에 1인의 중재패널 위원을 임명한다.
3. 분쟁당사국들은 두 번째 위원의 임명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세 번째 위원의 임명에 합의한다. 이렇게 임명된 위원은 중재패널의 의장이 된다.
4. 제9.4조에 규정된 요청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3인의 위원 모두가 지정

2) 다음에서 “분쟁당사국”, “제소당사국” 및 “피소당사국” 용어는 둘 이상의 당사국이 분쟁에 관련되어 있는지에 관계없이 사용된다.

되거나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어느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음 30일 이내에 세계무역기구의 사무총장이 필요한 지정을 한다. 세계무역기구의 사무총장에 의하여 중재패널 위원들이 특정된 기간 이내에 지정되지 아니할 경우, 분쟁당사국들은 다음 10일 이내에 각 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4인의 지명자로 구성된 명단을 교환한다. 패널 위원은 각 당사국의 명단의 교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이 참석한 가운데 그 명단으로부터 추첨으로 임명된다. 분쟁당사국이 4인의 지명자의 명단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패널 위원은 다른 분쟁당사국이 이미 제출한 명단으로부터 추첨으로 임명된다.

5. 중재패널의 의장은 어느 당사국의 국민이어서는 아니되고, 통상 거주지를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 두지 못하며, 어느 당사국에 의하여 현재 고용 중이거나 과거에 고용된 적이 있어서는 아니되고, 그 어떤 자격으로서도 그 사건을 다룬 적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6. 위원이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경우, 후임자는 원 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던 선정절차에 따라 15일 이내에 선정되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 중재패널 절차에 적용될 수 있는 기간은 원 위원이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또는 해임되는 날에 시작하여 후임자가 선정된 날을 끝으로 하는 기간동안 정지된다.

7. 중재패널 위원으로 임명된 자는 법률, 국제무역, 이 협정의 적용대상인 그밖의 사안에 대하여 또는 국제무역협정상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하여 전문적 의견이나 경험을 보유하여야 한다. 위원은 객관성, 신뢰성, 건전한 판단 및 독립성에 엄격하게 기초하여 선정되며, 중재절차의 기간 동안 이들 특성에 따라 행동한다. 분쟁당사국이 위원이 위에 명시된 기초를 위반한 것으로 믿는 경우, 분쟁당사국들은 협의하고, 그들이 합의하는 경우, 그 위원은 해임되고 새로운 위원이 이 조에 따라 그리고 제6항에서 규정된 절차를 밟아 임명된다.

8. 중재패널의 설치일은 의장이 임명된 날로 한다.

제 9.6 조

중재패널의 절차

1.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패널 절차는 공동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에서 채택될 모범절차규칙에 따라 수행된다. 그러한 규칙을 채택할 때까지는, 중재패널은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자체적으로 절차를 규율한다.

2. 제1항에 불구하고, 중재패널의 모든 절차의 진행상 절차는 다음을 보장한다.

가. 분쟁당사국들은 중재패널에서 최소한 한 번의 심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최초 및 반박 서면입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나. 분쟁당사국들은 중재패널에 의하여 열리는 모든 심리에 초청된다.

다. 중재패널에 제출되는 모든 서면입장 및 의견들은 비밀유지 요건을 조건으로 분쟁당사국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라. 심리, 심의, 최초 보고서, 그리고 중재패널에 제출된 모든 서면입장 및 중재패널과의 의사소통은 비공개로 한다.

3. 중재패널설치 요청의 전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위탁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제9.4조에 따라 중재패널설치 요청서에 언급된 사안을 검토하고, 그 사유를 포함한 법률 및 사실을 조사하고, 그리고 만약 있을 경우, 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한다.”

4. 분쟁당사국의 요청 또는 자체 발의로, 중재패널은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전문가로부터 과학적 정보 및 기술적 조언을 구할 수 있다.

5. 중재패널은 국제공법의 해석의 규칙에 따라 적용되고 해석되는 이 협정의 규정에 기초하여 판정한다.

6. 중재패널의 결정은 위원의 과반수에 의하여 내려진다. 위원은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사안에 대하여 별도 의견을 낼 수 있다. 중재패널은 어느 위원이 다수 또는 소수 의견과 연관되어 있는지를 공개할 수 없다.

7. 중재패널 위원의 보수를 포함한 중재패널의 비용은 분쟁당사국들이 동일한 뜻으로 부담한다.

제 9.7 조 제소의 철회

제소 당사국은 최초 보고서가 발행되기 이전 언제든지 자국의 제소를 철회할 수 있다. 이러한 철회는 추후 동일 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제소를 할 수 있는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 9.8 조 최초 보고서

1. 중재패널은 중재패널의 설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에게 최초 보고서를 제출한다.
2. 중재패널은 분쟁당사국들의 서면입장 및 주장과 제9.6조제4항에 따라 얻어진 과학적 정보 및 기술적 조언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한다.
3. 분쟁당사국은 최초 보고서가 제출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최초 보고서에 관한 서면 의견을 중재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4. 그러한 경우, 그리고 그 서면 의견을 검토한 후, 중재패널은 자체 발의 또는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다음을 할 수 있다.
 - 가. 분쟁당사국의 견해 요청
 - 나. 최초 보고서 재검토. 그리고/또는
 - 다. 중재패널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추가적인 조사

제 9.9 조 최종 보고서

1. 중재패널은 만장일치로 합의되지 아니한 사안에 대한 별도 의견을 포함하여, 제9.8조제2항에 규정된 사안을 담고 있는 최종 보고서를, 최초 보고서의 제출일의 30일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에게 제출한다.
2. 분쟁당사국들이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최종 보고서는 당사국들에게 제출된 지 15일 후에 공개된다.

제 9.10 조 중재패널 보고서의 이행

1. 최종 보고서는 분쟁당사국들에 대하여 최종적이며 기속력을 가진다. 각 분쟁당사국은 최종 보고서 이행에 관련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2. 중재패널의 최종보고서를 접수한 때, 분쟁당사국들은 다음에 대하여 합의한다.
 - 가. 중재패널의 판정 또는 권고가 있는 경우, 이에 통상적으로 합치하는 분쟁해결 수단. 그리고
 - 나. 분쟁해결 수단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 분쟁당사국들이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분쟁당사국은 원 중재패널이 그 사건의 특별한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인 기간의 길이를 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패널의 결정은 그 요청으로부터 15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3. 최종 보고서에서 중재패널이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의무에 합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판정하는 경우 또는 당사국의 조치가 무효화 또는 침해를 초래하였다고 판정한 경우, 분쟁해결 수단은, 언제든지 가능한 때, 그 불합치 또는 무효화 또는 침해를 제거하는 것이어야 한다.
4. 분쟁당사국들이 최종 보고서의 발행 후 30일 이내에 제2항가호에 따라 분쟁해결 수단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분쟁해결 수단에 대하여는 합의하였으나 피소 당사국이 제2항나호에 따라 결정된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후 30일

이내에 그 수단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상호 수용 가능한 보상에 대하여 합의하기 위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그러한 요청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러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제소 당사국은 이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되는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혜택과 동등한 만큼 이 협정상 부여된 혜택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5. 정지되어질 혜택을 검토함에 있어, 제소 당사국은 중재패널이 이 협정을 위반한 것으로 판정한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동일한 분야에서 혜택의 정지를 우선 추구하여야 한다. 제소 당사국이 그러한 동일한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시키는 것이 비현실적 또는 비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그 밖의 분야에서 혜택을 정지시킬 수 있다.

6. 제소 당사국은 혜택 정지가 발효될 예정인 날로부터 최소 60일 이전에 정지하고자 하는 혜택을 타방 당사국에게 통보한다. 그 통보로부터 15일 이내에, 분쟁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이 정지시키고자 하는 혜택이 이 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정된 조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혜택과 동등한 것인지, 그리고 제안된 정지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것인지에 대하여 원 중재패널이 판정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중재패널의 판정은 그 요청으로부터 45일 이내에 내려진다. 중재패널이 판정을 하기 전까지 혜택은 정지되지 아니한다.

7. 혜택의 정지는 일시적이어야 하며, 이 협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정된 조치가 이 협정과 합치되도록 하기 위하여 철회되거나 수정될 때까지, 또는 분쟁당사국들이 분쟁해결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만 제소 당사국에 의하여 적용된다.

8.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원 중재패널은 혜택의 정지 이후 채택된 이행 조치가 최종 보고서에 합치되는지를 판정하고, 그러한 판정에 비추어, 혜택의 정지가 종료되거나 수정되어져야 하는지를 판정한다. 중재패널의 판정은 그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내려져야 한다.

9. 제2항나호·제6항 및 제8항에 규정된 판정은 구속력이 있다.

제 9.11 조 그 밖의 규정

이 장에서 언급된 기간은 언제라도 관련 당사국들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 될 수 있다.

제 10 장 최종조항

제 10.1 조 투명성

1. 당사국들은 자국의 법률을 공표하거나, 또는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 당사국의 국제협정 뿐만 아니라 법률·규정 그리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적 판정 및 사법적 결정을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게 한다.
2. 당사국들은 구체적인 질문에 신속하게 응답하고,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1 항에 규정된 사안에 대하여 상호 정보를 제공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법집행을 방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거나, 또는 경제적 행위자의 합법적인 상업적 이익을 해치는 비밀정보를 당사국이 공개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4. 이 조의 규정과 다른 장의 투명성과 관련된 규정 간에 상충이 있는 경우, 그 상충의 범위 안에서 후자가 우선한다.

제 10.2 조 부속서 및 부록

이 협정의 부속서 및 부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룬다.

제 10.3 조

개정

1. 제8.1조제7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이 협정은, 공동위원회의 승인 후에, 각 당사국의 헌법상 요건에 따른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위하여 당사국들에게 제출된다.
2.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개정은 마지막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된다.
3.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와 개정원본은 기탁처에 기탁된다.

제 10.4 조

가입

1.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인 국가는 가입하려는 국가와 기존 당사국들 간에 합의된 조건으로 공동위원회가 가입을 승인하기로 결정할 경우,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서는 기탁처에 기탁된다.
2. 가입국에 대하여, 이 협정은 가입서의 기탁일 또는 기존 당사국에 의한 가입조건의 승인 중, 더 늦은 날 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된다.

제 10.5 조

탈퇴 및 종료

1. 당사국은 기탁처에 대한 서면통지의 방식으로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그 통지가 기탁처에 접수된 날로부터 6월 후에 발효된다.
2. 대한민국이 탈퇴하는 경우, 이 협정은 제1항에 규정된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유럽자유무역연합을 설립하는 협약으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그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제1항에 따라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한다.

제 10.6 조

발효

1. 이 협정은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기탁처에 기탁된다.

2. 이 협정은 이 협정을 비준한 서명국에 대하여 2006년 7월 1일에 발효한다. 다만, 서명국은 적어도 발효일로부터 1월 전에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처에 기탁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이 그러한 문서를 기탁한 국가들 중 하나이어야 한다.

3. 이 협정이 2006년 7월 1일에 발효되지 아니하는 경우,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중 적어도 하나가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 중 늦은 날 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된다.

4. 이 협정이 발효된 후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 대하여는, 이 협정은 그러한 문서의 기탁 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된다.

5. 자국의 헌법상 요건이 허용하는 경우,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이 협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이 협정의 잠정 적용은 기탁처에 통보된다.

제 10.7 조

기탁처

노르웨이 정부가 기탁처의 역할을 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들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12월 15일, 홍콩에서 영어로 1부 작성된 원본이 노르웨이 정부에 기탁된다. 기탁처는 모든 서명국들에게 인증사본을 전달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아이슬란드공화국을 대표하여

리히텐슈타인공국을 대표하여

노르웨이왕국을 대표하여

스위스연방을 대표하여

부속서 I
제2.2조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목 차

제 1 부 원산지 규정

제 1 절 일반 조항

제 1 조 정의

제 2 절 “원산지 상품” 요건

제 2 조 원산지 기준

제 3 조 원산지 누적

제 4 조 완전하게 획득된 상품

제 5 조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상품

제 6 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공정

제 7 조 원산지 자격 단위물품

제 8 조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제 9 조 세트

제 10 조 중립재

제 11 조 재료의 구분

제 3 절 영역요건

제 12 조 영역원칙

제 13 조 영역원칙의 면제

제 14 조 직접 운송

제 2 부

통관절차

제 4 절 원산지 증명

- 제 15 조 원산지신고서
- 제 16 조 인증 수출자
- 제 17 조 수입요건
- 제 18 조 분할수입
- 제 19 조 원산지신고서 면제
- 제 20 조 증빙서류
- 제 21 조 기록유지 요건
- 제 22 조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제 5 절 행정협력을 위한 절차

- 제 23 조 통보
- 제 24 조 원산지신고서의 검증
- 제 25 조 분쟁해결
- 제 26 조 비밀유지
- 제 27 조 별칙
- 제 28 조 특혜관세대우의 배제
- 제 29 조 자유무역지역

제 6 절 관세협력

- 제 30 조 관세협력
- 제 31 조 관세연락창구

제 7 절 최종조항

- 제 32 조 관세 및 원산지 소위원회
- 제 33 조 주해
- 제 34 조 통과 또는 임시 보관 상품

부록 목록

부록 1 부록 2 목록에 대한 소개 주석

부록 2 제조된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 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

부록 3 제15조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의 문안

부록 4 영역원칙의 면제

제 1 부 원산지 규정

제 1 절 일반 조항

제 1 조 정 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 가. “류”·“호” 및 “소호”라 함은 HS의 품목분류표에서 사용되는 류·호(4단위) 및 소호(6단위)를 말한다.
- 나. “분류된”이라 함은 특정 류·호 및 소호에 따른 상품 또는 재료의 분류를 말한다.
- 다. “탁송품”이라 함은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에게 송부된 상품이거나 수출자로부터 수하인으로의 선적과 관련된 하나의 운송서류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 또는 그러한 운송서류가 없는 경우 하나의 송장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상품을 말한다.
- 라. “과세가격”이라 함은 「1994년도 GATT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관세평가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결정된 산정가격을 말한다.
- 마. “공장도 가격”이라 함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당사국 내의 제조자의 공장도 상품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말한다. 다만, 그 가격은 동 상품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격을 포함하고, 동 상품의 수출시 환급되는 내국세를 공제한다.
- 바. “물품”이라 함은 재료, 상품, 또는 그 밖의 품목을 말한다.
- 사. “HS”라 함은 이 협정의 서명일에 유효한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일반통칙과 주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아. “제조”라 함은 조립 또는 특정 공정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작업 또는 가공을 말한다.
- 자. “재료”라 함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요소, 원재료, 부품 또는 부분

품 등을 말한다.

- 차. “비원산지 재료”라 함은 이 부속서상 원산지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재료를 말한다.
- 카. “당사국”이라 함은 대한민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를 말한다.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간 관세동맹에 따라, 리히텐슈타인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스위스를 원산지로 간주한다.
- 타. “생산품”이라 함은, 추후 다른 제조공정에서 사용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제조한 상품을 말한다.
- 파. “영역”은 영해를 포함한다.
- 하. “재료의 가격”이라 함은 사용한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시 과세가격 또는 이를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사국 내에서 지급한 재료의 최초 확인 가능한 가격을 말한다.
- 거. “원산지 재료의 가격”이라 함은 하목의 정의에 따라 준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말한다.
- 너. “수출자”라 함은 상품이 수출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인을 말한다.
- 더. “수입자”라 함은 상품이 수입되는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입하는 인을 말한다.
- 러. “생산자”라 함은 상품을 재배, 채굴, 수확, 어로, 덫사냥, 수렵, 제조, 가공 또는 조립하는 인을 말한다.

제 2 절

“원산지 상품” 요건

제 2 조

원산지 기준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상품은 당사국을 원산지로 간주한다.

- 가. 제4조의 의미 내에서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된 상품
- 나. 제5조의 의미 내에서 당사국에서 충분한 작업 또는 공정을 거친 경우, 그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지 아니한 재료를 통합하여 획득한 상품. 또는

다. 이 부속서에 따라 원산지 상품으로서의 자격을 갖춘 재료로부터만 당사국에서 획득한 상품

제 3 조 원산지 누적

1.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부속서의 의미 내에서 제6조에 규정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가공을 거친 경우, 타방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는 일방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로 간주한다.

2. 이 부속서의 의미 내에서 일방 당사국에서 타방 당사국으로 수출되어 타방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은 동일한 상태로 재수출되었거나 제6조에 규정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가공을 거치지 아니하고 재수출된 경우 그 원산지를 유지한다.

3. 제2항의 목적상, 2개국 이상의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다수의 재료가 사용되고 동 재료가 제6조에 규정된 것 이상의 작업이나 가공을 수출 당사국에서 거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는 최고 과세가격의 재료에 의하여 결정되거나, 재료의 과세가격을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출 당사국에서 지급한 가장 높은 최초 확인 가능한 가격의 재료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 4 조 완전하게 획득된 상품

제2조가호의 목적상, 다음 상품은 당사국에서 완전하게 획득된 것으로 간주된다.

- 가. 당사국의 지층 또는 해저로부터 채굴된 광물성 상품
- 나. 당사국에서 재배되고 수확되거나 채집된 채소
- 다.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산 동물
- 라.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산 동물로 만든 생산품
- 마.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수렵, 덫사냥, 또는 어로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 바.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에 의하여 어느 국가의 영해 밖에서 획득

된 어획물 및 그 밖의 상품

- 사.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가공선박에서, 바호에서 규정된 상품으로만 제조된 상품
- 아. 당사국에서 수집된 것으로서 원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거나 복원 또는 수리될 수 없고, 폐품으로만 적합하거나 부품 및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재료
- 자. 당사국에서 수행한 소비나 제조공정의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서 폐품으로만 적합하거나 부품 및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폐기물 및 부스러기
- 차. 당사국이 자국 영해 밖의 해저를 탐사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경우, 그 당사국 영해 밖의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채취된 상품
- 카. 가호에서 차호에 명시된 상품으로만 그 당사국에서 제조된 상품

제 5 조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상품

1. 제2조나호의 목적상, 완전하게 획득되지 아니한 상품은 부록 2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위에 규정된 조건은 제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할 작업 또는 가공을 지칭하며, 그러한 재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당사국의 동일한 공장 또는 다른 공장에서 제조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록 2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여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상품이, 다른 상품의 제조에 재료로 사용된 경우, 그러한 다른 상품에 적용되는 조건들은 재료로 사용되는 상품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다른 상품의 제조에 재료로 사용되는 그러한 상품에 통합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록 2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되는 비원산지 재료는 다음의 경우 사용될 수 있다.

- 가. HS의 제50류 내지 제63류에 해당하는 상품을 제외한 상품에 대하여는, 비원산지 재료의 총 가격이 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 나. HS의 제50류 내지 제63류에 해당하는 상품에 대하여는, 사용된 비원산지 기초 섬유재료의 총 중량이 사용된 모든 기초 섬유재료의 총 중량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리고
 - 다. 이 항의 적용을 포함하여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격이 부록 2에 규정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비원산지 재료가 이 조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되는 상품의 소호와 다른 소호에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제2항은 HS의 제1류 내지 제24류에 규정된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부록 2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할 목적으로, 가공은 하나의 당사국 안에서 하나 이상의 생산자에 의하여 수행될 수 있다. 수출자 또는 최종 상품의 생산자는 작업 또는 가공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보관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은 제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한다.

제 6 조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 공정

1. 제2항을 저해함이 없이, 이 부속서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의 공정은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으로 간주된다.
- 가. 운송 및 저장기간 동안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보존 작업
 - 나. 포장의 변경 및 포장의 해체와 조립
 - 다. 세탁, 세척과 먼지, 녹, 기름, 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 라. 섬유류에 대한 다림질 또는 압착
 - 마. 단순한¹⁾ 페인팅 및 광택 작업
 - 바.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염마, 곡물 및 쌀의 도정
 - 사. 당류 착색 및 각설탕 작업
 - 아. 과일, 견과류 및 채소에 대한 탈피, 씨제거, 탈각

1) “단순한”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설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 차.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매칭(물품 세트의 구성을 포함한다)
- 카. 병·캔·플라스틱·가방·케이스 및 상자에 단순히²⁾ 넣기, 카드 또는 판에 붙이는 것 및 그 밖의 모든 단순한 포장 작업
- 타. 상표·라벨·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
- 파. 다른 종류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상품의 단순한 혼합³⁾
-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기 위한 부품의 단순한⁴⁾ 조립 또는 상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 거. 단순한⁵⁾ 시험 및 측정
- 너. 동물의 도살. 또는
- 더. 가호 내지 너호에 규정된 작업의 둘 이상의 조합

2. 제1항의 의미 내에서 해당 상품에 행하여진 작업 또는 가공이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경우, 그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에서 행하여진 모든 작업이 함께 고려된다.

제 7 조 원산지 자격 단위물품

1. 이 부속서 규정의 적용상 원산지 자격 단위물품은 HS의 품목분류표를 사용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하는 경우, 그 기본 단위로 간주되는 특정 상품이어야 한다.
2. HS의 일반통칙 제5조에 따라 포장재가 품목분류상 상품에 포함된 경우, 그 포장재는 원산지 결정 목적상 원산지 자격 단위물품에 포함된다.

제 8 조

2) 각주 1 참조

3) “단순히 혼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특정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특별한 기술, 기계, 도구 또는 설비가 필요하지 아니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혼합은 화학적 반응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화학적 반응은 문자간 결합의 파괴 또는 새로운 문자결합의 형성, 또는 문자내 원자의 공간 배열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구조의 문자를 만드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각주 1 참조

5) 각주 1 참조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

일반 장비의 일부로서 그 가격에 포함되거나 송장이 별도로 발부되지 아니하고, 장비, 기계, 도구 또는 차량과 함께 발송되는 부속품·예비부품 및 공구는 해당 장비, 기계, 도구, 또는 차량과 일체로 간주한다.

제 9 조

세트

부록 2에 규정된 규칙에 불구하고, HS의 일반통칙 제3조에서 정의된 세트는 그 모든 구성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세트가 원산지 상품과 비원산지 상품으로 구성된 경우, 비원산지 상품의 가격이 세트의 공장도 가격의 1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세트 전체를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제 10 조

중립재

상품의 원산지 결정상, 상품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다음 요소는 원산지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 가. 에너지 및 연료
- 나. 공장 및 장비(그 유지를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포함한다)
- 다. 기계·공구·틀 및 금형. 그리고
- 라. 상품의 최종 구성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포함될 것으로 의도되지 아니한 그 밖의 상품

제 11 조

재료의 구분

1.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상품의 제조에 사용될 경우, 보관하는 동안 그 재료의 원산지에 따라 물리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동

일하고 대체가능한 재료”라 함은 동종이고 상업적으로 동질이며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이 동일하고 일단 최종 상품에 통합될 경우 원산지 목적으로 구별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2.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동일하고 대체가능한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의 재고를 구분하여 보관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생산자는 재고 관리를 위한 구분회계기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회계기법은 당해 상품이 제조된 당사국에서 적용가능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기록, 적용, 그리고 유지되어야 한다. 선택한 회계기법은,

가. 획득 또는 재고로 관리되는 원산지 재료와 비원산지 재료의 명확한 구분을 허용하여야 한다.

나. 재료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는 경우보다 더 많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4. 이러한 편의를 사용하는 생산자는 원산지신고서에 작성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되는 상품의 수량에 대한 책임과 재료의 원산지 관련 모든 증빙서류 보관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관세당국의 요청시 생산자는 재고관리기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5. 당사국은 이 조에서 규정한 재고관리기법의 적용을 관세당국의 사전승인 대상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 3 절 영역요건

제 12 조 영역 원칙

1 제3조 및 제1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제2절에 규정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는 조건은 당사국에서 중단없이 충족되어야 한다.

2. 제3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당국에 충분히 입증하지 아니할 경우, 당사국에서 비당사국으로 수출된 원산지 상품은 재반입시 비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한다.
- 가. 재반입된 상품이 수출된 상품과 동일할 것
 - 나. 재반입된 상품이 수출되는 동안 좋은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 이상의 공정을 거치지 아니할 것

제 13 조 영역원칙의 면제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록 4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2절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 원산지 지위의 획득은 당사국에서 수출된 재료에 대하여 해당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행하여진 작업 또는 가공 후 재반입으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14 조 직접 운송

1. 이 협정상 규정된 특혜대우는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만 적용한다. 그러나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할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될 수 있다. 그 기간동안 그 상품은 경유국 세관의 감시 하에 있어야 한다.
2. 수입자는 관세당국의 요청시 제1항에서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적절한 증거를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관세당국에 제공한다.
3. 제1항의 적용의 목적상, 원산지 상품은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영역 외의 영역을 통과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운송될 수 있다.

제 2 부
통관절차

제 4 절
원산지증명

제 15 조
원산지신고서

1. 수입 당사국에서의 특혜관세대우 목적상, 당사국의 수출자는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원산지로 간주되고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록 3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원산지신고서는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해당 상품임을 확인할 수 있고, 수출자, 수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확인되는 송장 또는 그 밖의 상업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3. 제1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신고서는 읽기 쉽고 영구적인 양식으로 영어로 작성되고 수출자의 본 서명을 포함한다.
4.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관련 상품이 수출되었거나 수출 후에는 생산자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다.
5. 원산지신고서 작성시 생산자에게 서류와 정보를 의존하는 수출자는 그 서류와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가 동 신고서가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동 신고서가 적용되는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에 영향

을 주는 변화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즉시 서면통보하고, 동 사본을 수출국 관세당국에게 제출한다. 별칙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7.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의 요청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 사본 및 동 신고서가 적용되는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의 사본을 제공한다. 이러한 목적상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회계장부 검사 또는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그 밖의 감독을 행할 권리를 가진다.

8. 이 조의 목적상, 국내 법령에 따라 상품의 화주로부터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운송중개인, 관세사 또는 이와 유사한자는 “수출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 16 조 인증 수출자

1. 수출 당사국이 인증 수출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에 수기로 서명한 것과 같은 본인임을 확인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이 협정 하에서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상품을 빈번하게 선적하는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가 서명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인증할 수 있다.

2.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1항에 규정된 인증 수출자에게 당사국들의 관세당국 간에 수출자의 서명대신 원산지신고서에 사용하기로 합의될 수 있는 세관인증번호 또는 그 밖의 확인양식을 교부한다.

3.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1항에서 규정한 인증제도의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고, 수출자가 더 이상 인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증제도를 부적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인증을 철회할 수 있다.

제 17 조 수입요건

1. 각 당사국은 제15조의 의미 내에서 이 협정에 따라 타방 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산지 상품에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수입관세당국은 상품이 이 부속서의 조건을 충족한다는 취지의 수입자 진술이 첨부된 수입신고서를 수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특혜관세대우를 부여받기 위하여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에서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원산지신고서의 소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산지 상품의 수입시 특혜관세대우를 요구할 수 있다. 수입자가 수입시 원산지신고서를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또는 그 밖의 원산지 증빙서류와 수입 당사국의 요구시 상품의 수입관련 서류를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조에 규정된 경우 이 부속서의 의미 내에서 원산지상품은 제1항에서 규정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이 협정에 따라 수입시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누린다.
4. 원산지신고서는 수출 당사국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12월 동안 유효하다.
5. 제4항에 규정된 최종제출일 이후에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된 원산지신고서라도 예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최종제출일까지 그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특혜관세대우 적용의 목적상 수리될 수 있다.
6.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입시 수입자가 원산지신고서를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도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 가. 수입자가 수입시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의사표시를 하고,
 - 나. 수입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7. 원산지신고서는 수입 당사국이 적용하는 절차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한다.

8.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 당사국 관세당국의 요구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수입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또는 동 신고서와 관련된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 당사국은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동안 특혜관세대우의 부여를 정지할 수 있다.

제 18 조

분할수입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규정한 조건하에서 수입자의 요청시 HS 일반통칙 제2조가호의 의미 내에서의 HS 제16부 및 제17부 또는 제7308호 및 제9406호에 해당하는 분해 또는 미조립된 상품을 분할수입하는 경우, 첫 번째 분할수입시에 그 상품에 대한 하나의 원산지신고서만 관세당국에 제출하면 된다.

제 19 조

원산지신고서 면제

1. 개인이 개인에게 송부한 소포 및 여행자 개인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상품은 원산지신고서의 제출 없이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 상품이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신고되며, 그 신고의 진실성에 의심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우편으로 송부된 상품의 경우에는 우편물세관신고서 또는 그 문서에 첨부된 한 장의 서류로 작성될 수 있다.

2. 수취인, 여행자 또는 그 가족의 개인적인 용도의 상품으로만 구성된 일시적인 수입은 그 상품의 성격과 수량으로 보아 상업적 목적이 아닌 것이 명백할 경우, 상업적 수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제1항의 목적상, 개인이 개인에게 송부한 소포의 경우 그 상품의 총가격은 다음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미화 1,000달러. 또는
- 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유로화 500유로

4. 제1항의 목적상, 여행자 개인수하물의 일부인 경우 그 상품의 총액은 다음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미화 1,000달러. 또는
- 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유로화 1,200유로

5. 상품의 가격이 제3항 및 제4항에 규정된 통화 외의 통화로 송장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경우, 그 금액은 수입 당사국의 자국 통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적용된다.

제 20 조 증빙서류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상품이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원산지이며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제15조제7항에 규정된 서류는 특히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해당 상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수출자 또는 공급자가 수행한 공정의 직접증거. 예를 들어 그의 회계장부 또는 내부회계관리기록에 기재된 것
- 나.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그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국에서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 다. 재료에 대한 작업 또는 공정이 당사국에 행하여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그 서류가 사용되는 당사국에서 국내법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거나 작성된 것
- 라.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는 원산지신고서로서 당사국에서 작성된 것. 또는
- 마. 제13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당사국의 역외에서 행하여진 작업 또는 공정에 관한 적절한 증거로서 그 조항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것

제 21 조

기록유지 요건

1.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제15조제7항에 규정된 서류 및 해당 원산지신고서 사본을 최장 5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2. 수입자는 국내법령에 따라 수입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기록은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제 22 조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1. 원산지신고서와 제출된 상품이 부합한다는 사실이 적절하게 입증될 경우, 원산지신고서의 기재사항과 상품의 정식수입절차상 세관에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간에 사소한 차이가 발견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원산지신고서를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2. 원산지신고서의 타이핑 오류와 같은 명백한 형식적 오류가 그 서류 기재사항의 정확성에 대한 의심을 품을만한 정도가 아닌 경우, 그 신고서는 부인되지 아니한다.

제 5 절 행정협력을 위한 절차

제 23 조 통 보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국을 통하여 원산지신고서 검증의 책임이 있는 관세당국의 주소를 서로 제공한다.

제 24 조

원산지신고서의 검증

1. 이 부속서의 적절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 및 동 신고서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관세당국을 통하여 상호 지원한다.
2.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의 진정성,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 또는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한 원산지신고서 사후검증을 언제든지 수행할 수 있다.
3. 제1항의 이행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경우에 따라 조회의 사유를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 또는 그 사본을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된 정보가 정확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수집된 모든 서류 또는 정보는 검증요청의 지원을 위하여 제공된다.
4. 검증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행한다. 이러한 목적상 관세당국은 모든 증거를 요구하고 수출자의 회계장부를 검사하거나 적절한 감독을 수행할 권리가 진다.
5.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검증기간 동안 해당 원산지신고서의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정지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전조치를 수반하는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그 상품의 반출을 허용한다.
6. 검증을 요청하는 관세당국은 조사결과와 사실관계를 포함한 검증결과 및 가능한 한 수출자의 모든 증빙서류를 제공받는다. 검증결과는 서류의 진정성 여부, 해당 상품이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7. 검증요청일로부터 10월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나 해당 서류의 진정성

또는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검증 요청 관세당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할 권한을 가진다.

8.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규정된 조건에 따라, 수입 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이행되는 원산지검증과정에 참관인으로서 참여할 수 있다.

9. 이 협정의 발효로부터 4년째 되는 해에, 당사국들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공동위원회는 이 조의 규정을 검토하고 개정한다.

제 25 조 분쟁해결

제24조의 규정에 따른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제기된 당사국들 간 분쟁이 당사국들 관세당국 간에 해결될 수 없는 경우 또는 이 부속서의 해석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32조에 규정된 관세및원산지소위원회에 회부된다. 소위원회는 결론을 포함한 보고서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한다.

제 26 조 비밀유지

1. 원래 비밀이거나 비밀을 전제로 제공된 모든 정보는 각 당사국의 법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비밀의 유지 의무 대상이 된다. 그 정보는 이를 제공한 인이나 당국의 명시적 허가 없이는 공개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이 이 조에서 요구하는 정보의 비밀성을 유지하지 아니한다고 간주할 경우, 타방 당사국에게 협의를 위하여 서면요청을 할 수 있다. 당사국들은 이 조항의 준수를 확보하는 적절한 조치에 합의할 목적으로 서면요청이 도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한다.

제 27 조

별 칙

각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를 부여받을 목적으로 부정확한 정보가 담긴 서류를 작성하거나 작성하도록 유도한 자 또는 이 부속서상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다.

제 28 조 특혜관세대우의 배제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수입 당사국은 상품이 이 부속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이 부속서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혜관세대우를 배제하거나, 국내법령에 따라 미납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 29 조 자유무역지역

1. 당사국의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의 거래 상품이 운송도중에 당사국의 자유무역지역을 경유할 경우, 다른 상품으로 대체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통상적인 공정 외의 작업을 거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 당사국 영역 내 자유무역지역으로 수입되어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치는 때에는 해당 수출자는 수행된 그 작업 또는 가공이 이 부속서의 규정과 합치하는 경우 새로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제 6 절 관세협력

제 30 조 관세협력

당사국들의 관세당국은 통관절차의 조화 및 단순화, 세관감시 및 검증기법에 관한 우수사례와 정보의 공유, 관세전문가 및 세관공무원의 교류 그리고, 관세 관련 현안에 대한 세관공무원 공동훈련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다.

제 31 조 관세연락창구

1. 당사국들은 이 부속서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지정한 관세연락창구의 리스트를 교환한다.
2. 관세연락창구는 이 부속서상 제기되는 모든 사안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관세연락창구를 통하여 사안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부속서에 규정된 관세및원산지소위원회에 회부된다. 소위원회는 결론을 포함한 보고서를 공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절 최종 조항

제 32 조 관세및원산지소위원회

1. 공동위원회 산하에 관세및원산지소위원회를 설치한다.
2. 소위원회는 기술발전, 시장 상황의 변화 또는 그 밖의 국제적 개발과 같은 변화된 환경을 감안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원산지 규정을 검토하는 것을 기능으로 한다. 아울러 소위원회는 원산지 규정에 대한 입장을 준비 및 조정하고, 그 개정을 준비하며, 다음에 관하여 공동위원회를 지원한다.
 - 가. 이 부속서에 규정된 원산지 및 통관절차의 일반 규칙
 - 나. 부록 2 및 4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 그리고
 - 다. 공동위원회가 소위원회에 회부한 그 밖의 사안

3. 소위원회는 제25조에 규정된 검증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가능한 신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4. 소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소위원회는 소위원회의 기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공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5. 소위원회는 컨센서스에 의하여 운영된다. 소위원회의 의장은 당사국의 대표가 합의된 기간동안 교대로 주재한다. 소위원회의 의장은 첫 번째 소위원회 회의에서 선출한다.

6. 소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된다. 소위원회는 공동위원회, 소위원회의 의장의 직권 또는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소집될 수 있다. 개최장소는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에 교대로 한다.

7. 각 회의의 잠정의제는 의장이 모든 당사국과 협의하여 준비하며, 일반적으로 늦어도 회의 2주 전에 모든 당사국에 전달되어야 한다.

제 33 조

주 해

1. 당사국들은 관세및원산지소위원회 내에서 이 부속서의 해석·적용 및 집행에 관한 주해에 합의한다.

2. 당사국들은 합의된 주해를 각 내부절차에 따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 34 조

통과 또는 임시보관 상품

이 협정의 규정은 이 부속서의 규정에 합치되고 이 협정의 발효일에 당사국을 통과하거나 당사국에 있거나 세관 감시하의 보세창고에 임시보관되어 있거나 또

는 자유무역지역에 있는 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협정발효일 후 4월 이내에 해당 수출자는 소급하여 작성한 원산지신고서와 동 상품이 직접 운송되었음을 보여주는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게 제출한다.

부속서 I 의 부록 1

부록 2 목록에 대한 소개 주석

주석 1

이 목록은 부속서 I 제5조의 의미 내에서 모든 상품이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것으로 간주되는 요구조건을 규정한다.

주석 2

2.1 목록의 처음 두 열은 획득된 상품을 기술한다. 제1열은 HS에서 사용되고 있는 류, 호 또는 소호를 기재하고, 제2열은 류, 호 또는 소호에 대한 HS에서 사용되는 상품의 설명을 기재한다. 제1열 및 제2열의 각 기재내용에 대한 규정은 제3열 또는 제4열에 기재된다. 제1열의 기재사항이 “ex”로 시작하는 경우, 이는 제3열 또는 제4열의 규정이 제2열 아래에 기술되지 아니한 류의 일부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처음 두 열의 기재사항에 대한 규정이 제3열 및 제4열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경우, 수출자는 제3열 또는 제4열에 기재된 규정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한다. 원산지 규정이 제4열에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제3열에 기재된 규정이 적용된다.

주석 3

3.1 원산지 지위를 취득한 상품으로서 다른 상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상품에 관한 부속서 I 제5조의 규정은 원산지 지위가 이 상품이 사용된 공장 내에서 취득되었거나 당사국의 다른 공장에서 취득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된다.

3.2 이 목록의 규정은 요구하는 작업 또는 가공의 최소한을 나타내고 그 이상의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것도 원산지 지위를 부여한다. 반대로 규정 이하의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것은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규정에서 비

원산지 재료가 제조의 특정한 단계에서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그 재료의 사용이 특정 단계보다 이전 제조단계에서는 허용되고, 그 재료의 사용이 특정 단계보다 이후 제조단계에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3 주석 3.2를 저해함이 없이, 규정이 “모든 호의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포함될 수 있는 다른 구체적 제한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품과 같은 호의 재료도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 호의 다른 재료를 포함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 제조”라는 표현은 목록의 제2열에 기재된 상품의 기재사항과 다른 상품과 같은 호에 분류된 재료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4 목록의 규정이 상품이 하나 이상의 재료로부터 제조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 이는 하나 이상의 재료가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규정은 모든 재료의 사용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3.5 목록의 규정이 상품이 특정 재료로부터 제조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 조건은 고유의 특성 때문에 그 규정을 충족시킬 수 없는 다른 재료의 사용을 당연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3.6 목록의 규정에서 사용가능한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격에 대한 두 개의 비율이 기재된 경우, 이 비율들은 합산될 수 없다. 즉,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최대 가격은 기재된 비율 중 높은 것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개별 비율은 해당 비율이 적용되는 특정 재료와의 관계에서 초과되어서는 아니된다.

3.7 목록 제50류 내지 제60류의 규정에서 “적어도 두 개의 예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라 함은 누임, 표백, 머서화 가공, 다림질, 표면을 긁어 세우기, 캘린더가공, 주름방지 가공, 열 고정, 주름제거 후 평평하게 광택 내기, 침투, 보수 및 실밥 제거와 같은 종류의 작업 또는 가공을 말한다.

부속서 I 의 부록 2

제조된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

이 목록에 기재된 상품은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협정의 그 밖의 부분을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HS 세번	상품 설명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는,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된 작업 또는 공정	
(1)	(2)	(3) or	(4)
제 1 류	산 동물	제1류의 모든 동물은 완전 획득되어야 함	
제 2 류	육과 식용설육	사용된 제1류와 제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제 3 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사용된 제3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제 4 류	낙농품, 조란, 천연꿀 및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	사용된 제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ex 제 5 류 0501 ex 0511 0511. 10 0511. 91-99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 인모(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세척한 것인지 또는 세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그 웨이스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 또는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 - 소의 정액 - 기타	사용된 제1류와 제5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사용된 제5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사용된 제1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사용된 제1류, 제3류 및 제5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제 6 류	산 수목과 기타의 식물, 인경, 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절화와 장식용의 잎	사용된 제6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다만,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제 7 류	식용의 채소, 뿌리 및 괴경	사용된 제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1)	(2)	(3) or	(4)
제 8 류	식용의 과실 및 견과류와 감귤류 또는 멜론의 껍질	사용된 제8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ex 제 9 류	커피, 차, 마태 및 향신료	사용된 제9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ex 0901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커피의 각 과피 및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0901. 21-22	- 커피(볶은 것)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0901. 90	- 기타		
제 10 류	곡 물	사용된 제10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ex 제 11 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및 밀의 글루텐	제10류를 제외한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105	감자의 분, 조분, 분말, 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	제7류를 제외한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106	건조한 채두류(제0713호의 것), 사고, 뿌리 또는 괴경(제0714호의 것)과 제8류 물품의 분, 조분과 분말	제0708호, 제0710호, 제0713호, 제0714호, 제8류를 제외한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108	전분과 이눌린	제7류 및 제10류를 제외한 모든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 12 류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의 종자와 과실, 공업용 또는 의약용의 식물, 짙과 사료용 식물	사용된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제 13 류	락, 검, 수지 및 기타의 식물성 액즙과 엑스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제 14 류	식물성 편조물용 재료와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사용된 제1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1)	(2)	(3) or or	(4)
ex 제 15 류	동식물성 유지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식용지와 동식물성의 납	사용된 제2류·제4류·제5류·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1501	돈지(라드를 포함한다)와 가금지(제0209호 또는 제1503호의 것을 제외한다)	사용된 제2류·제5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1502	소·면양 또는 산양의 지방(제1503호의 것을 제외한다)	사용된 제2류·제5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1503	라드스테아린, 라드유, 올레오스테아린, 올레오유, 텔로우유로서 유화·흔합 기타의 조제를 하지 아니한 것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504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Manufacture: -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생산품의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1505	울그리스와 이로부터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을 포함한다)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506	기타의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사용된 제2류·제5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1507 내지 1515	식물성 기름과 그 분획물	사용된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1516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리에스텔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사용된 제2류, 제5류, 제12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ex 제 16 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조제품	사용된 제2류, 제5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1)	(2)	(3) or or	(4)
16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단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16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단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ex 제 17 류	당류와 설탕파자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상태인 것에 한한다) 설탕파자(백색 초코렛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제17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ex 제 18 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초코렛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제17류의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ex 제 19 류	곡물·분·전분 또는 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6호, 제10류, 제11류, 제3501호 내지 제3502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1)	(2)	(3) or (4)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 하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사그네·그노치·레비오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프레이크상, 날알상, 진주상, 무거리상 기타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에 한한다)	사용된 제2류, 제3류, 제10류, 제11류의 모든 재료(제1001호, 제1101호는 제외)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사용된 제10류, 제11류의 모든 재료(제1001호, 제1101호는 제외)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제 20 류	채소·과실·견과류 또는 식물의 기타 부분의 조제품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ex 제 21 류	각종의 조제식료품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2201	음료·알콜 및 식초 물(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과 얼음 및 눈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제2201호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1)	(2)	(3) or (4)
2202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쥬스와 채소쥬스를 제외한다) 기타의 발효주(예 : 사과술·배술·미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발효주의 혼합물 및 발효주와 비알콜성 음료와의 혼합물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0808호, 제2009호의 생산은 제외
ex 2301	식품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 및 웨이스트와 조제사료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수지박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2301. 10	- 육 또는 설육의 분·조분·펠리트 및 수지박 -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 조분 및 펠리트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2류, 제5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2301. 20	사료용 조제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3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2309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10류, 제11류, 제16류의 생산은 제외
2401	잎담배 및 담배 부산물	사용된 제24류의 모든 재료는 완전 획득되는 생산
2402	시가, 셔루트, 시가릴로 및 권련(담배 또는 담배대용물의 것에 한한다)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2403호의 생산은 제외
2403	기타 제조담배, 제조한 담배대용물, 균질화 또는 재구성한 담배 및 담배엑스와 에센스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ex 2518	소금, 황, 토석류 및 석고, 석회와 시멘트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ex 2518. 20	하소한 백운석	하소하지 아니한 백운석의 하소
	하소 또는 소결한 백운석	다른 소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	(2)	(3) or (4)	
제 33 류	정유와 레지노이드 및 조제 향료와 화장품류 또는 화장 용품류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제 34 류	비누, 유기계면활성제, 조제 세제, 조제윤활제, 인조왁 스, 조제왁스, 광택 또는 연 마조제품, 양초와 이와 유사 한 물품, 조형용 페이스트, 치과용왁스와 플라스터를 기제로 한 치과용 조제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 35 류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 및 효소 텍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예: 프리겔라티나이지드 전분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 및 전분, 텍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 조제글루와 기타 조제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글루 또는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 또는 접착제로서 순중량 1킬로그램 이하인 것에 한한다)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1108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3501호 내지 제3503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505			
3506			
제 36 류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 성 합금 및 특정 가연성 조 제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 37 류	사진용 또는 영화용의 재료 평면상 사진플레이트·평 면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 하며, 지제·판지제 또는 직 물제를 제외한다), 평면상 인스턴트 프린트 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팩으로 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롤상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한 것에 한 하며, 지제·판지제 또는 직물제를 제외한다) 및 롤 상인스턴트 프린트 필름(감 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아니 한 것에 한한다)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3702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3701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 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701			
3702			

(1)	(2)	(3) or or	(4)
3704	사진 플레이트 · 필름 · 인화지 · 판지 및 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3701호 내지 제3703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 38 류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08	살충제 · 살서제(취약) · 살균제 · 제초제 · 발아역제제 · 식물성 장조절제 · 소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 [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 · 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 · 심지 · 양초 및 파리잡이 끈끈이)에 한한다]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3809	완성가공제 · 염색축진용 또는 염료고착용의 염색캐리어 · 드레싱 및 매염제와 같은 기타의 물품과 조제품 (섬유공업 · 제지공업 · 피혁공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09.10	전분질을 기제로 한 것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1108호와 제3505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09.91-93	기 타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10	금속표면처리용의 침지조제품, 납붙임 · 땜질 또는 용접용의 용제와 기타 보조조제품, 납붙임 · 땜질 또는 용접용의 분말과 페이스트로서 금속과 기타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의 전극 또는 용접봉의 코어 또는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or	(4)
3811	안티녹제·산화억제제·검화억제제·점도향상제·부식방지제와 기타 조제첨가제[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 또는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기타 액체용의 것에 한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12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고무 또는 플라스틱용의 산화방지 조제품과 기타 복합안정제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13	소화기용의 조제품과 장전물 및 장전된 소화탄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14	유기혼합용제와 신나(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조제한 페인트 제거제 또는 바니쉬 제거제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18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 화학원소(디스트상·웨이퍼상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의 것에 한한다) 및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 처리된 화학화합물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19	유압제동액과 기타 제조 유압전동액(석유 또는 역청유를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석유 또는 역청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미만인 것에 속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20	부동조제품 및 조제제빙액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3822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 조제된 진단용 또는 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며, 제3002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or (4)
ex3823 3823.70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및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다른 소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른 소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 39 품	플라스틱과 그 제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ex 제 40 품	고무와 그 제품 가황하지 아니한 배합고무(일차제품·판·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 고무제의 공기타이어(재생 품 및 중고품에 한한다), 고무제의 솔리드 또는 쿠션 타이어·타이어트래드 및 타이어플랩 고무제의 재생 공기, 솔리드 또는 쿠션 타이어 기타 경질 고무(예:에보나이트, 각종 형상의 것으로서 웨이스트와 스크랩을 포함한다)와 그 제품 - 경질고무의 제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ex 제 41 품	원피(모피를 제외한다)와 가죽 -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탈모한 것에 한하고 스프릿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유연처리된 가죽의 재유연처리
제 42 품	가죽 제품·마구·여행용 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	(2)	(3) or (4)
제 43 류	모피와 인조모피 및 이들의 제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ex 제 44 류	목재와 그 제품 및 목탄: 후프 우드·쪼갠 말뚝·뾰족하게 만든 목재의 말뚝류(길이의 방향으로 텁질한 것을 제외한다), 목재의 봉(지팡이·산류·공구의 자루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깎은 것에 한하며, 선반가공과 휨가공 또는 기타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칩우드 및 이와 유사한 것 목모와 목분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4401호 및 제4403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4404		
4405	궤도용 침목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4401호 및 제4403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4401호 및 제4403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4406		
4407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하며,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베니어용 단판(적층목재품을 평삭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적층목재품용 단판 및 기타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텁질한 것과 평삭한 것 또는 회전식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이하인 것에 한하며,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4401호 및 제4403g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4401호 및 제4403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4408		

(1)	(2)	(3) or (4)
4409 4416	목재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마구리 또는 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 목제의 통·배럴·배트·팁 및 기타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 및 준재를 포함한다)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4401호 및 제4403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 45 류 4503	코르크와 그 제품 천연코르크의 제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른 제4502호를 제외한 다른 모든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 46 류	짚·에스파르토 또는 기타조물재료의 제품과 농세공물 및 지조세공물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 47 류	목재펄프 또는 기타 섬유질 셀룰로스재료의 펄프 및 회수한 지 또는 판지(웨이스트와 스크랩)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 48 류	지와 판지, 제지용 펄프, 지 또는 판지의 제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ex 제 49 류 4909	인쇄서적·신문·회화 및 기타의 인쇄물, 수제문서·타이프문서 및 도면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인쇄 카드(인사용·전언용·안내용의 것으로서 그림·봉투·장식이 있는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4911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ex 제 50 류 5004 및 5005 5006 5007	견 견사, 견웨이스트로 만든 견방사(소매용의 것을 제외한다) 견사·견방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및 누에의 거트 견직물(견웨이스트의 것을 포함한다)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5006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5004호 및 제5005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ex 제 51 류 5106 내지 5108 5109	양모·섬수모 또는 조수모·마모사 및 이들의 직물 양모·섬수요(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양모사 또는 섬수모사(소매용의 것에 한한다)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5109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5109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1)	(2)	(3) or (4)
5111 내지 5113	모직물(섬수모, 조수모, 또는 마모의 것에 한한다)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날염되지 아니하고 염색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의 조건하에 최소한 두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 또는 염색작업
ex 제 52 류 5208 to 5212	면 면직물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날염되지 아니하고 염색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의 조건하에 최소한 두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 또는 염색작업
ex 제 53 류 5309 내지 5311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와 지사 및 지사의 직물 기타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지사의 직물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날염되지 아니하고 염색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의 조건하에 최소한 두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 또는 염색작업
ex 제 54 류 5407 및 5408	인조필라멘트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날염되지 아니하고 염색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의 조건하에 최소한 두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 또는 염색작업
ex 제 55 류 5512 to 5516	인조스테이플섬유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날염되지 아니하고 염색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의 조건하에 최소한 두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 또는 염색작업
제 56 류	워딩·펠트 및 부직포·특수사·끈·코디지·로프 및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	(2)	(3) or (4)
제 57 류	양탄자류와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바닥깔개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 58 류	특수직물, 터후트한 섬유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과 자수포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날염되지 아니하고 염색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의 조건하에 최소한 두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 또는 염색작업
ex 제 59 류 5903	침투·도포·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의 방직용 섬유제품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날염되지 아니하고 염색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의 조건하에 최소한 두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 또는 염색작업
5905	방직용 섬유제의 벽 피복재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날염되지 아니하고 염색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의 조건하에 최소한 두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 또는 염색작업
5907	기타의 방법으로 침투·도포 또는 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또는 스튜디오용의 배경막 또는 이와 유사한 그림을 그린 직물류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날염되지 아니하고 염색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의 조건하에 최소한 두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 또는 염색작업
제 60 류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날염되지 아니하고 염색하지 아니한 옷감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의 조건하에 최소한 두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 또는 염색작업
ex 제 61 류 6115 내지 6117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팬티호스·타이즈·스타킹 및 기타 양말류(정맥류 치료용의 스타킹과 바닥을 대지 아니한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장갑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부속품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생산품의 부분품이 한 당사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기타 조립되어야 함 제60류를 제외한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생산품의 부분품이 한 당사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기타 조립되어야 함
ex 제 62 류 6213 및 6214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손수건, 쇼울·스카프·머플러·만텔라·베일 및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생산품의 부분품이 한 당사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기타 조립되어야 함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생산품의 부분품이 한 당사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기타 조립되어야 함

(1)	(2)	(3) or	(4)
ex 제 63 류 6301 내지 6304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사용하던 방직용 섬유제품 및 넝마 모포 및 여행용 러그; 베드린넨, 테이블린넨, 토일렛린넨, 주방린넨, 커튼(드레이프를 포함) 및 실내용 블라인드 및 커튼, 침대용 '밸란스: 제9404호의 물품'을 제외한 기타 실내용품 기타의 제품(드레스패턴을 포함한다)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생산품의 부분품이 한 당사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기타 조립되어야 함 다른 류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그 생산품의 부분품이 한 당사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기타 조립되어야 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자수가 안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의 조건하의 자수
6307	러그·태피스트리·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스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세트의 각 구성품은 세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구성품에 적용되는 규정을 충족시켜야 함, 그러나 비원산지 물품은 세트화할 수 있음. 다만, 총가치가 세트의 공장도 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제 64 류	신발류·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ex 제 65 류 6503	모자류 및 그 부분품 펠트제의 모자(제6501호의 모체 또는 플래토우로 만든 것에 한하며, 안을 댄 것 또는 장식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6501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ex 제 66 류 6601	산류·지팡이·시트스틱·채찍 및 이들의 부분품 산류(지팡이 겸용 우산·정원용 산류 및 이와 유사한 산류를 포함한다)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제 67 류	조제우모와 솜털 및 구제품, 조화, 인도제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 68 류	석·플라스터·시멘트·석면·운모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 69 류	도자제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ex 제 70 류	유리와 유리제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1)	(2)	(3) or or	(4)
7006	제7003호·제7004호 또는 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을 한 것에 한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 또는 기타의 재료를 붙인 것을 제외한다)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7003호부터 제7005호까지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 또는 합판유리로 된 것에 한한다)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7003호부터 제7006호까지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7008	유리제의 복층절연유니트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7003호부터 제7006호까지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7009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7003호부터 제7006호까지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ex 제 71 류	천연 또는 양식 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천연 또는 양식진주(가공한 것인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실로 펜것, 장착 또는 세트된 것을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펜것을 포함한다)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7101	가공된 귀석 및 반귀석(천연, 합성 또는 재생된 것), 귀금속은(금 또는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7102 내지 7105	은을 입힌 비금속(일차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7106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아니한 것·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7107	금을 입힌 비금속 또는 은(일차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7108	백금(가공하지 아니한 것, 일차제품 형상의 것 또는 분상의 것에 한한다)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7109	백금을 입힌 비금속·은 또는 금(일차제품보다 더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7110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것에 한한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7111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7116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7117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or	(4)
제 72 류	철강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ex 제 73 류	철강의 제품 7301 철강제의 강시판(천공 또는 조립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용접된 형강 7302 철강제의 철도 또는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궤조·체크궤조와 치형궤조·첨단궤조·교차구류·전철봉과 기타 크로싱피스·침목(크로스 타이)·계목판·좌절·좌절쇄기·저판(베이스 플레이트)·궤조클립·노반·격재 및 궤조의 접속 또는 고착에 전용되는 기타의 재료에 한한다] 7304, 7305, 7306 철강제(주철제를 제외한다)의 판과 중공프로파일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7315	철강제의 체인과 그 부분품 - 스키드 체인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7315.20			
제 74 류	동과 그 제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 75 류	니켈과 그 제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ex 제 76 류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01 알루미늄의 괴 7602 알루미늄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제 77 류	HS에서 미래에 사용될 수 있을 것에 대비하여 확보되었음		
제 78 류	연과 그 제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 79 류	아연과 그 제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 80 류	주석과 그 제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 81 류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or (4)
ex 제 82 류 8206	비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불이·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제8202호 내지 제8205호에 해당하는 둘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을 제외. 그러나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의 도구가 세트에 포함될 수 있되 그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207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의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공구 (예: 프레싱·스탬핑·편 청·탭핑·드레딩·드릴링·보링·브로칭·밀링·터닝 또는 스크루드라이빙 용의 것)(금속의 인발 또는 압출용·다이와 착암용 또는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208	기계용 또는 기구용의 칼과 절단용 칼날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제 83 류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ex 제 84 류 8407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다만, 다음을 제외 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터리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08	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디젤엔진 또는 세미디젤엔진)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09	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적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13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액체엘리베이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14	기체 또는 진공펌프, 공기 또는 기타기체 압축기 또는 펜; 필터가 있거나 없는 펜이 결합된 환기 또는 재활용 후드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25 내지 8428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8431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or (4)	
8429	자주식의 불도저·앵글도저·그레이더·레벨러·스크레이퍼·메카니컬셔블·엑스카베이터·셔블로우더·탬핑머신 및 로드로울러 기타의 이동·정지·지균·스크레이핑·굴착·탬핑·콤팩팅·채굴 또는 천공용의 기계(토양·광석 또는 광물용의 것에 한한다), 향타기와 향발기 및 스노우플라우와 스노우블라우어 방직산업용으로서 이호에 해당하는 기계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8431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8431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30			
8444 내지 8447			
8456 내지 8465	공작기계, 기계, 부분품 및 제 8456호부터 8465호에 해당하는 부속품 타자기(제8471호의 프린터 기를 제외한다)와 워드프로세싱머신 계산기와 계산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회계기·우편요금계기·표권발행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 (계산기구를 갖춘 것에 한한다), 금전등록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8448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69			
8470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 기타의 사무용 기계(예: 등사기·주소인쇄기·현금자동지불기·주화분류기·주화계수포장기·연필절삭기·천공기·지철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472			
ex 제 85 류	전기기계 및 도구 및 그 부분; 녹음기 및 음성 재생기, 텔레비전 영상 및 녹음기 및 재생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단, 다음을 제외: 전동기 및 발전기 (발전세트를 제외한다)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8503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01			

(1)	(2)	(3) or	(4)
8502	발전세트 와 회전변환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8501호 와 제8503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35 및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8538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37	전기제어용 또는 배전용의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넷 기타의 기반(제8535호 또는 제8536호의 기기를 두가지 이상 장착한 것에 한하며 제90류의 기기 및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고, 제8517호의 교환기기를 제외한다)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8538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은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44	절연전선·케이블(동축 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기타의 전기 절연도체(에나멜 도포 또는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하며,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한 것으로 만든 것에 한하며, 전기도체 또는 접속자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45	탄소 전극·탄소 부러쉬·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 와 기타의 흑연 또는 탄소제품(전기용의 것에 한하며, 금속의 함유여부를 불문한다) 애자(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46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전기기기용의 절연용 물품(나선 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를 제외한다) 및 비금속제의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에 한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547			

(1)	(2)	(3) or (4)	
8548	일차전지 및 축전지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축전지·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 86 류	철도 또는 궤도용의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 또는 궤도용의 장비품과 그 부분품 및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철도 또는 궤도 선로용 장치물과 철도·궤도·도로·내륙 수로·주차장·항만·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의 신호·안전·교통관제용의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608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 87 류	엔진을 갖춘 액시(제8701호 내지 제 8705호의 자동차용에 한한다)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8701호부터 제8705호의 자동차용에 한한다)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것에 한한다) 공장·창고·부두 또는 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의 것으로 권양 또는 하역용 장비가 결합되지 아니한 자주식의 작업차와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및 이들의 부분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706	전차와 기타의 장갑차량(자주식의 것에 하하며, 무기의 장비 여부를 불문한다) 및 이들의 부분품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707			
8708			
8709			
8710			

(1)	(2)	(3) or (4)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사이드카 볼베어링이 없는 이륜자전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712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제8714호로부터는 제외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713	신체장애인용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 구동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714	제8711호 내지 제8713호의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715	유모차와 그 부분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8716	트레일러와 세미 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기타의 차량 및 이들의 부분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 88 류	항공기, 우주선 및 이들의 부분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착륙 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훈련장치 및 이들의 부분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3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제 89 류	선박과 수상 구조물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 90 류	광학기기, 사진용기기, 영화용기기, 측정기기, 검사기기, 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사진기 (영화용의 것을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 와 제8539호의 방전램프와의 섬광전구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 (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 기타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검사기기를 포함한다)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or (4)
9019	기계요법용 기기, 맷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및 오존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 또는 기타 의 치료용 호흡기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9021	정형외과용의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치료용의 부목과 기타 골절치료구, 인조의 인체부분, 보청기, 결합·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 또는 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의료용 또는 수의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방사선 사진용 또는 방사선 치료용의 기기·엑스선관과 기타의 엑스선발생기·고압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 또는 치료용의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포함한다)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제 91 류	시계와 그 부분품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제 92 류	악기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제 93 류	무기·총포탄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제 94 류	가구와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서포트·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램프와 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1)	(2)	(3) or (4)
9405	램프와 조명기구(서치라이트·스포트라이트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며,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조립식 건축물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406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ex 제 95 류	완구·유희용구, 운동용구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기타의 완구·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각종의 퍼즐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503		
ex 제 96 류	잡품 비·브러쉬 (마당비와 그와 유사한 것, 그리고 담비와 다람쥐 털로 만든 것은 제외 한다).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 모프와 깃 먼지털이, 페인트용의 패드와 로울러 및 스퀴지 개인용의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신발 또는 의류 청소용의 것에 한한다)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세트의 각 구성품은 세트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구성품에 적용되는 규정을 종족시켜야 함. 그러나 비원산지 물품은 세트화 할 수 있음. 단 총 가치가 세트의 공장도 가격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9603		
9605		
9606	단추·프레스 파스너·스냅파스너와 프레스스터드·단추의 모울드와 이들의 부분품 및 단추블랭크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9613	압력식 점화 라이터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다만, 사용된 재료의 가치가 그 생산품의 공장도 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생산
제 97 류	예술품·수집품과 골동품	다른 호의 재료로부터의 생산

부속서 I 의 부록 3

제15조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의 문안

아래에 기재된 문안의 원산지신고서는 각주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각주는 원산지신고서에 포함될 필요는 없다.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는 다음의 문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서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는(수출허가번호¹⁾ ...), 달리 명시적으로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상품은²⁾특혜원산지 상품임을 신고한다.”

.....³⁾

(장소 및 일시)

.....⁴⁾

(수출자의 서명. 서명인의 성명을
명확하게 함께 기입할 것)

.....⁵⁾

(특기사항)

1) 원산지신고서가 제16조의 의미 내에서 등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된 경우, 등록수출자의 등록번호가 이 란에 기재되어야 한다. 원산지신고서가 등록수출자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팔호안의 내용이 생략되거나, 공란으로 남겨 둔다.

2) 상품의 원산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또는 스위스) ISO-알파-2단위 코드의 사용이 허용된다(KR, IS, NO 또는 CH). 각 상품의 원산지 국가를 기재하여야 하는 송장의 특정란에 그 부호를 기재할 수 있다.

3) 해당 정보가 이 서류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내용은 생략될 수 있다.

4) 등록수출자의 서명은 요구되지 아니한다. 서명 면제는 서명인의 성명 기재 면제도 포함한다.

5) 예를 들어, 부속서 I 의 부록 4 제3항에 따른 상품의 경우, 다음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한다.

“부속서 I 의 부록 4(영역원칙의 면제)의 규정이 적용된다”

부속서 I 의 부록 4

영역원칙의 면제

1. 부속서 I 의 제13조에 따라, 원산지 지위의 취득은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되고 추후 그 당사국에 재수입되는 재료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 제5항가호에 규정된 대로 총 추가가격이 원산지 지위가 주장된 최종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 나. 당해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재료가, 그 당사국 영역 밖으로 수출되기 전에 그 당사국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제6조에서 열거된 불충분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칠 것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부록의 끝 부분에 규정된 표에 열거된 상품의 경우, 원산지 지위의 취득은 당해 당사국에서 수출되고 추후 그 당사국에 재수입된 재료에 대하여 당사국 영역 밖의 지역, 예를 들어 공단에서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 가. 제5항나호에 규정된 대로 비원산지 투입요소의 총 가격이 원산지 지위가 주장된 최종상품의 공장도 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 나. 당해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된 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재수입된 재료 또는 상품을 제조하는 데 사용된 재료의 총 가격의 60퍼센트 이상일 것

3. 제1항 및 제2항의 목적상, 재수입된 상품이 수출된 재료의 작업 또는 가공을 통하여 제조자에게 획득되었음이 관세당국에 충분히 입증되어야 한다. 제2항의 목적상, 다음의 문장이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되는 원산지신고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부속서 I 의 부록 4(영역원칙의 면제)의 규정이 적용된다”.

4. 제1항의 목적상, 부속서 I 의 부록 2의 규정이 특정 비원산지 재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경우, 그러한 제한 또는 금지는 당해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수행된 작업 또는 가공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또한,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

료의 최대 가격을 규정하는 부속서 I의 부록 2의 규정이, 해당 최종상품의 원산지 지위의 결정에 적용되는 경우, 제5항나호에 규정된 대로 비원산지 투입요소의 총 가격이 기재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5. 총 추가가격과 비원산지 투입요소의 총 가격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제1항의 목적상, “총 추가가격”은 수송비용을 포함하여, 당해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축적된 비용 뿐만 아니라 당해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된 모든 재료의 가격을 말한다. 그리고

나. 제2항 및 제4항의 목적상, “비원산지 투입요소의 총 가격”은 해당 당사국의 영역 밖에서 추가된 모든 자료 그리고 수송비용을 포함하여 축적된 모든 다른 비용 뿐만 아니라 영역 안에서 추가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말한다. 당사국에서 원산지 지위를 이미 취득한 비원산지 재료는 비원산지 투입요소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6.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부속서 I의 부록 2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상품 그리고 부속서 I의 제5조제2항에 기재된 일반 미소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7. 제2항에 규정된 표를 포함하여, 이 부록의 개정은 이 협정 제8.1조제7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기간 내에 내려지는 공동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8.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세 번째 해에, 당사국들은 이 부록의 규정과 이행을 검토하고, 당사국들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규정을 개정한다.

표

제 39 품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0710, 390720, 390810, 391000, 392113, 392310, 392330, 392350, 392390,
392690

제 40 류 고무와 그 제품

401699

제 42 류 가죽제품·마구·여행용구·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와
동물의 거트(누에의 거트를 제외한다)의 제품

420211, 420212, 420221

제 61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한다)

610110, 610120, 610130, 610190, 610210, 610220, 610230, 610290, 610311,
610312, 610319, 610321, 610322, 610323, 610329, 610331, 610332, 610333,
610339, 610341, 610342, 610343, 610349, 610411, 610421, 610431, 610441,
610442, 610443, 610444, 610449, 610451, 610452, 610453, 610459, 610461,
610462, 610463, 610469, 610510, 610520, 610590, 610610, 610620, 610690,
610910, 610990, 611011, 611012, 611019, 611020, 611030, 611090, 611211,
611212, 611219, 611220, 611231, 611239, 611241, 611410, 611420,
611430, 611490

제 62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

620111, 620112, 620113, 620119, 620191, 620192, 620193, 620199, 620211,
620212, 620213, 620219, 620291, 620292, 620293, 620299, 620311, 620312,
620319, 620321, 620322, 620323, 620329, 620331, 620332, 620333, 620339,
620341, 620343, 620349, 620411, 620412, 620413, 620419, 620421, 620422,
620423, 620429, 620431, 620432, 620433, 620439, 620441, 620442, 620443,
620444, 620449, 620451, 620452, 620453, 620459, 620461, 620462, 620463,
620469, 620510, 620520, 620530, 620590, 620610, 620620, 620630, 620640,
620690, 620711, 620719, 620721, 620722, 620729, 620791, 620792, 620799,
620811, 620819, 620821, 620822, 620829, 620891, 620892, 620899, 620910,

620920, 620930, 621010, 621020, 621030, 621040, 621050, 621111, 621112,
621120, 621131, 621132, 621141, 621142, 621143, 621149

제 64 류 신발류·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과 이들의 부분품

640299, 640399, 640411, 640610

제 70 류 유리와 유리제품

701590

**제 71 류 천연 또는 양식진주·귀석 또는 반귀석·귀금속·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과 주화**

711719, 711790

제 73 류 철강의 제품

732393

제 81 류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810990

제 82 류 비금속제의 공구·도구·칼붙이·스푼과 포크 및 이들의 부분품

820730, 821300

제 83 류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830230

제 84 류 원자로·보일러와 기계류 및 이들의 부분품

840991, 841330, 841510, 841582, 841583, 841590, 842123, 842131, 842139,
842410, 842420, 842490, 848590

**제 85 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50431, 851220, 851190, 852990, 853400, 853630, 853650, 853669, 853690,
853929, 854091

제 87 류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70991, 871499

**제 90 류 광학기기·사진용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와
의료용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2690

제 91 류 시계와 그 부분품

910111, 910112, 910119, 910121, 910129, 910191, 910199, 910211, 910212,
910219, 910229, 910291, 910299, 910310, 910390, 910400, 910511, 910519,
910521, 910529, 910591, 910599, 910610, 910620, 910690, 910700, 910811,
910812, 910819, 910820, 910890, 910911, 910919, 910990, 911011, 911012,
911019, 911090, 911110, 911120, 911180, 911190, 911220, 911290, 911310,
911320, 911390, 911410, 911420, 911430, 911440, 911490

제 96 류 잡품

961610

부속서 II

제1.2조제2항에 규정된 지리적 적용

이 협정을 비준할 때, 노르웨이왕국은 상품무역을 제외하고 스발바드 지역에
이 협정의 적용을 배제할 권리를 갖는다.

부속서 III

제2.1조제1항가호에 규정된 적용배제 상품

HS 세번	상품 설명	다음 국가로 수입될 경우
29.05	비환식알콜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슬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 기타 다가알콜	
2905.43	-- 만니톨	대한민국
2905.44	-- 디-글루시톨(소르비톨)	대한민국
3301	정유(콘크리트와 앱설루트의 것을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레진노이드, 추출한 올레오레진, 정유의 콘센트레이트(냉흡수법 또는 온침법에 의하여 얻어진 것으로서 유지·불휘발성유·왁스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로 한 것에 한한다), 정유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및 정유의 애큐어스디스틸레이트와 애큐어스솔루션 - 기타, 인삼(백삼, 홍삼 및 기타 인삼)에서 추출한 올레오레진	대한민국
ex 3301.90		
35.01	카세인·카세인산염과 기타 카세인 유도체 및 카세인글루	대한민국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알부민산염과 기타 알부민 유도체 - 난백	
3502.11	-- 건조한 것	대한민국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3502.19	-- 기타	대한민국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3502.20	-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노르웨이
3502.90	- 기타	대한민국 노르웨이
3503.00	겔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쉬트상의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 및 기타 동물성글루(제3501호의 카세인글루를 제외한다)	대한민국
3504.00	펩톤과 그들의 유도체,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하이드파우더(크롬 명반을 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대한민국

HS 세번	상품 설명	다음 국가로 수입될 경우
35.05	텍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예 :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 및 전분·텍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 - 텍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3505.10		대한민국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3505.20	- 글루	대한민국
ex 3505.20	- 글루, 동물사료용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38.09	완성가공제·염색촉진용 또는 염료고착용의 염색캐리어·드레싱 및 매염제와 같은 기타의 물품과 조제품(섬유공업·제지공업·파혁 공업 기타 이와 유사한 공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전분질을 기제로 한 것	
3809.10	- 전분질을 기제로 한 것, 동물사료용	대한민국
ex 3809.10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38.23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및 공업용 지방성 알콜 -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의 정제시 생긴 애시드유	
ex 3823.11	-- 스테아르산, 동물사료용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ex 3823.12	-- 올레산, 동물사료용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ex 3823.13	-- 톨유 지방산, 동물사료용	노르웨이
ex 3823.19	-- 기타, 동물사료용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ex 3823.70	-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동물사료용	노르웨이
38.24	조제점결제(주물의 주형용 또는 코어용의 것에 한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 소호 2905.44의 것을 제외한 소르비톨	
3824.60		대한민국

부속서 IV

제2.1조제1항나호에 규정된 가공농산물

제 1 조

1. 제2조에 규정된 상품에 포함된 농산물 원료의 비용상 차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이 협정은 다음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 가. 수입시 조세 징수. 그리고
 - 나. 수출시 채택된 조치의 적용

2. 수입시 징수된 조세와 수출시 채택된 조치는 해당 상품에 포함된 농산물 원료의 국내가격과 국제가격 간 차이에 근거하여야 하나, 이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2 조

제1조에 규정된 규정을 고려하여,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요청될 수 있는 검토에 기초하여,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표 1에 명기된 상품에 대하여 2005년 4월 1일 현재 유럽공동체에 제공되고 있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는 대우를 부여한다.

제 3 조

1.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표 1에 명기된 상품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표 2에 규정된 대우를 부여한다.
2. 특혜 관세율이 “B2”로 기재된 상품에 대하여, 관세율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첫 번째 단계가 시행되면서 동등한 6단계로 점진적으로 철폐되고, 후속 단계는 2007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매년도 1월 1일에 시행되며 2011년 1월 1일부터 완전 철폐된다.

3. 특혜 관세율이 “B4”로 기재된 상품에 대하여, 관세율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첫 번째 단계가 시행되면서 동등한 11단계로 점진적으로 철폐되고, 후속 단계는 2007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매년도 1월 1일에 시행되며 2016년 1월 1일부터 완전 철폐된다.

제 4 조

당사국들은 초기에, 적어도 발효 전에, 제1조에 따라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조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이 부속서가 다루고 있는 상품에 대한 무역 상황을 공동위원회의에서 검토한다. 이러한 검토에 비추어 그리고 당사국과 다른 자유무역 상대국 간의 약정 및 세계무역기구에서의 약정을 고려하여,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이 부속서의 품목 적용범위의 가능한 변경에 대하여, 그리고 제1조에 따라 적용되는 조치의 가능한 개선에 대하여 결정한다.

부속서 IV의 표 1

HS 세번	상품 설명
0403	버터밀크·옹고유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실 및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요구르트 -- 향 또는 과실 및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한 것
ex 10	- 기타 -- 향 또는 과실 및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한 것
ex 90	
0501	인모(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며, 세척한 것인지 또는 세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그 웨이스트
0502	돼지털·멧돼지털·오소리털 및 기타 부러쉬 제조용의 수모와 그 웨이스트
0503	마모와 그 웨이스트(층상으로 한 것인지 또는 지지물을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0505	새의 우모피와 우모가 붙은 기타 부분, 새의 깃털과 그 부분(가장자리가 정리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새의 솜털(청정·소독 또는 보존을 위한 처리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새의 깃털 또는 그 부분의 분과 웨이스트
0507	아이보리·귀갑·고래수염과 그 털·뿔·사슴뿔·발굽·발톱 및 부리(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 및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08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을 제외한다) 및 연체동물·갑각류 또는 극피동물의 껌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아니한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에 한하며,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을 제외한다)와 이들의 분과 웨이스트
0509	동물성의 해면
0510	용연향·해리향·시빗과 사향·캔대리디즈·담즙(건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과 의약품 제조용의 선이나 기타 동물성 생산품(신선·냉장·냉동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일시 저장처리를 한 것에 한한다)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아니한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찐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
40	- 스위트 콘(사카라타 품종)

HS 세번	상품 설명
0711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 또는 기타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ex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채소 및 채소류의 혼합물 -- 스위트 콘(사카라타 품종)
0901	커피(볶은 것인지 또는 카페인을 제거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커피의 각과 껌 및 커피를 함유한 커피대용물
0902	차류(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302	식물성의 수액과 액스, 펙틴질, 펙티닝산염과 펙틴산염,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기타의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 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성 수액과 액스 -- 감초의 것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프의 것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충국의 것 또는 로테논을 함유하는 식물뿌리의 것
ex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 음료수 또는 음식재료의 제조를 위한 식물성 추출물의 혼합물 --- 음료수 또는 음식재료 또는 바닐라 올레오레진의 제조를 위한 식물성 추출물의 혼합물 외의 약용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펙틴질·펩티닝산염 및 펙틴산염 -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천
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우커스트두·로우커스트두의 씨 또는 구아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 및 디크너(변성가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1401	편조물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대·등·갈대·꼴풀·양버드나무·라피아 및 청정·표백 또는 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수피)
1402	충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케이폭·식물성 헤어 및 거머리 말)(충상으로 한 것인지, 지지물을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403	비 또는 부리쉬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수수류·피아사바·카우치 그라스 및 이스탈리)(다발 또는 꾸러미 상태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 세번	상품 설명
1404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물성 생산품
1516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리에스텔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ex 20	-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 “오펠 왁스”로 불리는 가수 피마자유
1517	마가린 및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
ex 10	- 마가린(액상마가린을 제외한다) -- 유지의 무게가 10% 초과 15% 이하로 포함하고 있는 것
ex 90	- 기타 -- 유지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 초과 15% 이하인 것 -- 몰드가 가미된 조제품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식용 혼합물 또는 조제품
1518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취입·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하에서 가열증합하거나 기타 화학적 변성을 한 것에 한하며, 제1516호의 해당품을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 또는 이 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ex 00	리녹신
1520	글리세롤(조상의 것에 한한다), 글리세롤 수 및 글리세롤 폐액
1521	식물성 납(트리글리세라이드를 제외한다)·밀납 기타 곤충납과 경납(정제 또는 착색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522	데그라스 및 지방성 물질 또는 동식물성 납의 처리시에 생기는 잔유물
1702	기타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맥아당·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 상태인 것에 한한다)·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인조꿀(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캐러멜당
50	-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ex 90	- 기타[전화당 및 기타의 당류와 당시럽혼합물(건조상태에서 과당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인 것에 한한다)을 포함한다] -- 화학적으로 순수한 맥아당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코렛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

HS 세번	상품 설명
1803	코코아 페이스트(탈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804	코코아 버터(지 또는 유)
1805	코코아 분말(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제외한다)
1806	초코렛과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
1901	맥아엑스와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및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육 또는 기타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라사그네·그노치·레비오리·카넬로니 등과 같이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우스쿠우스(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리하지 아니한 파스타(속을 채우지 아니하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조란을 넣은 것 -- 기타 ex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 소시지, 고기, 고기내장 또는 꾀 또는 이들의 혼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20% 이상 포함된 그 밖의 제품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의 파스타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쿠우스쿠우스
1903	타피오카 및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상·낟알상·진주상·무거리상 기타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에 한한다)
1904	콘플레이크 기타 이와 유사한 조제식료품(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것에 한한다)과 낫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 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게기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HS 세번	상품 설명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시일링웨이퍼·라이스페이퍼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2001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ex 90	- 기타 -- 스위트 콘(사카라타 품종), 팜 하트, 참마, 고구마 및 유사한 식물의 식용 부분(전분의 함량이 전 중량의 5% 이상인)
2002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토마토(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90	- 기타
20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며, 냉동한 것에 한하고,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ex 10	- 감자 -- 가루, 굵은 가루 또는 플레이크의 형태의 것
ex 90	- 기타 채소 및 채소의 혼합물 -- 스위트 콘(쟈 메이스 변종, 사카라타)
20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식초 또는 초산으로 처리한 것을 제외하며, 냉동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고, 제2006호의 물품을 제외한다)
ex 20	- 감자 -- 가루, 굵은 가루 또는 플레이크의 형태의 것
80	스위트 콘 (쟈 메이스 변종, 사카라타)
2006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드레인한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ex 2006	- 스위트콘(쟈 메이스 변종, 사카라타)
2007	잼·과실제리·마말레이드·과실 또는 견과류의 퓨레 및 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조리해서 얻어진 것에 한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008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ex 11	- 견과류, 낙화생, 기타 씨앗(함께 혼합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 낙화생 --- 퍼넛 버터 --- 낙화생 (구운 것)

HS 세번	상품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나 제2008.19호의 혼합물을 제외한다)
91 ex 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팜 하트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트콘(사카라타 품종) 외의 옥수수(콘)
2101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대용물 및 이들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2102	효모(활성 또는 불활성의 것에 한한다), 기타 단세포미생물(죽은 것에 한하며, 제3002호의 백신을 제외한다) 및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
2104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
2105	아이스크림과 기타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10 ex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단백질계 물질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미를 첨가하거나 착색 설탕시럽 외의 것
2201	물(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과 얼음 및 눈
2202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제2009호의 과실쥬스와 채소쥬스를 제외한다)
2203	맥 주
2205	베르못과 기타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 물질로 향미를 가한 것에 한한다)
2207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에 한한다) 및 변성에틸알콜과 기타 변성주정(알콜의 용량을 불문한다)
2207.20	- 변성에틸알콜 및 기타 변성주정(알콜의 용량을 불문한다)
2208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콜(알콜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에 한한다), 증류주·리큐르 기타 주정음료
2209	식초 및 초산으로 만든 식초대용물

부속서 V

제2.1조제1항다호에 규정된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물

제 1 조

표 1에 명기된 어류 및 그 밖의 수산물은 이 부속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 규정의 적용대상이 된다.

표 1

HS 호	HS 세번	상품 설명
02.08 제 3 류	ex 0208.40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 고래의 것 ¹⁾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15.04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정체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²⁾
15.16	ex 1516.10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텔화한 것, 리에스텔화한 것 또는 엘라이딘화한 것에 한하며, 정제한 것을 포함하고 더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 동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 -- 생선 또는 해양 포유류로부터 전적으로 획득된 것
16.03	ex 1603.00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³⁾ - 고래고기·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⁴⁾
16.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16.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23.01	ex 2301.10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수지박 - 육 또는 설육의 분·조분·펠리트 및 수지박 -- 고래의 것 ⁵⁾
	2301.20	-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
23.09	ex 2309.90	사료용 조제품 - 기타 -- 어류 가용성 물질

1) 고래 상품에 대한 수입금지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근거하여 대한민국, 리히텐슈타인 및 스위스에 의하여 적용된다.

2) 각주 1을 참조

3) 각주 1을 참조

4) 각주 1을 참조

5) 각주 1을 참조

제 2 조

이 협정 발효일에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은, 제3조 및 제4조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표 1에 명기된 상품의 수입에 대한 모든 관세와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부과금을 철폐한다.

제 3 조

리히텐슈타인공국의 영역을 포함하여 스위스는 표 2에 명기된,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

표 2

HS 세번	상품 설명
ex 15.04 및 ex 1516.10	식용을 위한 유지
ex 2301.10 및 ex 2301.20	동물사육용 식용 재료
ex 2309.90	동물사육용 식용 재료

제 4 조

1. 대한민국은 제2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관세철폐 일정에 따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표 3에 명기된 상품의 수입에 대한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부과금을 철폐한다.

2. 표 3에 “B1” 유형 하에 명기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대한민국으로의 수입에 대한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부과금은 다음 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 이 협정 발효시 기준관세의 75퍼센트로
- 2007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50퍼센트로
- 2008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25퍼센트로

- 2009년 1월 1일 잔존관세가 철폐된다.

3. 표 3에 “B2” 유형 하에 명기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대한민국으로의 수입에 대한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부과금은 다음 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 이 협정 발효시 기준관세의 83페센트로
- 2007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67페센트로
- 2008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50페센트로
- 2009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34페센트로
- 2010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17페센트로
- 2011년 1월 1일 잔존관세가 철폐된다.

4. 표 3에 “B3” 유형 하에 명기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대한민국으로의 수입에 대한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부과금은 다음 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 이 협정 발효시 기준관세의 87페센트로
- 2007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75페센트로
- 2008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62페센트로
- 2009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50페센트로
- 2010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37페센트로
- 2011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25페센트로
- 2012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12페센트로
- 2013년 1월 1일 잔존관세가 철폐된다.

5. 표 3에 “B4” 유형 하에 명기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대한민국으로의 수입에 대한 관세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부과금은 다음 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 이 협정 발효시 기준관세의 91페센트로
- 2007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82페센트로
- 2008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73페센트로
- 2009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64페센트로

- 2010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55퍼센트로
- 2011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45퍼센트로
- 2012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36퍼센트로
- 2013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27퍼센트로
- 2014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18퍼센트로
- 2015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9퍼센트로
- 2016년 1월 1일 잔존관세가 철폐된다.

6. 표 3에 “TRQ” 유형 하에 명기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다음에 따라 관세율할당 제도를 적용한다.

- 가. 연간 총 할당량은 500 메트릭 톤이 된다.
- 나.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해당 상품의 대한민국으로의 수입에 대한 할당량 내 관세와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부과금은 무세화된다.
- 다.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해당 상품의 대한민국으로의 수입에 대한 할당량 외 관세와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부과금은 대한민국의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이 적용된다.
- 라. 가호 및 나호의 목적상, 관세율할당은 수입 당사국이 시행한다. 관세율할당은 수입 당사국이 수출 당사국과 협력하여 관리하고, 총 할당량 비율은 수입 당사국이 배분한다.
- 마. 관세율할당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6년째부터 검토된다.

7. 표 3에 “R” 유형 하에 명기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대한민국으로의 수입에 대한 관세와 이와 동등한 효과를 가지는 부과금의 철폐와 점진적 철폐일정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7년 이내에 이 협정의 전반적 목적을 인식하며, 공동위원회에서 검토된다.

표 3

HS 세번	상 품 설 명	기준세율	유형
0208	기타의 육과 식용설육(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208400000	고래,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및 바다소(바다 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⁶⁾	30	R
0301	활 어		
030110	관상용의 것		
0301101000	금잉어	10	R
0301102000	열대어	10	R
0301109000	기 타	10	R
03019	기타의 활어		
030192	뱀장어(앵귈라종)		
0301921000	실장어	10	R
0301929000	기타의 것	30% 또는 1,908원/kg 중 큰 것	R
0301930000	잉 어	10	R
030199	기 타		
0301992000	방 어	10	R
0301994000	돔	45% 또는 3,292원/kg 중 큰 것	R
0301995000	붕장어	10	R
0301996000	갯장어	10	R
0301997000	먹장어	10	R
0301998000	넙치류	10	R
03019990	기 타		
0301999010	능성어	10	R
0301999020	복 어	10	R
0301999030	틸라피아	10	R
0301999040	볼락(적어 포함)	10	R
0301999050	농 어	45	R
0301999060	송 어	10	R
0301999070	미꾸라지	10	R
0301999080	메 기	10	R
030199909	기 타		

6) 각주 1을 참조

HS 세번	상 품 설 명	기준세율	유형
0301999091	노래미(헥사그라모스종, 아그라무스종)	10	R
0301999092	붕 어	10	R
0301999094	초 어	10	R
0301999095	민 어	36	R
0301999099	기 타	10	B2
0302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03023	다랑어(터너스속의 것)와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버니토우(유티너스<카추워누스>펠라미스).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03023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20	B4
0302340000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	20	B2
03026	기타 어류.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0302610000	정어리(사르디나필차르두스·사르디노프스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 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스프라투스)	20	B2
0302640000	고등어(스콤버스콤브루스·스콤버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버자포니쿠스)	20	B2
0302650000	곱상어와 기타상어	20	B2
0302660000	뱀장어(앵귈라 종)	20	B2
030269	기 타		
0302691000	명 태	20	B3
0302692000	방 어	20	B4
0302693000	갈 치	20	B4
0302694000	돔	20	B4
0302695000	붕장어	20	B4
0302696000	갯장어	20	B4
0302697000	전갱이	20	B4
0302698000	꽁치(학꽁치 포함)	20	B4
03026990	기 타		
0302699010	삼 치	20	B4
0302699020	복 어	20	B4
0302699030	병 어	20	B4
0302699040	아 귀	20	B2
030270	간장과 어란		
0303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HS 세번	상 품 설 명	기준세율	유형
03031	태평양연어(양코링кус 넬카·양코링кус 고르부스카·양코링кус 케타·양코링кус 차비차·양코링кус 키수초·양코링кус 마소 및 양코링кус 로두루스).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0303110000	소크아이 연어(홍연어)(양코링кус 넬카)	10	B2
0303190000	기 타	10	B2
03032	기타 연어류.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0303220000	대서양연어(살모살라)와 다뉴브연어(후코후코)	10	B1
0303290000	기 타	10	B4
03033	넙치류(플루로 넥티대·바디대·사이노글로시대·솔레이대·스코프탈미대·시타리대).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0303330000	서대(솔레아종)	10	B2
0303390000	기 타	10	B2
03034	다랑어(터너스속의 것)와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베니토우(유티너스<카추워누스>펠라미스).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03034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10	B2
0303430000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베니토우	10	B2
0303440000	눈다랑어(터너스오베서스)	10	B2
0303490000	기 타	10	B2
030360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가두스 오각·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10	B2
03037	기타 어류 다만, 간장과 어란을 제외한다.		
0303710000	정어리(사르디나필차르두스·사르디노프스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종), 브리스링 또는 스프랫(스프라투스스프라투스)	10	B2
0303740000	고등어(스콤버스콤브루스·스콤버오스트랄라시쿠스·스콤버자포니쿠스)	10	TRQ
0303750000	곱상어와 기타 상어	10	B2
0303780000	민대구(메루키우스종·유르피키스종)	10	B2
030379	기 타		
0303791000	명 태	30	R
0303792000	은대구	10	B4
0303793000	갈 치	10	B4
03037940	돕		
0303794010	옥돔(브랜치오스테거스 자포니커스)	10	B2
0303794090	기 타	10	B2
0303795000	봉장어	10	B4

HS 세번	상 품 설 명	기준세율	유형
0303796000	조 기	10	B4
0303797000	전갱이	10	B3
0303798000	꽁치(학꽁치 포함)	40	R
03037990	기 타		
0303799010	삼 치	10	B4
0303799020	복 어	10	B4
0303799030	보리멸	10	B4
0303799050	달고기	10	B2
0303799060	임연수어	10	B2
0303799070	볼낙(적어 포함)	10	B2
0303799080	새꼬리 민태	10	B4
030379909	기 타		
0303799091	아 귀	10	B2
0303799092	먹장어(대서양, 태평양)	10	B2
0303799093	홍 어	30	R
0303799094	밀크피쉬	10	B2
0303799095	민 어	70	R
0303799096	가오리	10	B4
0303799097	까나리	10	B4
0303799098	이빨고기	10	B4
0303799099	기 타	10	B2
030380	간장과 어란		
0303801000	간 장	10	B4
03038020	어 란		
0303802010	명 란	10	B4
0303802090	기 타	10	B1
0304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잘게 썰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한다)		
030410	1.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3041010	피레트		
0304101010	붕장어의 것	20	B4
0304101020	가자미의 것	20	B4

HS 세번	상 품 설 명	기준세율	유형
0304101030	참다랑어의 것	20	B2
030420	2. 냉동한 피레트		
0304201000	명태의 것	10	B4
0304202000	봉장어의 것	10	B4
0304204000	가자미의 것	10	B4
0304205000	참다랑어의 것	10	B2
0304206000	이빨고기의 것	10	B4
0304207000	틸라피아의 것	10	B4
0304209000	기 타	10	B1
030490	3. 기타		
03049010	냉동 연육		
0304901010	명태의 것	10	B4
0304901090	기 타	10	B4
0304909000	기 타	10	B3
0305	건조·염장·염수장 또는 훈제한 어류(훈제한 것에 있어서는 훈제과정 또는 훈제이전에 열로 조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어류의 분·조분·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30520	어류의 간장과 어란(건조·훈제·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		
03052040	염장 또는 염수장한 어란		
0305204010	명태의 것	20	B4
0305204020	조기의 것	20	B4
0305204030	청어의 것	20	B4
0305204090	기 타	20	B1
03054	훈제한 어류, 피레트를 포함한다.		
030549	기 타		
0305491000	멸 치	20	B4
0305492000	명 태	20	B4
0305499000	기 타	20	B2
03055	건조한 어류, 염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훈제한 것을 제외한다		
030559	기 타		
0305591000	상어 지느러미	20	B4
0305592000	멸 치	20	B4

HS 세번	상 품 설 명	기준세율	유형
0305593000	명태(북어)	20	B4
0305594000	조기(굴비)	20	B4
0305595000	복 어	20	B2
0305596000	갯장어	20	B2
0305597000	까나리	20	B4
0305599000	기 타	20	B2
03056	염장한 어류(건조 또는 훈제한 것을 제외한다) 및 염수장한 어류		
0305610000	청어(클루페아하렌구스·클루페아팔라시)	20	B2
030563	멸치(엔그로리스 종)		
0305631000	멸치젓	20	B2
0305639000	기타의 것	20	B4
030569	기 타		
0305693000	갈 치	20	B4
0305694000	정어리	20	B2
0305695000	고등어	20	B4
0305696000	조 기	20	B4
0305697000	전갱이	20	B3
0305698000	꽁치(학꽁치 포함)	20	B2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하고,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03061	냉동한 것		
0306110000	닭새우류(팔리누루스종·피누리루스종·자수스종)	20	B2
030613	새우와 보리새우		
0306131000	새우살	20	B2
0306139000	기 타	27	
	- 북쪽분홍새우 종류		B1
	- 북쪽분홍새우 종류 이외		R
0306142000	왕 게	20	B2
0306143000	꽃 게	20	B4
0306149000	기 타	14	B2
03062	냉동하지 아니한 것		
030623	새우와 보리새우		

HS 세번	상 품 설 명	기준세율	유형
0306232000	건조한 것	20	B4
0306233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 북쪽분홍새우 종류 - 북쪽분홍새우 종류 이외	55% 또는 363원/kg 중 큰 것	
030624	계		
03062410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306241010	꽃 계	20	B4
0306241020	대 계	20	B4
0306242000	건조한 것	20	B2
0306243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0	B2
030629	기타[분·조분 및 펠리트를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		
0306291000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B2
0306292000	건조한 것	20	B2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에 한한다)과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을 제외하며, 산 것과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및 갑각류 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과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에 한한다]		
030710	1. 굴		
03071010	가.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307101090	(2) 기타	20	B2
0307102000	나. 냉동한 것	20	B3
0307103000	다. 건조한 것	20	B2
0307104000	라.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0	B2
03072	2. 가리비과의 조개(페텐·클라미스 또는 프라코페텐속의 것으로서 여왕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0307210000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B2
030729	기 타		
0307291000	냉동한 것	20	B3
0307293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20	B2
03073	3. 홍합(미틸루스종·페르나종)		
0307310000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B2
030739	기 타		
0307392000	건조한 것	20	B2

HS 세번	상 품 설 명	기준세율	유형
03074	4.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로시아마크로소마·세피울라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종·로리고종·노토토다루스종·세피오투디스종)		
030741	산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0307412000	오징어	10	B2
030749	기 타		
03074910	냉동한 것		
0307491010	갑오징어	10	B4
0307491020	오징어	27	R
0307492000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10	B4
0307493000	건조한 것	10	B4
03075	5. 문어(옥토푸스종)		
0307510000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20	B4
030759	기 타		
03075910	냉동한 것		
0307591010	문 어	20	B4
0307591020	낙 지	20	B4
0307591030	쭈꾸미	20	B4
0307591090	기 타	20	B4
0307592000	건조한 것	20	B2
0307599000	기 타	20	B4
03079	7. 기타[갑각류 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한다)를 포함한다]		
030791	산 것·신선 또는 냉장한 것		
0307911	연체동물		
03079111	백 합		
0307911190	기 타	20	B4
0307911200	전 복	20	B4
0307911300	소 라	20	B2
0307911400	진주조개	20	B2
0307911500	피조개	20	B4
0307911700	개아지살	20	B4
0307911800	바지락	20	B4
03079119	기 타		

HS 세번	상 품 설 명	기준세율	유형
0307911910	재 첨	20	B4
0307911990	기 타	20	B4
03079190	기 타		
0307919010	성 계	20	B2
0307919020	해 삼	20	B4
0307919030	우렁쉥이	20	B4
0307919090	기 타	20	B4
030799	기 타		
0307991	냉동한 것		
03079911	연체동물		
0307991110	새조개	20	B2
0307991120	개량조개	20	B4
0307991130	바지락	20	B4
0307991140	개아지살	20	B4
0307991150	피조개	20	B4
0307991160	소 라	20	B2
0307991190	기 타	20	B4
03079919	기 타		
0307991910	해 삼	20	B2
0307991920	우렁쉥이	20	B2
0307991990	기 타	20	B2
0307992	건조한 것		
03079921	연체동물		
0307992110	개량조개	20	B2
0307992120	개아지살	20	B2
0307992190	기 타	20	B4
03079929	기 타		
0307992920	해 삼	20	B4
0307992990	기 타	20	B2
0307993	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		
03079931	연체동물		
0307993110	개량조개	20	B2
0307993120	바지락	20	B4
0307993130	소 라	20	B2

HS 세번	상 품 설 명	기준세율	유형
0307993190	기 타	20	B4
03079939	기 타		
0307993910	성 계	20	B4
0307993920	해 삼	20	B2
0307993930	해파리	20	B4
0307993990	기 타	20	B2
1504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⁷⁾		
1504200000	2.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간유를 제외한다)	3	B1
160300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		
1603003000	어류의 엑스	30	B2
1603004000	어류의 즙	30	B2
1603009000	기 타 ⁸⁾	30	B2
1604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아와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16041	어류(원상 또는 조각으로 한 것에 한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160411	연 어		
16041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B2
160412	청 어		
16041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B2
1604129000	기 타	20	B2
160413	정어리·사르디넬라·브리스링 또는 스프렛		
16041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B4
1604139000	기 타	20	B2
160414	다랑어·가다랑어 및 버니토우(사르다 종)		
160414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160414101	다랑어		
1604141011	기름담근 것	20	B2
1604141019	기 타	20	B2
160414102	가다랑어		
1604141021	기름담근 것	20	B2
1604141022	보일드한 것	20	B2
1604141029	기 타	20	B2
160414103	버니토우		
1604141039	기 타	20	B2
1604149000	기 타	20	B4

7) 각주 1을 참조

8) 각주 1을 참조

HS 세번	상 품 설 명	기준세율	유형
160415	고등어		
160415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B4
1604159000	기 타	20	B4
160416	멸 치		
160416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B4
1604169000	기 타	20	B2
160419	기 타		
160419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1604191010	꽁 치	20	B2
1604191020	전갱이	20	B2
1604191030	뱾장어	20	B4
1604191090	기 타	20	B2
16041990	기 타		
1604199010	쥐치포	20	B4
1604199090	기 타	20	B2
160420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1604201000	생선 페이스트	20	B2
1604202000	생선 마리네이드	20	B2
16042040	생선묵		
1604204010	게맛의 것	20	B2
1604204090	기 타	20	B2
1604209000	기 타	20	B4
160430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		
1604301000	캐비아	20	B2
1605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160510	게		
16051010	게 살		
160510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20	B2
1605101020	훈제한 것(밀폐용기에 넣은 것을 제외한다)	20	B2
1605101090	기 타	20	B4
1605109000	기 타	20	B4

HS 세번	상 품 설 명	기준세율	유형
160520	새우와 보리새우		
16052090	기 타		
1605209020	브레드한 것	20	B2
1605209090	기 타	20	B1
160590	기 타		
16059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1605901010	굴	20	B2
1605901020	홍 합	20	B2
1605901030	바지락	20	B4
1605901080	오징어	20	B4
160590109	기 타		
1605901091	전 복	20	B2
1605901099	기 타	20	B4
16059020	훈제한 것(다만, 밀폐용기에 넣은 것을 제외한다)		
1605902010	오징어	20	B4
1605902090	기 타	20	B4
16059090	기 타		
1605909010	조미오징어	20	B4
1605909020	해 삼	20	B4
1605909030	골뱅이	20	B4
1605909040	홍 합	20	B4
1605909090	기 타	20	B4
2301	육·설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 추동물의 분·조분 및 펠리트(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와 수지박 ⁹⁾		
230120	2. 어류·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분· 조분 및 펠리트		
2301201000	어류의 분·조분 및 펠리트	5	B1
2301209000	기 타	5	B2

9) 각주 1을 참조

제 5 조 기술 협력

1.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전반적 목적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의 국가 정책목적에 따라 수산업에 대한 공동작업을 수행하기로 합의한다.
2. 특히, 당사국들은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공동으로 재원을 충당하는 공통관심 사업을 위한 협력관계를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 가. 공동 사안을 이해하기 위한 정책대화와 당사국들의 정책과 활동의 개발에 대한 정보의 교환
 - 나.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수산업 및 양식업에 대한 기술적 전문식견 및 경험의 공유
 - 다. 노르웨이 연구선, 수산업 시설 및 유통 회사에서 어부 및 학생의 훈련.
그리고
 - 라. 과학적 및 기술적 지식, 자료, 통계, 정보 및 수산업 전문가의 교류
3. 이 조의 목적상, 당사국들은 이 협정의 발효일 후 2년 이내에 양해각서를 체결한다. 양해각서에 따라 설립된 공동작업반은 이 조의 이행을 위한 작업계획을 작성한다.

부속서 VI

제2.3조제1항에 규정된 관세

1. 부록에 “B1” 유형으로 분류되어 명기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대한민국으로 수입에 대한 관세는 다음의 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 이 협정 발효시 기준관세의 75페센트로
- 2007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50페센트로
- 2008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25페센트로
- 2009년 1월 1일 잔존관세가 철폐된다.

2. 부록에 “B2” 유형으로 분류되어 명기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대한민국으로 수입에 대한 관세는 다음의 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 이 협정 발효시 기준관세의 83페센트로
- 2007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67페센트로
- 2008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50페센트로
- 2009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34페센트로
- 2010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17페센트로
- 2011년 1월 1일 잔존관세가 철폐된다.

3. 부록에 “B3” 유형으로 분류되어 명기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대한민국으로 수입에 대한 관세는 다음의 일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철폐된다.

- 이 협정 발효시 기준관세의 87페센트로
- 2007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75페센트로
- 2008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62페센트로
- 2009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50페센트로
- 2010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37페센트로
- 2011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25페센트로

- 2012년 1월 1일 기준관세의 12퍼센트로
- 2013년 1월 1일 잔존관세가 철폐된다.

4. 부록에 “R” 유형으로 명기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의 대한민국으로 수입에 대한 관세의 철폐는 이 협정 발효일 후 3년 이내에 공동위원회에서 검토하고, 그 후 필요하다면 2년 간격으로 검토한다. 그 동안 대한민국이 이러한 상품의 수입에 대하여 제3국에 특혜대우를 부여하는 경우 유럽 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게도 동등한 대우를 부여할 것을 약속한다.

부속서 VII
제3.16조제3항에 규정된 구체적 약속의 양허표

부록 1 : 대한민국
부록 2 : 아이슬란드
부록 3 : 리히텐슈타인
부록 4 : 노르웨이
부록 5 : 스위스

부속서 VII의 부록 1
대한민국 - 제3.16조에 규정된 구체적 약속의 양허표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수평적 양허			
<p>* “약속 안함*”은 기술적 실현가능성의 부족을 이유로 약속 안하는 것을 말함.</p> <p>** CPC (UN잡정중심상품분류: 국제연합통계사무소, 1991) 번호위의 별표(**)는 이 양허표상의 해당 서비스업종이 CPC 번호에 의하여 분류된 서비스 분야 또는 업종의 일부만을 포함하는 것을 나타냄.</p>			
이 양허표에 포함된 전분야	<p>3) 다른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에너지, 항공 등의 분야에서 기존 국내 기업의 구주를 취득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음. 새로이 민영화된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제한될 수 있음.</p>	<p>3) 토지취득은 다음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외국인토지법상 외국법인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기업의 토지취득은 허용됨. 그리고 (ii) 외국인토지법상 외국기업으로 간주되는 기업과 외국기업의 지점의 토지취득은 외국인 토지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조건으로 하여 다음에 적합한 영업목적으로 허용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사업 활동과정중 서비스 공급에 사용되는 토지 - 해당 법상 기업 고위임원의 주거를 위한 토지 - 해당 법상 규정된 토지보유 요건을 갖추기 위한 토지 <p>세제 혜택을 포함한 보조금 수혜자격은 관련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설립된 기업에 제한될 수 있음.</p> <p>연구 개발 보조금은 약속 안함.</p>	<p>3) 증권거래법상 외국인으로 취급되는 거주자는 대한민국 주식에 포트폴리오 투자시 내국민 대우를 부여받음.</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4) 다음과 같이 정의된 자연인의 입국 및 단기 체류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외에는 약속 안함.</p> <p>A. 기업내 전근자 (ICT)</p> <p>대한민국에 설립된 자회사·지사 또는 제휴기업을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의 피고용인인 자연인이며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 그 기업에 고용된 자로서 다음의 하나인 자:</p> <p>(i) 임원 - 조직 내에서 조직 관리를 1차적으로 지휘하며, 의사 결정에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 기업의 상급 임원, 이사회, 주주로부터 단지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시를 받는 자 임원은 그 조직의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과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하지 아니함.</p> <p>(ii) 고위 관리자 - 조직 내에서 그 조직 또는 조직의 부서를 1차적으로 지휘하고; 다른 감독직·전문직·관리직 종사자의 업무를 감독 또는 통제하거나; 직원에 대한 고용, 해고 또는 이에 대한 추천 및 그 밖의 인사상의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가지며; 일상 업무에 재량권을 행사하는 자 고위 관리자는 전문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한 일선 감독자를 포함하지 않으며 1차적으로 서비스 공급 행위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하지 아니함.</p>	<p>4) 기업내 전근자 (ICT), 기업인 방문자 (BV), 서비스 판매자(SS)에 관한 조치를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p>계약 서비스 공급자 (CSS)는 약속 안함.</p> <p>토지취득은 임차권 허용 외에는 약속 안함.</p> <p>세제 혜택을 포함한 보조금 수혜자격은 관련 법상 거주자에 제한될 수 있음.</p>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iii) 전문가- 조직 내에서 고도의 지속적인 전문성을 지닌 지식을 보유하고 당해 기업의 서비스, 연구 설비, 관리 등에 독점적인 지식을 가진 자</p> <p>A항에 정의된 자연인의 입국 및 체류는 최장 3년으로 제한되며, 신청인에 의하여 상기 조건이 여전히 충족된다면, 체류기간의 갱신이 가능함.</p> <p>B. 기업인 방문자(BV)</p> <p>A항 (i) 또는 (ii)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자연인으로서 대한민국 내에서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업적 주재 설립의 책임이 있는 자이며, 대한민국 내에 서비스공급자의 사무소, 지점, 자회사 등이 없어야 하며 직접적인 판매 또는 서비스 공급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됨.</p> <p>C. 서비스 판매자(SS)</p> <p>대한민국 영역 내에 소재하지 아니하며,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 자연인으로서 서비스 공급자를 위하여 서비스 판매를 교섭할 목적으로 그 서비스 공급자를 대표하는 활동에 종사하는 자이며, 일반 대중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업무에 관여 할 수 없음.</p> <p>B항과 C항에 정의된 자연인의 입국 및 체류는 최장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p>		

투명성 목적을 위한 주석

1. 자회사는 그 회사의 모회사가 총 지분의 50% 이상 보유한 기업, 주식회사 또는 그 밖의 법적 실체로 정의함.
2. 지사는 동일한 조직의 운영부서 또는 대표사무소로서 정의되고, 그 운영부서 또는 대표사무소는 다른 WTO 회원국 영역 내에 소재한 모회사를 대표할 포괄적 권한을 가진 피고용인을 보유함.
3. 제휴회사는 동일한 모기업에 의하여 소유 또는 통제되는 두개의 자회사 중의 하나, 유한회사, 회사 또는 다른 법인의 사원으로 양 회사 각각의 총지분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총 투자의 50%의 이상의 책임을 지는 주주 단체에 의해 소유 또는 통제되는 두개의 법인 중 하나로 정의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D. 계약 서비스 공급자 (CSS) - 법인의 피고용인</p> <p>대한민국에 상업적 주재를 하지 않는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계약에 의한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임.</p> <p>다음의 조건과 세부 분야에 기재된 추가 조건의 제약을 받음.¹⁾</p> <p>법인은 공급되는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대한민국 법인과 1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서비스 공급 계약을 취득하여 함. 그 계약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부합하여야 함.</p> <p>입국하고자 하는 자연인은 그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입국허가 신청 직전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서비스를 공급하여야 함.</p> <p>자연인은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요구 조건 및 모든 당사국이 가입한 관련 국제기구의 인정에 따라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학문적, 전문적 자격과 전문적 능력을 기초로 한 경험을 보유하여야 함.</p> <p>자연인은 대한민국에 소재한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받아서는 아니됨.</p>		

1) D 유형의 수평적 또는 구체적 약속은 「자연인의 이동에 관한 GATS 부속서」에 따라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에 접근하려는 자연인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및 영구적 고용에 관한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약속은 구체적 업종에 달리 명기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직 제한²⁾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p> <p>계약은 대한민국의 직명을 사용할 권한을 부여함이 없이 다음의 서비스 공급 행위 또는 업종에서 체결될 것이 요구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WTO 회원국에 소재한 자연인을 고용하고 있는 법인으로부터 설비 또는 기계를 구입하는 대한민국의 법인을 위한 건설 및 발전설비 외의 산업 설비 또는 기계의 설치, 유지, 관리 또는 수리와 관련된 서비스 - 정보기술, 전자상거래, 생물공학, 나노기술, 디지털 전자 및 환경산업에 적용되는 자연과학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된 자문 서비스 - 대한민국의 회계법인 또는 사무소에 회원 계약을 통한 외국의 회계 기준 및 감사, 공인회계사의 훈련, 감사기술의 이전 및 회계, 감사 및 부기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의 교환을 위한 자문 서비스 - 공동 계약의 형태로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 등록된 건축사와 협업을 조건으로 하는 건축 서비스 - 경영컨설팅 서비스 		

2) 수직 제한이라 함은 부여된 서비스 공급자의 수가 계약상의 작업규모 그리고 신청방식 및 결정된 수준에 제한됨을 말한다. 분야별 신청방식과 수직제한 수준은 방식 결정에 관한 적절한 채널을 통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통보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다음 서비스 분야의 전문 엔지니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와 관련된 자문 서비스 -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기반 이행 서비스 - 자료 관리 서비스 - 자료 시스템 서비스 - 자동차에 대한 특수 엔지니어링 설계 서비스 - 환경 엔지니어링을 제외한 엔지니어링(CPC 8672, 8673) <p>D 유형에 정의된 자연인의 입국 및 체류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계약기간 동안 한정됨.</p>		
투명성 목적을 위한 주석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국과 단기체류가 허가된 자연인은 출입국관리법과 노동법을 준수하여야 함. 2. 자연인의 일시적 이동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약속은 노사분규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 분야별 구체적 약속			
<u>1. 사업 서비스</u> <p>A. 전문직 서비스</p> <p>a. 법률서비스; (CPC 861**)</p> <p>서비스 공급자가 변호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관할국의 법 및 국제공법에 대한 자문서비스로서 다음을 제외</p> <p>(i) 법원 및 여타 정부기관에서의 법령 절차를 위한 변호 및 동 절차를 위한 법률 문서의 준비</p> <p>(ii) 공증 행위의 준비 위탁을 위한 법적 변호</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대표 사무소 형태로만 가능 대한민국의 변호사 자격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가진 변호사와의 제휴 또는 고용은 허용되지 않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법자문사는 최소 연간 180일 이상 국내거주가 요구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i) 국제 상사중재에서의 대리는 허락됨. 다만, 중재에 적용 가능한 절차 및 실체법은 외국법 자문사가 대한민국에서 개업할 자격을 갖춘 법임.</p> <p>(ii) 회사이름의 사용은 허락됨. 다만, 한글로 “외국법 자문사 사무소”라는 언급과 함께 사용되어야 함.</p>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i) 대한민국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 지적재산권, 광업권 또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의 취득, 상실 또는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건에 관한 행위 (iv) 가족관계, 상속에 관한 법률 사건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일방당사자이거나, 관련된 재산이 대한민국에 소재하고 있을 경우			
투명성 목적을 위한 주석			<o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민국에서 외국법 자문사로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동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관할국에서 최소 3년 이상 활동을 하였어야 하며, 동 관할국에서의 법률직으로서 상당한 지위에 있어야 함. 대한민국에 대표사무소 설립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함. 동 대표사무소는 법무부 장관이 승인한 외국법 자문사 1인 이상으로 구성됨. 동 대표사무소는 신용과 전문성을 보유하여야 하며,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어야 함. 대표사무소는 이윤추구행위를 할 수 있음. 다만, 대한민국에의 주재에 대한 적절한 사업계획과 재정기반을 보유하여야 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회계, 감사, 회계장부 정리 서비스 (CPC862)	<p>1) 감사서비스는 약속 안함.</p> <p>2) 감사서비스는 약속 안함.</p> <p>3)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공인회계사에 의한 개인사무소, 감사반, 회계법인(유한책임회사)만 설립 가능 감사서비스는 감사반, 회계법인(유한책임회사)에 가입한 공인회계사만이 공급 가능</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인회계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시험합격후 대한민국에서의 2년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함.</p>	<p>1)2)3) 대한민국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는 연회비를 납부하고, 전세계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국제회계조직에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 국제회계조직의 회원사인 대한민국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에 대하여는 회원계약을 통하여 다음의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음.</p> <p>-외국회계제도 및 회계감사 자문, 회계사연수, 감사기법전수, 정보교환</p> <p>4) 본국의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국제회계법인에 고용된 자연인이 상기 서비스 공급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동하는 것은 허용됨. 동 인력의 입국 및 체류는 최장 1년까지 허용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이 가능함.</p>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세무서비스 (CPC 8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세무조정서비스, 세무대리서비스는 약속 안함. 2) 세무조정서비스, 세무대리서비스는 약속 안함. 3) 세무사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세무사에 의한 개인 사무소, 세무조정반, 세무법인(유한책임회사)만 설립 가능. 세무조정서비스는 세무조정반, 세무법인(유한책임회사)에 소속된 세무사만이 공급 가능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세무사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시험 합격후 대한민국에서 6개월의 실무 수습을 받아야 함. 	
d) 건축설계서비스 (CPC 86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제한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p>1)2)4) 대한민국 법에 의하여 자격을 취득한 건축사와 공동계약에 의한 외국건축사의 건축설계서비스 공급은 허용됨.</p> <p>본국의 법에 따라 외국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는 정규 6개 건축사 시험과목 중 2개 과목인 건축법규와 건축설계에 만을 대상으로 하는 간단한 시험만 합격하면 대한민국 건축사 자격의 취득이 가능함.</p>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통합엔지니어링서비스 (CPC 867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시내계획 및 경관 건축 서비스 (CPC 867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수의료서비스 (CPC93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			
a) 컴퓨터 설비자문 서비스 (CPC 84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소프트웨어 시행 서비스 (CPC 84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CPC 84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CPC 84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타 (CPC 845, 84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C. 연구개발서비스</u>			
a) 자연과학 연구개발서비스 (CPC 85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인문·사회과학 연구 개발 서비스 (CPC 85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학제간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D. 부동산 서비스</u> 중개서비스 (CPC 82203**, 82204**, 82205**, 82206**)	1) 약속 안함.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해외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운전인력을 동반하지 않은 임대 서비스			
a) 선박임대서비스 (CPC 8310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항공기임대서비스 (CPC 83104)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인 지분참여 50%이하의 합작투자에 한하여 허용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합작투자회사의 대표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그 밖의 운수장비서 비스 (CPC 83101, 83105**) ³⁾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83105**: CPC 83105 중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에 한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임대서비스 (CPC 83106-831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타 개인·가정 물품 관련 임대 서비스 (CPC 83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F. 기타 사업서비스</u>			
a) 광고서비스 (CPC 8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시장조사 및 여론 조사서비스 (CPC 86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경영컨설팅서비스 (CPC 86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프로젝트 경영 및 여타 경영 서비스 (CPC 86601, 866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성분·순도검사 및 분석서비스 (CPC 86761**) ⁴⁾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업적주재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 심사에 의함 주요 심사 기준: 기존의 국내 공급자의 수 및 이들에 대해 미치는 영향, 공중 보건, 안전 및 환경의 보호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술적진단서비스 (CPC 8676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집적된 기술 및 전기 시스템에 대한 시 험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3**, 86769**) ⁵⁾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86761 : CPC 86761중 대기, 수질, 소음 수준 및 진동 수준에 대한 검사, 시험 및 분석만을 포함

5) 86763, 86769 : CPC 86763, 86769중 전기용품에 대한 시험 및 분석서비스만을 포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농업 및 축산업 관련 자문서비스 (CPC 8811**, 88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항공에 의한 산불 진화 및 병해충 방 제서비스를 제외한 임업 부수 서비스 (CPC 881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어업관련 자문서비스 (CPC 882**)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h) 광업 부수서비스 (CPC 88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제조업부수서비스 신제품 제조 기술관련 자문서비스만 포함 (CPC 884** 및 885**, 단 88411·88450· 88442·88493은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k) 인력 알선서비스 (CPC 87201**, 87202**)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에 대한 인력 알선 은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서비스 제공자는 상법상의 회사 형태로서만 서비스 제공 가능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투명성 목적을 위한 주석

1. 기업은 노동부장관에 의해 결정되고 공표된 규정 및 서비스 수수료를 준수함.
2. 기업은 설립시 5천만원 또는 그 이상의 납입자본금을 보유한다. 서비스 공급자가 추가로 지사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지사당 2천만원씩 총 납입자본금이 증가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m) 과학, 기술관련 자문 서비스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및 그 밖의 과학적 예측 서비스 (CPC 86751) 지표 및 조사 서비스(CPC 8675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지표 조사서비스 (CPC 8675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지적 측량 서비스는 제외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지도 제작 서비스 (CPC 86754**)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지적도 관련 서비스는 제외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n) 장비의 유지 및 수선 서비스 (CPC 633, 8861, 8862, 8863, 8864, 8865, 886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o) 빌딩청소 서비스 (CPC 874**, 단, 87409 제외)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p) 사진서비스 (CPC 875)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q) 포장서비스 (CPC 87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r) 인쇄 (CPC 88442**) ⁶⁾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6) 88442 : 스크린인쇄, 그라비어인쇄 및 CPC 88442중 스크린 인쇄업, 인쇄관련 서비스업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r) 출판 서비스 (CPC 8844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s) 국제회의 용역서비스 (CPC 879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s) 속기서비스 (CPC 879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t) 번역 및 통역서비스 (CPC 8790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t) 전문디자인 서비스 (CPC 87907)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u> <u>B. 쿠리어 서비스</u> 국제 쿠리어 서비스 (CPC 75121**) 법으로 대한민국 우정국에 유보된 서비스는 제외 ⁷⁾ 동 약속은 자기의 책임 하 에 고용하여 운송사업을 운 영하는 권리를 포함하는 것 으로 해석되지 않음. 동 약속은 어떠한 경우에 도 항공운항면장 및 항공 기를 보유한 배달사업자에 게의 항공 운수권 부여를 포함하지 않음.	1) 항공 및 해로운송으로 제한됨. 2) 제한 없음. 3) 국제배달서비스 지원 육상기반 업무로 제한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항공 및 해로운송으로 제한됨. 2) 제한 없음. 3) 국제배달서비스 지원 육상기반 업무로 제한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7) 우편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우정국은 신서를 수집, 처리 및 배달하는 독점권을 보유함. 그러나 이 법은 민간사업자가 상업서류 서비스 (a) 화물에 첨부한 봉하지 아니한 서류 또는 송장, (b) 무역관련 서류, (c) 외자 또는 기술관련 서류, 또는 (d) 외국환 또는 그 관련서류를 취급하는 것을 허용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통신서비스 a) 음성전화서비스 b) 패킷 교환 데이터 전송서비스 c) 회로 교환 데이터 전송 서비스 d) 텔레스 서비스 e) 전신 서비스 f) 팩시밀리 서비스 g) 사설전용회선 서비스 o) 기타	1) 모든 서비스 공급은 허가받은 대한민국 서비스 공급자와의 상업적 약정에 따른. 2) 제한 없음. 3) 무선국 면허를 포함한 설비기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면허의 소유권은, 직접: 다음 열거된 자에게 부여되거나. 유지될 수 없음. (a) 외국 정부 (b) 외국 자연인 (c) 외국 법인 (d) 외국 정부, 외국자연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유지분이 의결권 있는 지분의 49%를 초과하는 국내법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디지털 이동통신 서비스 호출 서비스	간접: 외국인의 소유 지분은 의결권의 80% 또는 그 이상이 되어서는 안됨. (대주주가 외국정부, 외국 자연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15%)		
PCS(개인통신서비스)	다음의 자는 주식회사케이티의 대주주가 될 수 없음. (a) 외국 정부 (b) 외국 자연인 (c) 외국 법인 또는 (d) 외국정부, 외국자연인 또는 외국 법인의 소유지분이 의결권 있는 지분의 80%(단, 대주주가 외국정부, 외국 자연인 또는 외국 법인인 경우에는 15%) 이상인 대한민국 법인		
TRS(중개라디오시스템 서비스)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무선 데이터 서비스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부가통신서비스⁸⁾</p> <p>h. 전자메일</p> <p>i. 음성메일</p> <p>j. 온라인 정보검색 및 데이터베이스 재생</p> <p>k. 전자적 데이터 교환</p> <p>l. 고도 팩시밀리 (저장·전송·저장 및 재생 포함)</p> <p>m.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p> <p>n. 온라인 정보 및/또는 자료 처리 (거래 처리 포함)</p> <p>o. 기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원격 컴퓨팅 서비스⁹⁾</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부가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는 테이터 전송 서비스 제공을 허용¹⁰⁾</p>

8) 부가통신서비스라 함은 기간통신업자로부터 임차한 통신망설비를 통하여 제공되며, 이용자의 정보를 저장하여 전송하거나 처리하여 전송하는 통신서비스를 말함.

9)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및 원격 컴퓨팅 서비스는 제3자 통신을 매개하는 통신서비스가 포함되지 아니함.

10) 이용자의 데이터를 형태 또는 내용의 변경 없이 전송 및/또는 교환하는 통신서비스(음성전화, 텔레스, 팩스서비스 및 회선의 단순재판매는 제외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D. 시청각 서비스</u> a) 영화와 비디오 제작 및 배급 서비스 (CPC 96112**, 96113**) 유선방송 프로그램 공급업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e) 음반 제작 및 배급 서비스 (녹음)</u>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3. 건설 서비스</u> (CPC 511-518)	1) CPC 511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일반 건설업자로 등록된 업자에 대하여 강제의무 하도급 제도가 적용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CPC 511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4. 유통서비스</u> ¹¹⁾ A. 위탁중개인 서비스 (CPC 621, 단 62111, 62112 및 선물계약의 위탁 중개인 서비스는 제외) B. 도매서비스 (CPC 622**, 다만, 62211중 곡물, 62223, 62229 중 곡분 및 홍삼 도매업과 62276중 비료도매업은 제외)	1) 의약품 및 의료기기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1) 총포·도검·화약류 유통업, 골동품 및 예술품 유통업, 지역당국이 공공도매시장으로 공식 지정한 농수축산물 공공도매시장의 개설, 운영 및 그 안에서의 유통서비스는 제외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C. 소매서비스</u> [CPC 6111, 61130, 61210, 613** (LPG와 관련된 소매업 및 주유 소업 제외), 631** (63108 제외), 632]	1) 의약품,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및 Mode 3상 제한 대 상인 품목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중고자동차 매매업 및 가스연료 소매업은 경제적 수요심사에 의함. 주요 기준: 기존 공급업체의 수와 이들에 미치는 영향, 인구밀도, 교통, 환경 오염, 지역적 조건 및 그 밖의 지역적 특징과 공공의 이익.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D. 프랜차이징</u> (CPC 8929**) ¹²⁾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투명성 목적을 위한 주석

다음의 설명은 소매서비스에 관련됨.

일반 대중에 대한 직접적인 의약품 공급(약국)은 공공 보건 보호의 목적에서 허가받은 약사에 대해서만 허용됨.

12) 프랜차이징 서비스는 이 양허표에 도매 및 소매서비스 분야에서 허용된 품목에 한정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5. <u>교육서비스</u>¹³⁾</p> <p>C. 고등 교육서비스¹⁴⁾ (CPC 923**)</p> <p>학위 수여를 목적으로 국가 또는 공인평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립 고등 교육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고등 교육서비스.</p> <p>보건·의료관련 및 유·초·중등교원 양성 교육서비스는 제외</p>	<p>1) 약속 안함.</p> <p>2) 국내외의 다른 고등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총 학점의 1/2 범위 내에서 국내 학교의 학점으로 인정 가능</p> <p>3)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학교법인¹⁵⁾ 만이 장관의 인가를 얻어 교육기관 설립이 가능(다만 사내대학은 학교법인 설립 불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첨부 I에 명기된 교육기관의 형태만 가능 - 수도권지역에 기술대학, 사내대학을 제외하고 학교 신설은 불가 - 전문대학, 대학, 산업대학은 대학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분야에 있어 외국 공인 평가인정기구의 평가인정을 받은 외국 대학 또는 당해 국가 정부의 공인이나 추천을 받은 외국대학에 한하여 교육과정의 공동운영이 가능 - 국내외의 다른 고등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 범위 내에서 국내 학교의 학점으로 인정 가능 -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각 교육기관의 학생 정원을 제한 가능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13) 시장접근과 내국민 대우에 관한 양허사항은 대한민국에서 전문직 자격의 취득 및 개업을 위한 학위 인정에는 적용되지 않음.

14) 고등교육서비스에 관한 첨부 I 을 참조

15) 학교법인은 교육관계 법에 따라 정규교육 기관을 설립할 목적으로만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임.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D. 성인교육서비스(CPC 924**)¹⁶⁾</p> <p>사립 성인교육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성인교육서비스</p> <p>국내외 학위수여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서비스,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따른 정부지원 직업 훈련서비스, 방송을 통한 교육서비스 제공은 제외</p> <p>또한, 정부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 제외</p>	<p>1)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는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 첨부 II에 명기된 교육기관의 형태만 가능 - 학원 수강료는 교육감이 조정 가능 - 수도권지역에 교육기관의 설립 및/또는 확장은 제한 가능</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보건·의료 관련 서비스는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16) 성인교육서비스에 관한 첨부 II를 참조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6. 환경서비스</u> <u>A. 폐수 서비스</u> 폐수처리서비스 (CPC 9401**) ¹⁷⁾ <u>B. 폐기물 처리 서비스</u> (CPC 9402**) ¹⁸⁾ <u>D. 기타</u> 배기ガ스 정화 및 소음 저감 서비스 (CPC 9404, 9405) 환경영향평가 서비스 (CPC 9406**, 9409**) ¹⁹⁾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7) 9401**: CPC 9401중 산업폐수의 수집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

18) 9402**: CPC 9402중 산업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 서비스만 해당

19) 9406**, 9409**: CPC 9406 및 9409중 환경영향평가 서비스만 해당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7. 금융서비스</u>			
<p>다음 조치들은 금융서비스 모든 분야에 적용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GATS 금융서비스 협정 부속서 2(a) 항에 의거한 건전성 이유에 의하여 대한민국은 모회사 요건, 최소자본금 요건, 최소영업기금 요건, 영업인의 자격, 영업 활동을 위한 면허 및 승인 등을 포함한 비차별적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금융기관은 은행, 증권과 같은 관련 법에서 규정된 오직 한 종류의 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어야 하며 따라서 그 밖의 관련 법에 의하여 규제되는 다른 업종을 겸업할 수 없음. 3. 국경간 공급, 소비자 이동을 통한 금융서비스 공급시 원화결제는 금지됨. 상업적 주재 설립 후 금융기관은 거주자와의 원화표시, 결제서비스만 취급 가능. 비거주자와 외화로 표시 또는 결제되는 거래시 허가 필요. 4. 지점소유 자산은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 보유되어야 함. 금융기관의 본점 자본금은 지점의 자본금 조달 및 대출활동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인정되지 않음. 5. 요구불예금 금리가 규제됨. 6. 금융기관의 자산관리 및 운용이 제한됨. 7. 금융기관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이 금지됨. 8. 파생상품을 포함한 일부 신상품 도입은 허가를 받아야 함. 9. 대한민국은 1997.8.31 일자로 이 양허표에 기재된 금융서비스 중 공급형태 1)2)3)에 관한 구체적 약속이 있는 경우에 시장접근 및 내국민대우에 관한 약속에 대하여 현상유지를 적용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A.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u> (i) 직접보험 a) 생명보험 상해보험과 건강보험 포함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외국의 생명보험회사에게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p> <p>국내 생명보험회사와의 합작 법인은 설립 금지됨.</p> <p>모집인을 포함하여 보험 전문인력 채용 및 고용상의 제한이 있음.</p> <p>상업적 주재의 최고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하위분야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손해보험	<p>1) 해상수출입 적하보험 및 항공보험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외국 손해보험회사에게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p> <p>국내 손해보험회사와의 합작 법인은 설립 금지됨.</p> <p>모집인을 포함하여 보험 전문인력 채용 및 고용상의 제한이 있음.</p> <p>상업적 주재의 최고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 재보험 및 재재보험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외국 재보험 및 재재보험 회사에게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모집인을 포함하여 보험 전문인력 채용 및 고용상의 제한이 있음. 국내 재보험회사나 재재보험회사와의 합작은 금지됨. 상업적 주재의 최고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i) 보험중개 및 대리서비스			
a) 보험 중개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보험중개회사에 대하여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상업적 주재의 최고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보험 대리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상업적 주재의 최고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v) 보험관련 보조서비스 다음 서비스에 대하여만 양허함 a) 손해사정 ²⁰⁾ b) 보험계리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의 손해사정 또는 보험계리회사에 대하여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상업적 주재의 최고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0)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에 관한 업무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B. 은행 및 기타 금융 서비스</u> 다음의 서비스에 대하여만 양허함 (i) 예금 ²¹⁾ (ii) 대출 ²²⁾ (iii) 금융 리스 (iv) 지급 및 송금 (v) 보증 및 약정 (vi) 외환업무 ²³⁾ (vii) 결제서비스 ²⁴⁾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국내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금융서비스를 본국에서도 영위하고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상업적 주재만 허용됨. (다만, 금융 리스는 제외) 동일인은 관련 당국의 승인 없이 시중 은행 지분의 10%(비금융서비스 기관의 경우 4%), 지방은행 지분의 15%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100%까지 관련 당국의 승인 하에 취득 가능 ²⁵⁾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부소유임. 외국환 포지션은 규제됨. 현물환매각 초과 포지션이 500만불 또는 자본금의 3% 중 큰 금액으로 제한됨. 주택청약저축과 같이 특정 목적을 위한 예금은 지정된 금융기관에서만 취급 가능함. 증권저축과 신용공여의 경우 한도와 운용상의 제한이 있음.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21) 예금의 수취, 양도가능 유가증권 또는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일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22) 자금의 대출, 어음할인 등 일반에게 이자수취를 목적으로 자금을 융자하는 업무

23) 외환의 발행, 송금, 추심 업무

24) 금융결제원의 규약에 따라서 은행이 행하는 어음·수표에 대한 교환·결제 업무

25) "동일인" 및 "비금융서비스 기관"의 정의는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카드론 등의 수단을 통하여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자금융통은 제한됨.</p> <p>신용카드 수수료, 이자율 등 각종요율에 대한 최고한도가 있음</p> <p>양도성 예금증서 만기는 30일 이상이어야 함.</p> <p>외환거래시 실수요 원칙 및 실수요 증명 요건이 적용됨. 선불 거래의 경우 실수요 증명요건이 면제됨.</p> <p>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무가 있음.</p> <p>외환대출에 대한 한도 및 용도가 제한됨.</p> <p>금융리스, 신용공여, 증권저축회사의 최고 책임자는 국내에 거주하여야 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viii) 외환시장, 장외시장이나 다른 시장에서의 금융상품의 자기·고객위탁 매매서비스</p> <p>다음의 상품에 대하여만 적용</p> <p>a) 단기금융상품 (수표, 어음, CD 포함)</p> <p>b) 외환</p> <p>c) 금융파생상품 (선물·옵션 포함)</p> <p>d) 외환·금리 상품 (스왑, 선도금리 약정 포함)</p> <p>e) 양도성 증권</p> <p>f) 기타 양도 가능한 상품 및 금융자산 (금괴 포함)</p>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본국에서도 같은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외국 금융기관에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p> <p>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p> <p>상업적 주재의 최고 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약속 안함.</p> <p>3) 제한 없음</p>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x) 모든 형태의 증권발행에 참여 a) 증권발행 b) 증권인수 c) 증권배분 d) 기타 증권 관련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모든 종류의 증권을 발행하는 외국금융기관에게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 상업적 주재의 최고 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x) 자산 관리 다음에 기재된 서비스에 대하여만 적용 a) 현금 또는 포트폴리오 관리 b) 모든 형태의 간접투자 관리 c) 보관 d) 신탁 ²⁶⁾ (투자일임업 포함)	<p>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 자산관리회사에 대하여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p> <p>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 될 수 있음.</p> <p>신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본업인 은행업무 외의 사업을 겸영하고 신탁업 영위를 한다는 내용의 재정경제부 인가(두 종류)를 받아야 함.</p> <p>부동산신탁은 약속 안함.</p> <p>상업적 주재의 최고 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함.</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26)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탁을 받아 신탁자의 이익을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업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xi) 신용정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기존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50%미만의 지분참여를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xii) 자문, 중개, 및 기타 부수 금융 서비스 다음 서비스에 대하여만 적용됨.			
a) 투자자문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외국사업자에 대하여만 상업적 주재가 허용됨. 대표사무소는 사전 통지로 설립될 수 있음. 상업적 주재의 최고 책임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여야 함.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신용평가 및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무보증 회사채나 기업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회사의 신용평가는 관련당국이 인정한 신용평가회사만 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9. 관광 및 여행관련서비스</u> <u>A. 호텔 및 레스토랑</u> (CPC 641, 642, 6431**) 단, 6431중 철도·항공운송 관련 시설 서비스는 제 외 ²⁷⁾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7) 이 제외는 CPC 642상의 케이터링에 관한 약속에 영향을 주지 않음.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10. 레크리에이션·문화·스포츠서비스</u> <u>A. 엔터테인먼트 서비스</u> (CPC 96191, 96192) 뮤지컬, 극장, 라이브 밴드, 오페라 등 그룹 이나 개인 아티스트에 의하여 행해지는 엔터 테인먼트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11. 운송서비스</u> <u>A. 해운서비스²⁸⁾</u> 국제운송 (CPC 7211**, 7212**) 연안해운 제외	1) a) 정기선 해운: 제한 없음. b) 벌크선, 트램프 및 그 밖의 국제 해운: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대한민국의 국기하의 선박을 운영할 목적으로 등록된 회사의 주재 i) 국제여객해운: 약속 안함. ii) 국제화물해운: 상법에 규정된 주식회사만 허가됨. b) 기타 상업적 주재 형태: 제한 없음. 4) a) 선박승무원: 제한 없음. b) 항만 노무자: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제한 없음. b) 제한 없음. 4) a) 약속 안함. b)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만에서의 다음 서비스는 국제 해운업자에게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으로 공연하게 이용이 보장됨. 1. 수로 안내 2. 예선·도선 3. 식량·연료·급수 4. 쓰레기 취합 및 밸러스트 폐기물 처리 5. 선석배정 6. 항행원조 7. 통신, 급수, 전기공급 등 항만에 근거를 둔 서비스 8. 비상보수시설 9. 정박, 부두, 선박접안 서비스

투명성 목적을 위한 주석

이 양허표는 관련 국내법에 따라 연안해운으로 간주될 수 있는 활동 범위를 저해하지 않으며, '연안운송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음. 연안운송서비스는 대한민국의 영역내에 위치한 항만 또는 지점과 대한민국 영역내 위치한 다른 항만 또는 지점간 여객이나 화물의 운송 및 대한민국 영역 내에 위치한 동일 항만이나 동일 지점에서 출발하고 도착하는 교통으로서 동 교통이 대한민국의 수역안에 머무르는 경우를 말함.

28) 해운서비스에 관한 첨부 III을 참조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해운보조서비스</u>			
해상화물취급서비스 (CPC 741**)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만내 창고업 (CPC 74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통관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해운대리점 (CPC 748**) ²⁹⁾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법상의 회사로 설립되어야 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컨테이너 스테이션 서비스 (CPC 741**) ³⁰⁾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해상화물운송주선서비스 (CPC 748**) ³¹⁾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법상의 주식회사로만 설립되어야 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9) CPC 748중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 운송사업(외국 운수업 포함)을 영위하는 자를 위하여 거래대리를 하는 사업

30) CPC 741중 항만지역에서 제공되는 컨테이너 스테이션 서비스

31) CPC 748중 자기의 명의 (계약상 외국주선인 포함)로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해운 중개 (CPC 748**, 749**) ³²⁾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법상의 주식회사로만 설립되어야 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선박유지 및 수선 ³³⁾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상법상의 주식회사로만 설립되어야 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2) CPC 748**, 749** : CPC 748 및 749중 해상화물운송중개 또는 선박의 대여, 용대선, 매매를 위한 중개 서비스

33) 해상여객 운송사업, 해상화물 운송사업 또는 선박대여업을 위하여 제공되는 선박 수리 및 관리, 선원 관리 및 해상보험 등의 서비스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선원포함 선박임대 서비스 (CPC 721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예선 서비스 (CPC 7214)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검수·검정·검량 서비스 (CPC 749**) ³⁴⁾	서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4) 검수, 검정, 검량 서비스는 오직 해운 분야에만 적용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C. 항공 서비스</u>			
컴 퓨 터 예 약 시스 템 (CRS) 서비스 ³⁵⁾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공서비스판매 및 마케팅 서비스 ³⁶⁾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항공기 관리 및 수리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E. 철도운송서비스</u>			
a. 여객운송서비스 (CPC 7111)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현재 운영중인 노선은 약속 안함. 새로운 노선의 설립은 경제적 수요 심사에 의함. 심사 기준: 철도산업의 질서와 규율의 확립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b. 화물운송서비스 (CPC 7112)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5) 항공운송 서비스에 관한 GATS부속서의 정의에 따른다.

36) 항공법 제2조 제34항(일반항공운송대리점) 및 제32항(항공화물 운송대리점업)에 정의된 서비스를 말함.

“일반항공운송대리점”은 보수를 받으면 항공운송회사를 대신하여 항공기를 통한 여객 및 화물 국제운송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을 말함. (타인을 위하여 여권이나 비자 획득절차를 수행하는 업무 제외). “항공화물운송대리점”은 보수를 받으면 항공운송회사 또는 항공운송대리회사를 대신하여 항공기를 통한 화물 운송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을 말함.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도로운송서비스 연안운송을 제외한 컨테이너화물운송서비스 (CPC 7123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허가는 국제해운회사에 한해 발급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화물은 수출 또는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한정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파이프라인 운송서비스 (CPC 7131**) 오직 석유제품(LPG를 제외) 운송에 한정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H. 운송부수서비스 b. 항만구역 이외의 창고업 (CPC 742**) 농·축·수산물 창고업 제외.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기타운송서비스 복합운송서비스 철도화물 주선 ³⁷⁾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7) 철도화물 주선은 철로 운송의 끝 지점에서 수행되는 다음과 같은 보조 서비스를 말함. 컨테이너 화물의 수집, 한국철도공사와 철도화물 운송계약, 화물하역, 화물 배달 등을 포함함.

첨부 I (고등 교육 서비스)

다음 교육기관의 형태만을 포함함. (방송통신대학과 원격대학은 제외)

1. 전문대학(기술전문학교 제외) : 「고등교육법」에 따라 전문기술인 양성을 목적으로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하는 2-3년 과정의 고등교육기관
2. 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 및 연구를 실시하고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4-6년 과정의 고등교육기관
3. 산업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술 또는 전문적인 기술의 연구와 연마를 위한 교육을 계속하여 받고자 하는 자에게 고등교육의 기회제공을 목적으로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4년 과정의 고등교육기관
4. 기술대학 : 「고등교육법」에 따라 산업체 근로자가 현장에서 전문적인 지식·기술의 연마를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학사학위과정과 학사학위 과정을 사내에 설치한 고등교육기관
5. 사내대학 : 「평생교육법」에 따라 사업장의 경영자가 종업원을 대상으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및 학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고용주의 부담으로 설치·운영하는 고등교육기관

첨부 Ⅱ

(성인 교육 서비스)

다음 학원과 평생교육시설의 형태만 포함

1. 학원이라 함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인이 10인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 아래의 과정을 교습하는 시설을 의미함. 다만, 정규학교, 도서관 및 박물관, 사업장 등의 소속 직원 연수를 위한 시설,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 자동차운전학원은 제외
 - 가. 산업기반기술계열 : 기계, 자동차,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통신, 전자, 조선, 항공, 토목, 건축, 의복·섬유, 광업자원, 국토개발, 농림, 해양, 에너지, 환경, 공예, 교통, 안전관리
 - 나. 산업응용기술계열 : 디자인, 이·미용, 식음료품, 포장, 인쇄, 사진, 피아노조율
 - 다. 정보처리기술계열 :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 정보통신, 인터넷, 컴퓨터
 - 라. 간호보조기술계열 : 간호조무사
 - 마. 문화관광계열 : 출판, 영상·음반, 영화, 방송, 광고, 캐릭터, 관광
 - 바. 외국어계열 : 어학, 통역, 번역
 - 사. 인문사회계열 : 행정, 경영, 회계, 통계, 성인고시
 - 아. 경영관리계열 : 금융, 보험, 유통, 부동산
 - 자. 사무관리계열 : 부기, 속기, 속독, 속셈, 워드프로세스, 주산, 비서, 경리, 펜글씨
 - 차. 예능계열 : 국악, 전통무용, 서예, 음악, 미술, 무용, 웅변, 화술, 모델, 만화, 연극, 바둑, 꽃꽂이, 꽂기예
2.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로서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만을 포함

첨부 Ⅲ (해운 서비스)

1. 국제해운

“국제해운서비스 공급을 위한 다른 형태의 상업적 주재”라 함은 다른 당사국의 국제해운서비스 공급자가 그들의 고객에게 해운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국내에 지사를 설치하고 이와 관련된 활동을 말함.

2. 해상화물취급서비스

터미널 운영업자를 포함한 하역회사가 수행하는 활동으로서 항만노무자가 하역회사 또는 터미널 운영회사와는 별개로 조직된 경우에는 항만노무자들의 직접적 활동은 포함되지 않음. 이에 포함되는 활동에는 다음 사항의 조직 및 관리를 포함함.

- 선박으로부터의 화물의 양하와 선박으로 화물의 적하
- 화물의 끈 묶기/끈 풀기
- 선적전 또는 양하후 화물인수/인도 및 보호

3. 통관서비스

공급자의 활동이든 또는 주요활동의 일상적인 보조활동이든지 간에 수출입 또는 화물의 일관수송과 관련 다른 당사자의 통관절차를 대신하여 수행하는 활동을 말함.

4. 컨테이너 스테이션 서비스

컨테이너의 적집/적출 작업과 수리 및 선적에 이용할 목적으로 컨테이너를 항만 내에 보관하는 활동을 말함.

5. 해운대리점 서비스

대리인으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하나 이상의 해운선사 또는 해운회사의 영업이익을 대표하는 활동을 말함.

- 견적부터 송장작성까지 해상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마케팅 및 판매, 회사를 대신하여 선하증권 발행, 필요한 관련 서비스 취득 및 재판매, 서류 준비 및 사업정보의 제공
- 요청이 있을 경우, 선박기항을 편성하거나 화물을 접수하는 회사를 대신하여 업무 수행

6. 해상화물운송주선서비스

해상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취득, 선적서류 준비 및 사업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화주를 대신하여 선적업무를 조직 및 감시하는 활동을 말함.

7. 검수·검량·감정 서비스

- 검수서비스 :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개수의 계산 또는 인도·인수의 증명하는 활동
- 검량서비스 : 선적화물을 적하 또는 양하하는 경우에 그 화물의 용적 또는 중량의 계산 또는 증명을 하는 활동
- 감정서비스 : 선적화물 및 선박(부선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증명·조사 및 감정을 행하는 일

부속서 VII의 부록 2
아이슬란드 - 제3.16조에 규정된 구체적 약속의 양허표

공급형태 : 1)국경간 공급, 2)해외소비, 3)상업적 주재, 4)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수평적 양허			
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	<p>3) 모든 외국환송금은 통계상의 목적을 위해 아이슬란드 중앙은행에 보고되어야 함.</p> <p>서비스 공급자는 비거주자에 의한 아이슬란드 기업에의 투자는 상무부에, 비거주자에 의한 아이슬란드 증권에의 투자는 아이슬란드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함</p>	<p>3)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내에 등록 사무소, 중앙관리기관 또는 주요 영업 소재지를 두고 있는 제3국 기업의 자회사에 부여되는 대우는,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중 한 국가의 경제와 유효하고 지속적인 유대가 있음을 보인다면,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내에 제3국 기업에 의해 설립된 지점 또는 대리점에도 부여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조직에 의한 외국인 투자는 상무부의 특별한 허가가 필요함.</p> <p>비거주자는 임차기간이 3년을 초과하고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는데 사용되지 않으면, 법무부의 허가 없이 부동산 임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p>	<p>유한책임기업의 설립자의 과반수는 상무부에 의해 이러한 조건을 면제받지 않는 한, 아이슬란드의 거주자여야 함.</p> <p>모든 국내기업의 경영자와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는 상무부에 의해 이러한 요건 면제 받지 않는 한, 아이슬란드의 거주자여야 함. 다른 유럽 경제지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시민들은 거주요건으로부터 면제됨.</p> <p>아이슬란드 유한책임회사의 감사 중 적어도 1명은 아이슬란드의 거주자이거나 공인회계 회사에 합법적으로 전속된 자여야 함.</p> <p>비거주자는 단지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으며, 부동산과 관련된 통상의 소유권만을 획득할 수 있음. 따라서 수력, 지열 에너지 등 의 이용권 등 이례적인 권리가 연계되어 있는 경우, 비거주자는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음.</p>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모든 분야: 인력의 이동	<p>서비스공급자의 일시입국</p> <p>4) 아이슬란드가 노동시장심사에 따를 것을 요구하지 않고 허용해야 하는 기업내전근자와 같은 다음의 서비스공급자의 일시입국을 제외하고는 약속안함.</p> <p>임원: 계약에 포함된 조직의 관리를 1차적으로 지휘하고 조직의 목표를 세우며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의사결정권한을 갖는 자. 임원은 반드시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필요는 없음.</p>	<p>비거주자에 의한 부동산의 소유와 장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은 법무부에서 서면으로 승인하기 전까지 유효하지 않음.</p> <p>서비스공급자의 일시입국</p> <p>4) 시장접근 항목에 기재된 자연인의 범주에 관한 조치를 제외하고는 약속안함.</p>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고위관리자: 계약에 포함된 조직 및 그 부서를 지휘하고, 직원을 감독, 통제하고 또한 고용, 해고 또는 다른 인사상의 조치를 추천할 권한을 가짐으로써 그 조직의 서비스 공급기능을 책임지는 고위의 수준에 있는 자</p> <p>전문가: 고도의 전문성을 지닌 지식, 또는 조직의 서비스, 연구장비, 기술 또는 관리에 필수적이거나 독점적인 지식을 가진 조직 내의 자</p> <p>서비스 판매자: 계약에 포함된 서비스공급자의 대리인으로서 서비스판매를 위한 협상을 목적으로 또는 서비스공급자를 위하여 서비스판매계약을 체결하고자 일시 입국을 하고자 하는 자. 다만, 이러한 판매활동이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함.</p>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모든 분야: 보조금(보조금의 정의문제는 GATS 제15조에 따른 협상의 맥락에서 결정될 것임.)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3) 보조금을 받을 자격은 아이슬란드 영역 내에 설립되는 법인에 한정될 수 있음. 연구개발과 관련된 보조금은 약속 안함. 4) 오직 자연인에게만 이용 가능한 보조금은 아이슬란드 시민에게 제한될 수 있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 분야별 구체적 약속			
<u>1. 사업 서비스</u> <u>A. 전문직 서비스</u> 법률서비스(CPC 861의 일부에만 적용)	- 모국법에 대한 법률자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아이슬란드의 총변호사협회 회원은 아이슬란드 법정에서 고객을 대표할 배타적 권한을 보유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1), 3) 약속 안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아이슬란드 사법시험 또는 그에 상당하는 것	
- 국제법에 대한 법률자문 및 외국법 자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회계, 감사, 회계장부정리 서비스 (CPC 86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아이슬란드 공인회계사 시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격 요구	
(c) 세무서비스 (CPC 86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d) 건축서비스 (CPC 86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e) 엔지니어링서비스 (CPC 86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통합엔지니어링서비스(CPC 867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g) 도시계획, 조경건축 서비스 (CPC 867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i) 수의료 서비스(CPC 93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농촌지역의 수의사의 수는 제한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아이슬란드 언어구사능력이 요구됨. 4) 아이슬란드 언어구사능력이 요구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B. 컴퓨터 관련 서비스</u>			
(a) 컴퓨터 하드웨어 설비자문서비스 (CPC 84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b)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소프트웨어 시행 포함) (CPC 84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c)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CPC 84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개인정보가 아이슬란드 관할권 밖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경우 면허 필요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d) 데이터베이스 서비스(CPC 84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개인정보가 아이슬란드 관할권 밖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경우 면허 필요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기타 -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기기 및 장비의 보수 및 수리 서비스 (CPC 845) - 기타 컴퓨터 서비스 (CPC 84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개인정보가 아이슬란드 관할권 밖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경우 면허 필요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u>C. 연구개발서비스</u> (a) 자연과학연구개발서비스 (CPC 85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2) 연구장비 수입에 면허 필요. 아이슬란드 자연사협회의 허가 없이는 자연사 표본 국외 반출 금지 3),4) 제한 없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사회과학 및 인문과학 연구개발서비스(CPC 85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2) 고고학 발견물은 박물관회의 (Museum Council)의 허락 없이 국외로 수출할 수 없음. 3), 4) 모든 고고학 연구는, 아이슬란드인이 견 외국인 연구자에 의한 것이든 관계없이 고고학 보존회의 허가를 받아야 함.	
(C) 종합 연구개발 서비스(CPC 85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D. 부동산서비스			
(a) 자기소유 또는 임차권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CPC 82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예금 또는 고객에게 야기된 손실을 부담할 책임보험. 부동산 판매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든 면허는 개인에게 허가된 것임.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4) 주거용 빌딩, 토지판매 서비스 및 그 밖의 부동산의 구입 및 판매를 위한 관련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년간 거주 필요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수수료 또는 계약을 기초로 한 서비스 (CPC 822)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예금 또는 고객에게 야기된 손실을 부담할 책임보험. 부동산 판매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든 면허는 개인에게 허가된 것임.</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4) 주거용 빌딩, 토지판매 서비스 및 그밖의 부동산의 구입 및 판매를 위한 관련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년간 거주 필요</p>	
E. 운전인력을 동반하지 않은 임대 서비스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임대서비스는 유한책임회사(임대기업) 또는 등록된 상업은행 또는 저축은행에 의해 제공되어야 함</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임대회사 이사회의 과반수는 아이슬란드 거주자여야 함. 관리자는 아이슬란드 거주자 또는 북유럽 국가의 시민이어야 함</p> <p>4) 제한 없음.</p>	
(a) 선박관련(CPC 83103)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선박등록부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선박이 아이슬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소유되어야 함. 어획선에는 그 이상의 국적제한이 있음.</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제한 없음.</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항공기 관련 (CPC 8310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항공기등록부에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 항공기가 아이슬란드에 거주하고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의해 소유되어야 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c) 기타 운수장비 관련 (CPC 83101+ 83102+ 8310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자동차 임대서비스는 거주요건이 있음. 4) 자동차 임대서비스는 거주요건이 있음	
(d) 기타 기계 및 장비임대 관련 (CPC 83106-831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e) 기타 (CPC 83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기타 사업서비스			
(a) 광고 서비스(CPC 8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b)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서비스 관련(CPC 86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개인정보가 아이슬란드 관할권 밖에서 처리되어야 하는 경우 면허 필요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c) 경영컨설팅서비스(CPC 86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d) 컨설팅 관련 서비스 (CPC 86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기술적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f) 농업, 수렵, 임업 부수서비스 (CPC 88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i) 제조업 부수 서비스 (CPC 884+885, 단 88442는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k) 인력배치 및 공급서비스기타 (CPC 8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m) 과학 및 기술 관련 자문서비스 (CPC 867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n) 장비의 유지 및 수선서비스 (CPC 633+ 8861-8866; 선박,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운송 장비는 포함하지 않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o) 빌딩청소서비스(CPC 87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p) 사진서비스(CPC 87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q) 포장서비스(CPC 87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r) 인쇄 및 출판(CPC 8844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신문 또는 잡지의 아이슬란드 영역 내 출판은 거주 요건 있음. 편집자에 대한 거주요건 있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s) 국제회의서비스(CPC 879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u> <u>C. 통신서비스</u> (a) 음성전화서비스 (b) 패킷교환데이터전송서비스 (c) 회로교환데이터전송서비스 (d) 텔레ックス서비스 (e) 전신서비스 (f) 팩시밀리서비스 (g) 전용회선서비스 (o) 기타 - 모바일 및 개인통신 서비스와 시스템 부가서비스 ³⁸⁾ 전자메일, 음성메일, 온라인 정보 및 DB 검색, 전자적데이터 교환(EDI), 코드 및 프로토콜변환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 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 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1) 음성전화, 전신, 텔레克斯, 패킷 및 회선 교환 데이터 서비스, 모바일 라디오 전화, 페이징 및 위성 서비스 제외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3.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u>			
A. 일반 빌딩 건설 작업(CPC 5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B. 일반 민간엔지니어링 건설작업 (CPC 51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C. 설치 및 조립작업(CPC 514+ 51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D. 빌딩 완성 및 마무리 작업 (CPC 517)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4. 유통서비스</u> (단, 무기류, 주류, 담배, 의약품의 유통은 제외)			
A. 중개서비스 (CPC 62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B. 도매서비스 (CPC 62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C. 소매서비스 (CPC 631+632+6111+6113+612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D. 프랜차이징 (CPC 892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6. 환경서비스</u>			
A. 폐수서비스 (CPC 9401)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환경관리 자격증 요구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B. 폐기물처리서비스 (CPC 940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환경관리 자격증 요구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C. 위생 및 유사 서비스 (CPC 940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D. 기타 (CPC 9409)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환경관리 자격증 요구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 기술적 실행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7. 금융서비스</u>			
<p>(i) 아이슬란드는 “금융서비스 양해각서(Understanding)”에 따라 금융서비스에 대한 약속을 함.</p> <p>(ii) 모드 1과 모드 2에 대한 시장접근 양허는 양해각서의 B.3과 B.4 단락에 명시된 의무의 한도 내에서 이 양허표에 구속됨.</p>			
A.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p>1) 직접보험의 공급은 아이슬란드 보험 사업자 또는 다른 유럽경제지역 및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부터 보험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만 허용됨.</p> <p>보험중개인 서비스 공급은 상무부에 의해 허가 받은 보험 중개인 또는 다른 유럽경제지역 및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허가받은 보험브로커들에게만 허용됨.</p> <p>2) 제한 없음.</p>	<p>1)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3) 유럽경제지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서 설립되지 않은 보험사업자는 아이슬란드에서 직접 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 승인을 얻어야 함.</p> <p>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관계없이, 보험회사 지분을 소유하거나 소유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금융감독당국에 사전 통지해야 함. 감독당국은 그 소유(획득)가 그 회사의 건전한 운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되면 소유 또는 소유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음.</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3)보험회사 설립자중 과반수는 아이슬란드 거주자 또는 아이슬란드에 등록된 법인, 다른 유럽경제지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 거주하는 유럽경제지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의 시민, 또는 유럽경제지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 등록된 법인이어야 함</p> <p>보험회사의 관리자와 이사회 구성원은 아이슬란드에 거주해야 함. 다른 유럽경제지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시민은 거주요건이 면제됨. 상무부장관은 동 요건에 대한 면제를 부여할 수 있음</p> <p>유럽경제지역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회사의 지점사무소는 거주 대리인에 의해 관리되어져야 함.</p> <p>보험중개인은 아이슬란드에 거주하거나 유럽경제지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 거주하는 다른 유럽경제지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시민 또는 법인이어야 함. 상무부장관은 동 요건에 대한 면제를 부여할 수 있음</p> <p>4) 제한 없음.</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은행 및 기타금융서비스 (보험은 제외)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유럽경제지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에 설립되지 않은 신용기관과 증권서비스 관련 회사는 아이슬란드 금융감독당국(FME)의 허가를 조건으로 지점 또는 대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음.</p> <p>신용기관과 증권서비스 관련 회사는 유한책임 회사로만 설립되어질 수 있음</p> <p>상업은행과 저축은행은 공공으로부터 예금과 기타 상환가능한 자금을 받을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지님</p> <p>증권의 공개 발행은 증권회사 또는 그러한 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허가받은 다른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p> <p>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국내금융기관은 아이슬란드 중앙은행에 비거주자에 의하여 소유된 서비스 공급자의 계정잔액을 알려야 함</p> <p>2) 제한 없음.</p> <p>3) 신용기관의 설립자는 아이슬란드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함. 상무부장관은 동 요건에 대한 면제를 부여할 수 있음. 다른 유럽경제지역 및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시민과 법인은 동 거주요건으로부터 면제됨.</p> <p>신용기관과 증권서비스 및 유식(UCITS)과 관련한 회사의 관리자와 위원회 과반수는 아이슬란드에 거주해야 함. 다른 유럽경제지역 및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시민은 동 거주요건으로부터 면제됨. 상무부장관은 유럽경제지역 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시민에게 동일한 면제를 부여할 수 있음.</p> <p>서비스 공급자는 상무부에 아이슬란드에서의 기업활동에 있어서 비거주자에 의한 투자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아이슬란드 중앙은행에는 아이슬란드에서의 증권에 대한 비거주자의 투자정보를 제공해야 함.</p> <p>4) 제한 없음.</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9. 관광 및 여행관련 서비스</u> <u>A. 호텔 및 레스토랑 (케이터링 : 음식조달 서비스 포함)</u> (CPC 641-64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허가 조건으로 사전 일년간 거주가 요구됨. 4) 허가 조건으로 사전 일년간 거주가 요구됨.	
<u>B. 여행사 및 투어 오퍼레이터</u> (CPC 74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파산에 의해 고객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책임보험료 요구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4) 허가 조건으로 관리자의 사전 일년간 거주가 요구됨.	
<u>C. 관광 가이드 서비스</u> (CPC 74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동 직업에 대한 권리는 현지 거주 관광 가이드에게만 부여됨. 비 거주 관광가이드에게는 필요에 따라 임시 취업허가 부여될 수 있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10. 레크리에이션, 문화, 스포츠 서비스</u> (시청각서비스 제외)			
A. <u>엔터테인먼트서비스</u> (극장, 라이브 밴드, 서비스 서비스 포함) (CPC 961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특정의 지역적 또는 국가적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4) 제한 없음.	
B. <u>뉴스제공업</u> (CPC 962)	1),2),3) 관리직에 대한 접근은 권한 있는 당국의 임의승인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 외에는 제한 없음. 4) 신문 또는 잡지의 편집자에 대해 거주 요건이 부과됨.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C. <u>도서관, 박물관 및 기타 문화적 서</u> <u>비스</u> (CPC 96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특정의 지역적 또는 국가적 활동을 대상으로 한 재정적 지원 4) 제한 없음.	
D. <u>스포츠 및 기타 레크리에이션 서비</u> <u>스</u> (CPC 96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도박, 슬롯머신 및 이와 유사한 활동은 자격이 요구됨. 프로 복싱은 불법이나 아마추어 복싱은 허용됨.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특정의 지역적 또는 국가적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 4) 제한 없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11. 운송서비스</u>			
A. 해운 서비스	<p>국제해운(화물 및 승객)(CPC 7211 및 7212 국내운송 1) 포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a) 아이슬란드 국기 선박의 운항을 위해서는 등록된 회사의 설립이 요구됨.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기타 형태의 상업적 주재 2): 제한 없음 4)(a) 선박의 승무원: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위의 모드 3(b)에 정의된 상업적 주재와 관련하여 고용된 핵심인력: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약속 안함. (b) 제한 없음. 4) (a) 약속 안함. (b) 약속 안함.</p>	
해운보조서비스	<p>해상화물처리 서비스 3)</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저장 및 창고보관 서비스(CPC 742); 통관서비스 4); 컨테이너 저장 서비스 5)</p>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p> <p>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p>	

* 동 공급모드에 대한 약속은 실행가능하지 않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해운대리점 서비스 6); 화물 주선 서비스 7)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기타 보조 및 부수운송서비스 8)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해상운송업자들의 요구에 따른 보조서비스			<p>다음의 서비스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에 의하여 국제해상운송 공급자에게 제공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선 2. 예인 보조 3. 선용품 공급, 급유, 급수 4. 폐기물 수거, 밸라스트 폐기물 처리 5. 선석배정 서비스 6. 항행보조 7. 통신, 급수, 전기 공급을 비롯한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연안 기반의 조작서비스 8. 긴급수리시설 9. 정박, 계류, 접안서비스 10. 컨테이너 처리, 저장 및 창고 보관, 화물운송 <p>이 양허표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도로, 철도, 연안 운송 및 관련 보조서비스에 대하여, 복합운송업 자가 해상운송된 국제화물을 연계 운송할 목적 으로 트럭, 철도운송 및 관련 설비를 임대할 권 한을 가지거나 또는 복합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들 형태의 운송 서비스에 접근 및 이용할 수 있음.</p>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항공운송서비스			
항공기 및 부품 유지 및 수선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판매 및 마케팅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컴퓨터 예약시스템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 기술적 실행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도로운송 서비스			
(a) 여객 운송 (CPC 7121 + 712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상업적 도로 운송서비스를 위한 승인 필요. 특정 지역 및 노선에 대해 독점 면허 및 수적 할당이 적용될 수 있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약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b) 화물 운송 (CPC 712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c) 승무원이 포함된 승합차 임대 (CPC 712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d) 육상운송 장비의 유지와 보수 (CPC 6112+8867)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도로운송 서비스를 위한 지원 서비스 (CPC 74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u>H. 운송 보조 서비스</u>			
(b) 저장 및 창고보관 서비스 (CPC 74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c) 화물 운송 대리 서비스 (CPC 748)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d) 기타 (CPC 74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 기술적 실행 가능성의 부족으로 약속 안함.

첨 부

해상운송에 대한 주석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이라 함은 복합운송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후에 항만에 도착한 다른 상품보다 우선적으로 운송하는 것을 포함하여, 복합운송업자가 적시에 상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는 능력을 말한다. ”복합운송업자“라 함은 선하증권이나 복합운송서류, 상품에 대한 복합운송 계약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의 발행 당사자로서 본 운송계약에 따른 상품의 운송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내 운송"이란 석유 탐사 및 생산이 이루어지는 대륙붕 위치를 포함하여, 노르웨이의 항만 간 물품 및 여객에 대한 해상운송을 말한다.
2. "국제 해상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타 형태의 상업적 주체"라 함은 다른 회원국의 국제 해상운송 서비스 공급자가 해상 운송이 실질적인 요소를 구성하는 내에서,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통합된 운송 서비스의 고객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활동을 국내적으로 행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허는 국경간 공급 모드 하에서 취한 양허를 어떤 방식으로든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활동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 가. 견적에서 송장에 이르기까지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해상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마케팅과 판매. 이들 서비스는 서비스 공급업자 단독이나, 상설 사업활동 체계를 설립한 서비스 판매자와 함께, 운영 또는 제공된다.
- 나. 자신을 위해서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또한 고객에게 재판매) 운송 및 관련 서비스를 취득. 이러한 서비스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여하한 형태, 특히 내륙 수로, 도로 및 철도를 이용하여 외국에서 돌아오는 운송서비스를 포함한다.
- 다. 운송 서류나 통관 서류, 또는 운송상품의 원산지 및 특성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에 대한 문서상의 준비
- 라. 컴퓨터정보시스템과 전자적 정보 상호교환을 포함하는 여하한 수단을 이용한 비즈니스 정보의 제공. (통신 분야의 부속서의 규정을 조건으로 함)

- 마. 여하한 사업활동 체계의 조성 (기업주식에의 참여를 포함)과 국내에 설립된 해운 대리점을 위하여 국내에서 채용한 (또는, 외국인력의 경우, 인력 이동에 대한 수평적 양허를 조건으로 함) 인력에 대한 임명
- 바. 업체를 대신하여 선박의 입항을 주선하거나 요구될 때 화물을 인수

3. "해상 화물 처리 서비스"라 함은 터미널 운영업자를 포함한 하역업체에 의해 행해지는 활동을 말하나, 부두 노동력이 하역업체나 터미널 운영업체와 독립적으로 조직된 경우, 부두 노동자가 행하는 직접적인 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적용되는 활동은 다음의 조직 및 감독활동을 포함한다.

- 선박에 대한 화물의 양적하
- 화물의 묶기/풀기
- 선적 전이나 양하 후 화물 접수/인도 및 보관

4. "통관 서비스" (또는 "세관 브로커 서비스")라 함은, 이 서비스가 서비스공급자의 주요 활동 또는 주요 활동을 일상적으로 보완하는 조치든 상관없이, 타방 당사국의 관세절차를 대신하여 수입, 수출 또는 화물 운송에 관련된 세관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5. "컨테이너 저장 서비스"라 함은 컨테이너를 채우거나 비우기, 수선 및 선적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항만지역이나 내륙에서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행동을 말한다.

6. "해운 대리점 서비스"라 함은 해당 지리적 영역 내에서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대리점으로서 하나 이상의 선사나 해운회사의 사업 이해를 대표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 견적에서 송장에 이르기까지, 해상운송 서비스와 관련 서비스의 마케팅과 판매, 업체를 대신한 선하증권의 발급, 필요한 관련 서비스의 획득과 재판매, 서류 준비 및 사업정보의 제공
- 업체를 대신하여 선박의 입항을 주선하거나 요구되는 경우 화물을 인수

7. "화물 주선 서비스"라 함은 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획득, 서류준비, 기업정보 제공을 통하여 선사를 대신하여 선적 작업을 조직 및 감독하는 활동을 말한다.
8. "기타 보조 및 부수운송 서비스"라 함은 화물 중개서비스, 선하증권 검사, 화물요율 정보 서비스, 운송서류준비 서비스, 포장, 나무 상자에 넣기, 포장 풀기, 나무 상자 풀기 서비스; 화물 검사, 무게 측정, 샘플링 서비스, 화물 수취 및 인수 서비스(현지 집배도 포함)를 말한다.

부속서 VII의 부록 3
리히텐슈타인 - 제3.16조에 규정된 구체적 약속의 양허표

공급 형태 : 1)국경간 공급, 2)해외소비, 3)상업적 주재, 4)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특정 분야의 양허수준은 해당 서비스가 투입되는 분야 또는 달리 관련되는 다른 서비스 분야에서의 양허수준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됨. 괄호안의 CPC번호는 UN 잠정중심상품분류(국제연합통계사무소, 1991)를 참조함.			
제 I 부. 수평적 양허¹⁾			
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			
제1부는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모든 양허된 서비스 분야에서의 서비스무역에 적용되는 약속을 기재함. 특정서비스 분야에 적용되는 약속은 제 I 부에 기재됨.			
	1) 제한 없음.	<p>1) 보조금, 세금감면혜택 및 세액공제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음.</p> <p>유럽경제지역회원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유럽경제지역회원국 내에 등록 사무소, 중앙 관리기관 또는 주요영업소재지를 두고 있는 제3국의 자회사에게 부여된 대우는 유럽경제지역회원국 내에 제3국기업에 의하여 설립된 지점 또는 대리점에게 부여되지는 않음.</p> <p>유럽경제지역회원국내에 등록 사무소를 두고 있는 제3국의 자회사에게는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중 한 국가와의 유효하고 지속적인 유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보다 불리한 대우가 부여될 수 있음.</p>	

1) 리히텐슈타인은 자국의 특수한 지리적 상황, 제한된 자원 및 작은 노동시장을 참고함. 이에 따라, 리히텐슈타인은 서비스 분야를 제1부와 제2부에 기재된 유보에 대해서만 양허를 한다는 입장임.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2) 제한 없음.</p> <p>3) 법인(지점포함)에 의한 상업적 주재 설립은 국민경제·(국민자본과 외국자본의 균형된 비율, 거주 인구 대비 외국인구의 균형된 비율, 거주 인구대비 경제내 총직업수의 균형비율, 균형된 지리적 상황, 분야간 및 분야내 국민경제의 균형된 발전)를 이유로 한 반대가 없어야 한다는 요구조건을 따름.</p>	<p>2) 제한 없음. 다만, 보조금, 세금감면혜택 및 세액공제는 약속 안함.</p> <p>3) 다음 내용 외에는 제한 없음.</p> <p>개인에 의한 상업적 주재의 설립은 특정 기간 동안의 이전 거주경험 및 리히텐슈타인 영구거주 조건에 따름.</p> <p>법인의 상업적 주재 설립(지점포함)은 다음의 조건을 따름: 최소 한명의 관리자는 특정 기간동안의 이전 거주경험 및 리히텐슈타인 영구거주조건을 따름. 관리자(법인을 경영하고 대표할 권한이 있는)의 과반수는 리히텐슈타인에 거주하는 리히텐슈타인 시민이거나 특정 기간동안의 이전 거주경험이 있어야 함. 일반 및 유한합자회사는 유한책임회사(법인)와 동일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또한, 직원의 과반수는 리히텐슈타인 시민이거나 일정 기간동안의 이전 거주경험이 있어야 함.</p> <p>리히텐슈타인 회사법은 합작회사가 등록 지분 이전의 배제 또는 제한을 정관에 규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음.</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유럽경제지역회원국에 등록 사무소, 중앙관리기관 또는 주요 영업소재지를 두고 있는 제3국 기업의 자회사에 부여되는 대우는 유럽경제지역회원국에 설립된 제3국 회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게 부여되지 않음.</p> <p>유럽경제지역내에 등록 사무소를 두고 있는 제3국기업의 자회사에게는 유럽경제지역회원국 중 한 국가와의 유효하고 지속적인 유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보다 불리한 대우가 부여될 수 있음.</p> <p>모든 부동산 취득은 허가를 조건으로 함. 그러한 허가는 생활과 사업을 위한 실질적이고 증명된 조건을 제시하고 소정의 거주기간이 완료된 상황에서만 주어짐. 비거주자는 부동산 취득에서 제외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4) 다음의 I항에 정의된 범주에 속하는 자연인(이하 '자')의 입국 및 일시적 체류에 관한 조치, 그리고 다음의 제한 및 조건과 내국민 대우란에 기재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및 조건에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외국 서비스 공급자의 리히텐슈타인 입국 및 체류는 허가(거주허가서 및 노동허가서)를 받아야함. 허가는 할당된 노동허가의 전체 수량을 정하는 조치를 조건으로 부여됨. 다음 I항에서 정의된 필수요인에 대해서는 체류기간이 3년으로 제한됨. 리히텐슈타인에서 기간 제한이 없는 고용계약에 기초하여 기간 제한이 없거나 또는 연장 가능한 거주허가를 보유하고 리히텐슈타인에 체류 또는 입국하는 자는 일시체류 또는 일시고용을 위해 리히텐슈타인에 거주하거나 입국하는 자로 간주되지 않음.</p>	<p>4) 시장접근란에 기재된 자연인의 범주에 대한 조치 그리고, 다음의 제한과 조건을 따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법률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된 지점 및 활동장소에서의 일반적인 작업조건(급여, 근무시간 등 관련), 전문직의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 사회보장 및 공공연금계획의 법적 체제에 관한 규정(적격 기간, 거주요건 등 관련) 및 그 밖의 이민·입국·체류 및 노동관련 법률 규정. 이러한 자를 고용한 기업은, 요청이 있을 경우, 이러한 조치의 이행을 책임지고 있는 당국과 협력해야 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I. <u>특정 사업 또는 회사 내에서 리히텐슈타인으로 전근된 필수 요인(기업내 전근자)</u></p> <p>리히텐슈타인에 설립된 지점이나 자회사를 통해 리히텐슈타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국의 사업체 또는 회사(이하 기업)의 고용인이며, 입국을 신청하기 직전 1년 이상 그 기업에 고용된 자로써 다음에 자세히 정의된 자를 필수요인으로 간주함:</p> <p>a) <u>임원 및 고위관리자</u>: 기업 또는 그 기업내 한 부서를 1차적으로 지휘하며, 기업의 상급 임원·이사회·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시만을 받는 자.</p> <p>임원 및 고위관리자는 기업의 실질적인 서비스 공급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하지 않음.</p> <p>b) <u>전문가</u>: 기업내에서 서비스, 연구설비, 기술 또는 기업 경영 분야에서 고급수준의 전문적 지식으로 인하여 특정 서비스 공급에 필수적인 고도의 자격을 갖춘 자</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제 II 부. 분야별 구체적 약속			
<u>1. 사업서비스</u> <u>A. 전문직 서비스</u> a) 법률서비스 - 자국법 및 국제법에 관한 법률자문 서비스(리히텐슈 타인법에 대한 자문 제외) (CPC 861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회계, 감사 및 장부정리 서비스 - 회계 및 감사서비스 (CPC 862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49%의 외국인 지분한도. 외국인의 의결권은 49%를 초과할 수 없음. 운영 및 대표의 권한이 부여된 이사 회 중 적어도 한명은 리히텐슈타인에 거주하는 리히 텐슈타인 시민이어야 하며, 감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 법인을 위하여 전임으로 근 무하여야 함. 이사회의 과반수는 감사로서 일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함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조세환급을 제외한 장부정리 서비스 (CPC 8622)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c) 세무서비스 (CPC 863)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49%의 외국인 지분한도. 외국인 의결권은 49%를 초과 할 수 없음. 운영 및 대표의 권한이 부여된 이사회 중 적어도 한명은 리히텐슈타인에 거주하는 리히텐슈타인 시민이어야 하며, 감사 또는 관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 법인을 위하여 전임으로 근무하여야 함.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d) 건축서비스 (CPC 8671)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I부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	1) 공공의 목적을 위한 조사활동에는 리히텐슈타인 국적 필요 ²⁾ (그러나, 외국인 조사자는 인가받은 리히텐슈타인 조사자의 책임 하에 작업 가능) 2) 제한 없음. 3) 공공의 목적을 위한 조사활동에는 리히텐슈타인 국적 필요(그러나, 외국인 조사자는 인가받은 리히텐슈타인 조사자의 책임 하에 작업 가능)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공의 목적을 위한 조사활동에는 리히텐슈타인 국적 필요 (그러나 외국인 조사자는 인가받은 리히텐슈타인 조사자의 책임 하에 작업 가능)	
f) 통합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도시계획 및 조경서 비스 (CPC 867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 “공적 목적을 위한 조사”는 토지대장 활동 및 관련 활동을 말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컴퓨터 관련 서비스 (CPC 841-845, 8491)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C. 연구개발서비스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프로젝트 제외 a) 자연과학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1의 일부)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b) 사회과학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2의 일부)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종합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3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운전인력을 동반하지 않는 임대 서비스			
c) 기타운송 장비 관련 (CPC 83101 + 83102 + 8310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기타 기계 및 장비 관 련 (CPC 83106-831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기타사업 서비스			
a) 광고서비스 - 광고서비스(다이렉트 메일 광고 포함), 옥외 광고 제외, 수입허가가 필요한 물 품에 대한 광고 제외, 의약 품·알코올·담배·중독성 물질·폭발물·무기와 탄약에 대한 광고 제외 (CPC 8711의 일부 + 8712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 (CPC 86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경영컨설팅서비스 (CPC 86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경영컨설팅관련 서비스 (CPC 86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술 검사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농림 및 수렵업 관련 서비스			
- 농림 및 수렵업 관련 자문 서비스 (CPC 881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어업 관련 서비스			
- 어업관련 자문서비스 (CPC 882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h) 광업 관련 서비스			
- 시굴, 측량, 탐사 및 개발을 제외한 광업관련 서비스 (CPC 883의 일부 + 5115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제조업 부수 서비스 - 제조업 관련 컨설팅 서비스 (CPC 884의 일부 + 885의 일부) m) 과학, 기술관련 컨설팅 서비스 - 시굴, 조사, 탐사, 벌채 를 제외한 과학기술 컨설팅 관련외 (CPC 8675의 일부) n) 장비 유지 · 수선(선팩, 항공기 또는 다른 운송 장비 제외) (CPC 633 + CPC 8861-886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하위분야 CPC 633을 위해서는 리히텐슈타인에서의 상업적 주재 필요	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하위분야 CPC 633을 위해서는 리히텐슈타인에서의 상업적 주재 필요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o) 빌딩청소 서비스 - 빌딩청소 서비스 (CPC 874, 단 CPC 87409 제외)	1) 기술적 실현가능성의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하위분야 CPC 633에 대해서는 리히텐슈타인에서의 상업적 주재 필요	1) 기술적 실현가능성의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하위분야 CPC 633에 대해서는 리히텐슈타인에서의 상업적 주재 필요	
p) 사진 서비스 (CPC 87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q) 포장서비스 (CPC 876)	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하위분야 CPC 633을 위해서는 리히텐슈타인에서의 상업적 주재 필요	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하위분야 CPC 633을 위해서는 리히텐슈타인에서의 상업적 주재 필요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r) 인쇄 및 출판 (CPC 8844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C. 통신서비스			
통신서비스는 방송 ³⁾ 을 제외한 소리, 데이터, 이미지 그리고 이들간의 조합 등 전자기적 신호의 전달임			
기본통신 서비스			
a) 음성전화서비스 (CPC 752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 방송은 일반 공중에게 TV 및 라디오 프로그램 신호의 분배에 필요한 중단됨이 없는 전달 네트워크로 정의되며, 사업자간의 기여회선은 포함하지 않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패킷교환데이터전송 (CPC 752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회선교환데이터 전송 (CPC 7523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텔레스 서비스 (CPC 752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전신서비스 (CPC 752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팩시밀리 서비스 (CPC 7521 + 752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전용회선 서비스 (CPC 7522 + 752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부가서비스</u>			
(h) 전자메일 (CPC 7523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음성메일 (CPC 7523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j) 온라인 정보검색 및 DB 재생 (CPC 7523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k) 전자적 데이터교환 (EDI) (CPC 7523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l) 고도 팩시밀리 서비스 (CPC 7523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m)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n) 온라인정보/ 데이터 처리 (CPC 843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o) 기타			
- 비디오텍스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음성전달을 제외한 부가 페이징 서비스 스를 포함한 허가 받은 무선망을 기 초로 제공되는 부 가통신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4. 유통서비스</u>			
<u>A. 위탁중개인 서비스</u>			
- 수입허가 대상인 품목, 의약품, 유독성 물질, 폭발물, 무기류, 탄약 및 귀금속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 위탁중개 서비스 (CPC 6211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B. 도매서비스</u>			
- 수입허가 대상인 품목, 의약품, 유독성 물질, 폭발물, 무기류, 탄약 및 귀금속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 도매 서비스 (CPC 622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C. 소매서비스</u>			
- 수입허가 대상인 품목, 의약품, 유독성 물질, 폭발물, 무기류, 탄약 및 귀금속 관련 서비스를 제외한 소매서비스 이동 판매업소를 통한 소매업도 제외 (CPC 631의 일부 + CPC 632의 일부 + CPC 6111의 일부 + CPC 6113의 일부 + CPC 6121의 일부) ⁴⁾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리히텐슈타인에 상업적 주재 필요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리히텐슈타인에 상업적 주재 필요	

4) 이 하위분야는 자동차 및 그 자동차 부품과 관련된 모든 유통서비스를 포함함(CPC 6111 + 6113 + 6121)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프랜차이징 (CPC 892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5. 교육서비스			
사립교육서비스			
A. 의무교육서비스 (초등 및 전기중등) (CPC 921의 일부 + CPC 922의 일부)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외국인이 교육기관 설립시 리히텐슈타인법에 따라 법인형태로만 가능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비의무교육서비스 (후기 중등) (CPC 922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이 교육기관 설립시 리히텐슈타인법에 따라 법인형태로만 가능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고등교육서비스 (CPC 923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이 교육기관 설립시 국내법에 따라 법인형태로 만 가능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성인교육서비스 (CPC 924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인이 교육기관 설립시 국내법에 따라 법인형태로 만 가능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6. 환경서비스</u> 지자체, 리히텐슈타인 정부 또는 계약에 의해 소유 및 운영되는 것에 관계없이 공공시설 제외			
<u>A. 하수 서비스</u> (CPC 9401)	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B. 폐기물 처리 서비스</u> (CPC 9402)	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리히텐슈타인에 상업적 주재 필요	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리히텐슈타인에 상업적 주재 필요	
<u>C. 방역 및 기타유사 서비스</u> (CPC 9403)	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리히텐슈타인에 상업적 주재 필요	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리히텐슈타인에 상업적 주재 필요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기타 환경서비스 (CPC 9404 + 9405 + 9406 + CPC 9409의 일 부)	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7. 금융서비스

은행, 증권, 보험서비스에 대한 양허는 금융서비스 양해각서(이하 양해)와 제I부(수평적 양허)와 다음에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름. 다음의 양허는 비거주 금융서비스공급자가 영업을 하는 것을 허가하는 데 대하여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아니함.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1) 리히텐슈타인에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업적 주재의 설립이 요구됨 2) 제한 없음. 3) 리히텐슈타인에 법인으로 설립된 보험회사는 공공 유한회사 또는 상호협력 형태로 조직되어야 함. 제3국 보험업자가 리히텐슈타인에서 활동하고자 한다면, 대리인 또는 지점 사무소가 리히텐슈타인에 설립되어야 함. 제3국의 보험업자는 본국의 법에 의해 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회사이어야 함. 건강보험 공급업자가 기본건강보험체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상호제휴 또는 재단의 형태로 조직되어야 함.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이사회와 경영진 중 한명은 리히텐슈타인에 거주해야 함. 그들은 회사를 완전히 대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받아야 함. 지점 또는 대리의 경우 감독당국으로부터 지명 허가를 받은 일반 대표자가 리히텐슈타인에 거주하고 그 회사를 완전히 대표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으면 충분함.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	--	--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u> (보험 제외)	<p>15) 리히텐슈타인에서의 관행에 따라 뮤추얼펀드(집단적 투자)는 리히텐슈타인에 상업적 주재를 하고 있는 은행을 통해서 판매되어야 함.</p> <p>2) 제한 없음.</p> <p>3) 은행과 금융회사는 유한회사의 형태로 조직되어야 함. 은행 이외의 금융기관과 금융회사는 리히텐슈타인 은행과 회사법에 의해 다음의 면허요건을 따라야 함: 49%의 외국인 지분한도 외국인 의결권은 49%를 초과할 수 없음. 운영 및 대표의 권한이 부여된 경영진 중 적어도 한명은 리히텐슈타인에 거주하는 리히텐슈타인 시민이어야 하며, 감사 또는 관재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면허를 소지하여야 하며 법인을 위해 전임으로 근무하여야 함</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주택건설을 위한 보조금은 오직 리히텐슈타인 시민에게만 부여되며, 국내은행에서 주택건설을 위한 대출을 받아야 함.</p> <p>2) 주택건설을 위한 보조금은 오직 리히텐슈타인 시민에게만 부여되며, 국내은행에서 주택건설을 위한 대출을 받아야 함.</p> <p>3) 이사회와 경영진 중 한명은 리히텐슈타인에 거주해야 함. 그들은 회사를 완전히 대표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권한을 부여받아야 함 외국 금융기관의 상업적 주재는 회사의 이름, 스위스 국가은행에의 의무, 그리고 본국에서의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관련된 면허요건을 충족해야 함</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5) “양해”의 B.3절에 명시된 거래뿐만이 아니라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 거래의 모든 범위를 포함함(보험 제외).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9.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u>			
<u>A. 호텔 및 레스토랑 서비스</u> <u>비스 (케이터링: 음식 조달서비스 포함)</u> (CPC 641-CPC643)	<p>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다만, 케이터링(CPC 6423)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다만, 케이터링(CPC 6423)에 대해서는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u>B. 여행업 및 투어 오피레이터</u> (CPC 7471)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u>C. 관광 가이드 서비스</u> (CPC 7472)	<p>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10. 오락, 문화, 스포츠 서비스</u> <u>(시청각서비스 제외)</u> <u>B. 뉴스제공업</u> (CPC 96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D. 스포츠 및 기타 레크리에이션 서비스</u> -스포츠 서비스 (CPC 964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11. 운송서비스</u> <u>F. 도로운송 서비스</u> a) 여객운송 - 정기, “비개방형”관광만 (CPC 7121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부정기 단, 공차 진입, 카보타지, 및 택시 서비 스 제외 (CPC 7122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승무원이 포함된 승합차 임대 (CPC 712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승합차 유지 및 수선 (CPC 6112 + 8867)	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H. 운송보조서비스</u>			
a) 화물취급서비스 (CPC 741)	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창고 서비스 (CPC 742)	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기술적 실현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화물운송대리 서비스 (CPC 748)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기타 부수 운송 서비스, 단지방 수령 및 배달 제외 (CPC 749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부속서 VII의 부록 4
노르웨이 - 제3.16조에 규정된 구체적 약속의 양허표

공급형태 : 1) 국경간 공급 2) 해외소비 3) 상업적 주재 4) 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제 I 부. 수평적 양허			
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			
모든 분야 : 설립 - 취득을 위한 일반 승인 절차		3),4) 2차적인 주거지로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외국시민이 노르웨이에 거주하지 않거나, 적어도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허가를 신청하여야 함.	
모든 분야 : 지점 및 대리점에 대한 대우	3) 제한 없음.	3)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법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등록사무소, 중앙관리 또는 주요 영업장소를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내에 보유하고 있는 제3국 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대우는 제3국 회사가 유럽자유경제지역 회원국 내에 설립한 지점 또는 대리점으로 확대되지 함.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의 법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영역 내에 등록사무소만을 보유하고 있는 제3국 회사의 자회사가 유럽경제지역 회원국 중 하나의 경제와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관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덜 우호적인 대우가 적용될 수 있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모든 분야:: 법적 실체의 형성 - 유한책임회사, 재단	3) 약속 안함	3) 통상산업부가 개별적으로 면제를 부여하지 않으면, 합자회사의 일반 관리인, 그리고 이사회 및 법인 총회 구성원의 적어도 절반은 노르웨이 거주자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은 유럽경제지역 회원국에 거주하는 동 회원국의 시민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함.	
모든 분야: 보조금(보조금에 대한 정의는 GATS 제15조 하위 협상의 맥락에서 결정될 예정임)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제한 없음.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보조금에 대한 적격성의 판명은 노르웨이에서 설립된 법인에게만 주어짐. 연구·개발 및 국가공인시험 및 자격증부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서비스는 약속 안함 4) 자연인에게 가능한 보조금은 노르웨이 시민으로 제한될 수 있다. 4) 시장접근란에 언급된 자연인의 범주와 관련된 조치 이외는 약속 안함.	
모든 분야: 인력 이동	4) 일시입국 및 다음의 A, B, C 범주의 경제적 수요심사와의 합치를 요구하지 않는 한 약속 안함. A. 관리자 및 임원, 기업내 전근자인 전문가들로, 이들이 서비스를 공급자인 회사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이다. 일시입국, 거주 및 노동은 4년 기간으로 제한됨. 임원/관리자 - 법인에서 상급직위로 일하며, 이사회 또는 동 사업의 주주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것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과 지시를 받아 설립 관리를 지시하는 자로서 다음을 포함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 또는 부서 또는 설립의 하부단위를 지도 - 다른 감독자, 작업자 또는 관리자의 노동을 감독하고 통제 - 개인적으로 고용과 해고 또는 고용과 해고의 추천 및 다른 개인 조치의 권위를 보유 <p>전문가 - 회사의 서비스에 필수적인 비일반적인 지식, 연구장비, 기술 또는 관리능력을 보유하고 법인에서 일하는 자. 그런 지식을 평가할 때 회사에 특정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공인자격증 취득을 포함 특정 기술 지식을 요구하는 업종과 무역에 관한 높은 수준의 능력을 감안함.</p> <p>B. 사업상 방문자. 일시입국, 체류와 노동은 3개월 기간으로 제한됨.</p> <p>사업상 방문자</p> <p>a) 서비스 공급자를 대표하고 서비스 공급자를 위해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하여 서비스 판매 협상 또는 계약을 위해 일시입국을 하려는 자로서, 일반대중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공급하지 않아야 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b) 상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법인에서 고위직으로 일하며, 노르웨이에서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의 상업적 주재를 설립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자들은 직접적인 서비스 판매 또는 공급을 하지 않고 - 서비스 공급자는 노르웨이 내에 그 밖의 대표자, 지점 또는 자회사가 없음. <p>C. 노르웨이 내에 상업적 주재가 있는 법인에 고용되지 않은 채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연인의 일시주재. 접근은 다음의 조건을 전제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적 입국 및 체류는 12월 또는 계약기간 중 적은 기간을 택하여 그 중 3월로 제한됨. - 양허는 계약의 대상인 서비스 활동에만 해당됨. 이는 그 전문직을 수행할 수 있는 권리부여는 아님. - 노동 허가는 반드시 취득해야 함. 노동 허가는 높은 수준의 기술 인력 또는 특수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자연인에게 발급되어야 함. 노르웨이 체류 기간 동안 자연인은 서비스 수혜자에 의해 고용되어야 함. 자연인의 역량은 서비스 수혜자에게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어야 함. 그러한 노동의 필요성이 영구적이라는 것이 명백하거나 마지막 6개월 동안, 동일한 서비스 수혜자를 위한 동일 종류의 작업의 수행을 위해 허가가 발행된 경우, 허가가 교부되지 않음. - 입국, 체류, 급여, 근무환경 및 보장제도에 관한 모든 필요사항은 계속적으로 적용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I. 분야별 구체적 약속			
<u>1. 사업서비스</u> <u>A. 전문직 서비스</u> a) 법률 서비스 - 외국법에 대한 법률 자문 (CPC 861의 관련 부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변호사는 자신의 활동에 개인적으로 책임을 짐. 노르웨이 법률회사에 이권(주식보유 및/또는 법률회사 이사회의 일원이 되는 경우)을 보유하려면 그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경우에만 가능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외국 변호사는 신청 후 외국법 및 국제법에 대한 자문을 할 수 있음. 노르웨이 변호사와의 협력은 노르웨이 변호사 회사 구성에 관한 입법의 결과로 일부 제한이 있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에 관하여는, 매우 특별한 경우에는 자문에 대한 제한 없음.	
b) 회계, 감사 및 장부정리 서비스 (CPC 862) - 공인회계사의 감사 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노르웨이 시험을 통한 공인 자격과 노르웨이에서의 2년 경력이 요구됨. 노르웨이의 영구 거주지에서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과 같이.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회계 및 장부정리 서비스	<p>1) 회계는 노르웨이에서 행하여져야 함. 노르웨이 국왕은 회계가 외국에서 행해지는 것을 결정 할 수 있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인회계사는 노르웨이 영주권자여야 하며 선행 5년 중 최소 2년 을 노르웨이에서 영업을 해야 함.</p>	
c) 세무서비스 (CPC 863)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d) 건축서비스 (CPC 8671)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대한민국 건축사의 서비스 공급은 노르웨이 건축사와 공동계약을 통하는 경우 노르웨이 면허조건 없이 허용됨.
e)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2)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f) 통합 엔지니어링 (CPC 8673)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g)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 (CPC 867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h) 의료 및 치과 서비스 (CPC 93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노르웨이어를 구사해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특정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함. 동등 요건을 갖춘 외국 시험은 인정될 수 있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과 같이.	
i) 수의서비스 (CPC 93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동등 요건을 갖춘 외국 시험은 인정될 수 있음.	
j) 조산 및 관련 서비스, 간호서비스, 물리치료 및 준의료서비스 (CPC 9319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노르웨이어를 구사해야 하며, 다른 지역에서는 특정 국가시험을 통과하여야 함. 동등 요건을 갖춘 외국 시험은 인정될 수 있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u>			
a) 컴퓨터 하드웨어의 설치 와 관련된 자문서비스 (CPC 84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소프트웨어 시행서비스 (CPC 84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CPC 84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CPC 84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기 기 유지 및 보수, 기타 컴퓨터서비스 (CPC 845, CPC 84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C. 연구 및 개발 서비스</u>			
b) 인문사회과학 연구 개발 서비스 (CPC 85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D. 부동산 서비스</u>			
b) 수수료 및 계약에 근거한 부동산 서비스 (CPC 822)			
- 부동산 대리점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요청이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교육/시험은 인정될 수 있음.	
- 부동산 대리인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요청이 있을 경우, 해외에서의 교육/시험은 인정될 수 있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중개인 없는 임대/리스 서비스			
a), b), c) 선박 ¹⁾ , 항공기, 기타 운송장비 관련 (CPC 83102, 83103, 83104, 8310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다음 외에는 제한 없음. 항공기: 노르웨이 항공등록부에 등재되고, 노르웨이 자연인 또는 노르웨이 법인이 항공기를 소유함.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차량 임대 (CPC 8310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기타 기계류 및 장비 관련 (CPC 83106-831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기타 사업서비스			
a) 광고서비스 (CPC 8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노르웨이 선박등록부에 등록을 위한 요건(노르웨이 국제선박 및 노르웨이 국적선)은 제11A절: 해상운송에 기재되어 있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시장조사, 여론조사 서비스 (CPC 86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d) 경영 및 행정서비스 (경영, 컨설팅 포함) (CPC 865, 86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술적 검사 및 분석서비스(CPC 8676). 다만, 노르웨이 국제선박 및 노르웨이 국적선에 등록된 선박에 요구되는 법정 분류와 같은 공공서비스 기능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농림 및 수렵, 임업 관련 자문 및 상담 서비스(CPC 881의 관련부분)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어업관련 자문 및 상담 서비스 (CPC 882의 관련 부분)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h) 광업관련 서비스 (CPC 883 + 511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제조업관련 조언 및 컨설팅서비스 (CPC 884, 88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k) 인사 배치 및 공급서비스 - 노동인력 모집 및 인력공급 (국민 및 노동허가 소지 거주자) (CPC 872의 관련 부분)	1) 활동이 노르웨이 내에서 행하여진다고 평가되는 경우 3)에 명시된 규칙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구직자에게 채용서비스를 비용을 청구하면 안 됨.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임원 구인 서비스 (CPC 8720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l) 조사 및 보안 활동 (CPC 87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관리자는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노르웨이 시민이어야 함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3)과 같음.	
m) 과학기술 관련 컨설팅 (CPC 867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n) 장비유지·수선서비스 (단, 선박, 항공기나 다른 운송장비 제외) (CPC 633 및 8861-886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o) 빌딩청소서비스 (CPC 874)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p) 사진서비스 (CPC 87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q) 포장서비스 (CPC 876)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r) 인쇄 및 출판 (CPC 8844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s) 국제회의 서비스 (CPC 879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t) 기타			
- 전시경영 서비스 (CPC 87909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실내 디자인 (CPC 87907의 관련 부분)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통·번역서비스, 다만 정부의 인가를 받은 번역사 제외 (CPC 87905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B. 쿠리어 서비스 (CPC 75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운송서비스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한사항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o) 기타 - 모바일 및 개인통신서비스와·시스템 - 부가통신서비스 (음성전화, 전신 및 텔레스, 패킷 및 회선교환데이터 서비스, 모바일 라디오전화, 페이징 및 위성서비스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3.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u>			
A. 빌딩관련 일반 건설업 (CPC 5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민간 엔지니어링 관련 일반건설업 (CPC 51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일반토목 설치 및 조립 (CPC 514, 51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전기공사, 배관, 정수에 대해서는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는 외국의 시험은 개별 사안에 따라 인정될 수 있음.	
D. 마무리 공사 (CPC 517)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타	- 건설현장 기초공사 (CPC 511) - 특별무역건설공사 (CPC 515) - 운전자를 포함한 건물/민간 엔지니어링건축물 건설/해체 장비임대 (CPC 518)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양허분야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4. 유통서비스</u> 날생선의 직접 판매와 주류의 사적인 수입은 제외			
A. 중개서비스 (CPC 621) (무기류, 주류와 의약품의 유통 은 제외)	1) 제한 없음. 단, 전기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단, 전기는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도매서비스 (CPC 622) (무기류 와 의약품의 수입 및 유통은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전기의 도매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소매서비스 (CPC 631 + 632 + 6111 + 6113 + 6121) (의약품, 주류와 무기류의 유통은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전기의 소매서비스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프랜차이징 (CPC 892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5. 교육서비스</u>			
국가인정시험 혹은 학위수여와 연계된 교육 서비스	1) 3)과 같음 2) 제한 없음. 3) 초중등 교육은 공공서비스 기능임. 재단이나 그 밖의 법인에 추가적 병렬적 또는 특성화된 교육서비스 제공을 하는데 인가 필요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 초등 또는 낮은 수준의 중등 교육서비스 - 중등교육 - 고등교육 - 성인교육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외국 교사자격증은 인정될 수 있고, 반드시 시험에 통과해야 함.	
국가인정시험 혹은 학위수여와 연계되지 않은 교육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6. 환경서비스</u>			
지방, 지역, 중앙정부에 의해 소유 및 운영되거나 이들에 의해 계약된 공공서비스 기능은 제외			
A. 폐수관리 (CPC 9401)	1) 약속 안함. 다만, 자문서비스 제외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다만, 자문서비스 제외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고체/유독성 폐기물 관리	1) 약속 안함. 다만, 자문서비스 제외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다만, 자문서비스 제외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폐기물 처리 서비스 (CPC 9402)			
- 위생 및 유사서비스 (CPC 9403)			
C. 대기와 기후의 보호			
- 가스와 기타 방출물 감축 및 대기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CPC 9404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토양 및 수질 정화 및 복구 - 오염된 토양 및 수질의 처리 및 정화 (CPC 94060의 일부)	1) 약속 안함. 다만, 자문서비스 제외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다만, 자문서비스 제외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소음 및 진동 저감 - 소음 저감 서비스 (CPC 9405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생물 다양성과 경관의 보호 - 자연 및 경관 보호 서비스 (CPC 9460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기타 환경 및 보조서비스 - 그 밖에 분류되지 않은 기타 환경보호 서비스(CPC 94090)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7. 금융서비스</u>			
	<p>i) 노르웨이는 WTO GATS의 금융서비스 양해각서(양해각서)에 따라 금융서비스에 대한 양허를 한다.</p> <p>ii) 모드 1과 모드 2에 대한 시장접근 양허는 양해각서의 시장접근절의 B.3과 B.4항에 명시되어진 거래에 적용된다.</p> <p>iii) 모드 1에 대한 양허계획에 제시된 규제와 제한은 유럽경제지역 밖에서 설립된 비거주 금융서비스공급자에게 적용되는 규제조치이다. 모드 2상에서 기재된 제한은 노르웨이에 거주하는 금융서비스 소비자에게 대하여 적용되어지는 규제조치이다.</p> <p>iv) 규제 또는 제한은 아래와 같다.</p>		
A. 보험 및 보험관련 서비스	<p>1) 양해각서의 B.3절 (a)항에 기재된 서비스에 추가하여, 비거주 보험회사는 여객선(크루즈 포함), 대양어선, 연해탐사와 관련한 보험, 최소 10人년 또는 일정한도 이상의 연간 매출이 있는 국내회사와 관련한 보험계약을 공급할 수 있음. 2005년 현재 동 한도는 5천만 NOK로 정해져 있음.</p> <p>비거주 보험회사는 노르웨이에서 인증된 보험 중개인을 통해 양해각서의 B.3(a) 문단에 기재된 서비스를 공급해야 함.</p> <p>2) 제한 없음.</p> <p>3) 어떠한 단일투자자 또는 공동투자그룹이라도 노르웨이 보험회사의 지분을 10% 이상 획득 및 보유할 수 없음. 하지만 외국 또는 노르웨이 금융기관은 전략적 제휴 협정일 경우 허가를 조건으로 주식25%까지 획득 및 보유할 수 있음. 재무관세부는 특별한 경우 단일투자자 소유권에 대해 이러한 제한을 면제할 수 있음.</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상호보험회사의 경우, 관리자, 최소한 이 사회의 과반수, 법인회 구성원 중 절반은 노르웨이 영구 거주자여야 함. 동 요건은 유럽경제지역 내 국가의 시민이 그 국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업무역부는 이러한 규칙에 대한 면제를 부여할 수 있음</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은행업 및 기타금융서비스 (보험 제외)	<p>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외국 보험사는 노르웨이에서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소유되어진 자회사로 설립될 수 있음. 부분적으로 소유되어진 자회사의 다른 소유자들은 반드시 외국 또는 노르웨이 금융기관이어야 함.</p> <p>유럽경제지역내에서 설립되지 않은 금융기관의 자회사 또는 지점에 대하여 분할요건은 생명보험, 비생명보험 및 신용위험보험에 적용됨.</p> <p>노르웨이에서 설립된 보험회사는 합작 주식회사 또는 상호보험회사로 조직되어야 함. 노르웨이에서 설립된 보험중개회사는 합작주식회사로서 조직되어져야 함.</p> <p>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그 어떤 단일투자자 또는 공동투자그룹이라도 상업은행, 중앙증권예탁소 또는 금융인수기관의 자본을 10% 초과하여 획득 또는 보유할 수 없음. 또는 저축은행의 주식증명(서)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하지만 외국 또는 노르웨이 금융기관은 정산소 또는 주식증명을 제외하고는 전략적 제휴계약의 경우에 허가를 조건으로 25% 까지 획득 및 보유할 수 있음. 또한, 재무관세부는 특별한 상황에서 이러한 기관의 단일투자자 소유권에 대한 이들 제한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음.</p> <p>전술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외국은행과 금융기업은 노르웨이에서 부분적 또는 완전히 소유되어지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부분적으로 외국인들이 지분을 가진 자회사의 다른 소유자(지분보유자)들은 반드시 각각 은행 또는 금융기관이어야 함.</p> <p>노르웨이에서 설립되어진 상업은행, 중앙증권예탁소, 증권사 및 투자펀드 관리기업은 합작주식회사로서 조직되어져야 함.</p> <p>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합작주식회사로서 조직되지 않은 저축은행과 금융기업에서 의사결정단체의 임원은 유럽경제지역내 국가의 시민으로, 그 국가에 영구 거주하여야 함. 재무관세 부는 이러한 규범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음.</p> <p>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9. 관광 및 여행관련서비스</u>			
<u>A. 호텔 및 레스토랑 (케이터링: 음식조달서비스 포함)</u> 호텔, 캠핑지, 기타 상업적 숙소, 레스토랑, 카페, 주점, 바 (CPC 641, 642, 64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B. 여행업 및 투어 오퍼레이터</u> (CPC 74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C. 관광 가이드 서비스</u> (CPC 74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10. 오락, 문화, 스포츠</u> <u>B. 뉴스제공업</u> (CPC 96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11. 운송서비스</u> <u>A. 해상운송</u> 국제 운송(화물, 여객) (CPC 7211, 7212, CPC 7213의 해당부분), 국제 예선서비스 (CPC 7214의 일부) 국내운송(1)과 국제 예선서비스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노르웨이 국적선(NOR). 선박은 유럽경제지역 시민 또는 유럽경제지역 시민이 적어도 자본의 60%를 소유한 회사에 의해 소유되어야 함. 60% 규칙의 예외도 가능함. b) 노르웨이국제선박(NIS) : 제한 없음 c)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2): 제한 없음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a) 노르웨이 국적선 : 선박 소유회사가 유한책임회사일 때 본사는 유럽경제지역 지역에 있어야 함. 의장을 비롯한 이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지난 2년간 유럽경제지역 지역에 거주하는 유럽경제지역 시민이어야 함. b) 노르웨이국제선박 : 비유럽경제지역 선박소유자가 40% 이상을 소유한 선박은 노르웨이에 관리기능을 두어야 함. 노르웨이에 본사가 있는 선박소유회사나 노르웨이 관리회사가 운항할 수 있음. 또는 외국회사가 본선박을 노르웨이국제선박에 직접 등록한 경우에는 유럽경제지역 대표가 필요함. 대표자는 노르웨이에 주소지를 두며, 선박소유자를 대신해서 당사자적격을 가짐. c) 기타 형태의 상업적 주재: 제한 없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연안화물운송 (CPC 7212의 일부), 다음과 같은 서비스에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운송과 관련한 피더 서비스 - 국제무역의 빈 컨테이너운송 - 연안 석유탐사 및 생산의 해상운송 서비스 	<p>4) a) 노르웨이 국적선 선원 :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b) 노르웨이 국제선박 선원 :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c) 항만근로자 :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a) 노르웨이 국적선. 선박은 유럽경제지역 시민 또는 유럽경제지역 시민이 적어도 자본의 60%를 소유한 유럽경제지역 회사에 의해 소유되어야 함. 60% 규칙의 예외도 가능함.</p> <p>b) 기타 형태의 상업적 주재 :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4) a) 노르웨이 국적선 :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b) 노르웨이 국제선박 : 제한 없음. 단, 선장은 노르웨이 시민이어야 함. 예외도 인정될 수 있음.</p> <p>c) 항만근로자 :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a) 노르웨이 국적선: 선박을 소유 회사가 유한회사일 경우 본사는 유럽경제지역 국가에 있어야 함. 회장을 이사회의 다수는 최근 2년 이상 유럽경제지역 지역에 거주하고 유럽경제지역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유럽경제지역 시민이어야 함.</p> <p>b) 기타 형태의 상업적 주재 :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정박, 석유탐사 및 생산 서비스를 포함한 국내 해상 예선서비스 (CPC 7214의 일부)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a) 노르웨이 국적선. 선박은 유럽경제지역 시민, 또는 유럽경제지역 시민이 적어도 자본의 60%를 소유한 유럽경제 지역 회사에 의해 소유되어야 함. 60% 규칙의 예외도 가능함. (b) 기타 형태의 상업적 주재 :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a) 노르웨이 국적선: 선박을 소유 회사가 유한회사일 경우 본사는 유럽경제지역 국가에 있어야 함. 회장을 이사회의 다수는 최근 2년 이상 유럽경제지역 지역에 거주하고 유럽경제지역 지역에서 살고 있는 유럽경제지역 시민이어야 함. b) 기타 형태의 상업적 주재 :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해운보조서비스			
- 해상화물취급서비스 (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저장 및 창고보관 서비스(CPC 742); 통관서비스(4); 컨테이너 스테이션 서비스(5)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해운대리점 서비스(6), 화물운송 주선서비스(7)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기타 보조 및 부수운송 서비스(8)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해운조작자에 의하여 요구 되는 부수서비스			<p>다음의 서비스는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에 의하여 국제해상운송 공급자에게 제공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선 2. 예인 보조 3. 선용품 공급, 급유, 급수 4. 폐기물 수거, 밸라스트 폐기물 처리 5. 선석배정 서비스 6. 항행보조 7. 통신, 급수, 전기 공급을 비롯한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연안 기반의 조작서비스 8. 긴급수리시설 9. 정박, 계류, 접안서비스 10. 컨테이너 처리, 저장 및 창고 보관, 화물운송 이 양허표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도로, 철도, 연안운송 및 관련 보조서비스에 대하여, 복합운송업자가 해상 운송된 국제화물을 연계 운송할 목적으로 트럭, 철 도운송 및 관련 설비를 임대할 권한을 가지거나 또 는 복합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들 형태 의 운송 서비스에 접근 및 이용할 수 있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C. 항공</u> (서비스 정의는 항공부속서에 있음)			
- 컴퓨터예약시스템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하나 이상의 제3국의 항공기에 의해 통제되는 컴퓨터예약시스템의 경우 모회사 또는 참여 항 공사의 의무에 관하여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하나 이상의 제3국 항공기로부터 통제되는 컴 퓨터예약시스템에 대한 모회사 또는 참여회사 의 의무에 관하여는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항공권 판매 및 마케팅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컴퓨터예약시스템 보유 모항공사에 의한 컴퓨 터예약시스템을 통한 항공운항서비스의 보급은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컴퓨터예약시스템 보유 모항공사에 의한 컴퓨 터예약시스템을 통한 항공운항서비스의 보급은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항공기 유지·보수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지상조업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공항의 규모에 따른 활동범주를 제외하고 제한 없음. 각 항공사의 공급자 수는 이용 가능한 공간제한에 따라 수가 제한될 수 있으며 기타 사유로 인하여 2개사 이상이어야 함. 비차별적인 사전허가가 적용될 수 있음.</p> <p>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u>E. 철도운송서비스</u>			
c) 견인서비스 (CPC 7113)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철도운송장비 유지 및 보수 (CPC 8868) ²⁾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철도운송서비스 지원서비스 (CPC 743)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F. 도로운송서비스</u>			
a),b) 여객·화물운송 (CPC 7121, 7122, 7123 내륙 운송제외)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교통 기준에 기초한 경제적 수요심사를 조건으 로 한 정기여행 및 셔틀서비스를 위한 여객운 송서비스를 제외하고 예외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도로운송서비스 지원서비스 (CPC 744)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 특정 서비스는 CPC협정에서 다루어지는 전반적인 활동 범위의 일부만을 구성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G. 파이프라인 운송</u> - 연안에서 채굴된 석유와 천연가스의 파이프라인 운송. 단, 중앙 네트워크 조정 및 감시 서비스는 제외(CPC 71310과 관련 부분)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H. 모든 종류의 운송에 대한 부속서비스</u> a) 화물취급서비스 (CPC 741) b) 창고 보관업 (CPC 742)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수평적 분야에서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기술적 실행 가능성 부족으로 인해 약속 안함.

첨 부

해상운송에 대한 주석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이라 함은 복합운송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차후에 항만에 도착한 다른 상품보다 우선적으로 운송하는 것을 포함하여, 복합운송업자가 적시에 상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는 능력을 말한다. ”복합운송업자“라 함은 선하증권이나 복합운송서류, 상품에 대한 복합운송 계약을 증명하는 기타 서류의 발행 당사자로서 본 운송계약에 따른 상품의 운송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내 운송"이란 석유 탐사 및 생산이 이루어지는 대륙붕 위치를 포함하여, 노르웨이의 항만 간 물품 및 여객에 대한 해상운송을 말한다.
2. "국제 해상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타 형태의 상업적 주체"라 함은 다른 회원국의 국제 해상운송 서비스 공급자가 해상 운송이 실질적인 요소를 구성하는 내에서, 부분적으로 또는 완전히 통합된 운송 서비스의 고객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활동을 국내적으로 행하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양허는 국경간 공급 모드 하에서 취한 양허를 어떤 방식으로든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활동은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한다.

- 가. 견적에서 송장에 이르기까지 고객과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해상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마케팅과 판매. 이들 서비스는 서비스 공급업자 단독이나, 상설 사업활동 체계를 설립한 서비스 판매자와 함께, 운영 또는 제공된다.
- 나. 자신을 위해서 또는 고객을 대신하여(또한 고객에게 재판매) 운송 및 관련 서비스를 취득. 이러한 서비스는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여하한 형태, 특히 내륙 수로, 도로 및 철도를 이용하여 외국에서 돌아오는 운송서비스를 포함한다.
- 다. 운송 서류나 통관 서류, 또는 운송상품의 원산지 및 특성과 관련된 그 밖의 서류에 대한 문서상의 준비
- 라. 컴퓨터정보시스템과 전자적 정보 상호교환을 포함하는 여하한 수단을 이용한 비즈니스 정보의 제공(통신 분야의 부속서의 규정을 조건으로 함)

- 마. 여하한 사업활동 체계의 조성 (기업주식에의 참여를 포함)과 국내에 설립된 해운 대리점을 위하여 국내에서 채용한 (또는, 외국인력의 경우, 인력 이동에 대한 수평적 양허를 조건으로 함) 인력에 대한 임명
- 바. 업체를 대신하여 선박의 입항을 주선하거나 요구될 때 화물을 인수

3. “해상 화물 처리 서비스”라 함은 터미널 운영업자를 포함한 하역업체에 의해 행해지는 활동을 말하나, 부두 노동력이 하역업체나 터미널 운영업체와 독립적으로 조직된 경우, 부두 노동자가 행하는 직접적인 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적용되는 활동은 다음의 조직 및 감독활동을 포함한다.

- 선박에 대한 화물의 양적하,
- 화물의 묶기/풀기,
- 선적 전이나 양하 후 화물 접수/인도 및 보관

4. "통관 서비스" (또는 "세관 브로커 서비스")라 함은, 이 서비스가 서비스공급자의 주요 활동 또는 주요 활동을 일상적으로 보완하는 조치든 상관없이, 타방 당사국의 관세절차를 대신하여 수입, 수출 또는 화물 운송에 관련된 세관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5. "컨테이너 저장 서비스"라 함은 컨테이너를 채우거나 비우기, 수선 및 선적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항만지역이나 내륙에서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행동을 말한다.

6. "해운 대리점 서비스"라 함은 해당 지리적 영역 내에서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대리점으로서 하나 이상의 선사나 해운회사의 사업 이해를 대표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 견적에서 송장에 이르기까지, 해상운송 서비스와 관련 서비스의 마케팅과 판매, 업체를 대신한 선하증권의 발급, 필요한 관련 서비스의 획득과 재판매, 서류 준비 및 사업정보의 제공
- 업체를 대신하여 선박의 입항을 주선하거나 요구되는 경우 화물을 인수

7. "화물 주선 서비스"라 함은 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획득, 서류준비, 기업정보 제공을 통하여 선사를 대신하여 선적 작업을 조직 및 감독하는 활동을 말한다.
8. "기타 보조 및 부수운송 서비스"라 함은 화물 중개서비스, 선하증권 검사, 화물요율 정보 서비스, 운송서류준비 서비스, 포장, 나무 상자에 넣기, 포장 풀기, 나무 상자 풀기 서비스; 화물 검사, 무게 측정, 샘플링 서비스, 화물 수취 및 인수 서비스(현지 집배도 포함)를 말한다.

부속서 VII의 부록 5
스위스 - 제3.16조에 규정된 구체적 약속의 양허표

공급형태 : 1)국경간 공급, 2)해외소비, 3)상업적 주재, 4)자연인의 주재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분야의 양허수준은 해당 서비스가 투입되는 분야 또는 달리 관련되는 다른 서비스 분야에서의 양허수준을 대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됨. - 팔호안의 CPC 번호는 UN 잡정중심상품분류 (국제연합통계사무소, 1991)를 참조함. -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거주, 주소지, 상업적 주재 등의 요건은 스위스 영역과 관련된 사항임. - 이 양허표의 부록 I 및 II는 양허표에 통합되어 일부를 구성함. 			
제 I 부. 수평적 양허			
<p>제1부는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모든 양허된 서비스 분야에서의 서비스무역에 적용되는 약속을 기재함. 특정서비스 분야에 적용되는 약속은 제II부에 기재됨.</p>			
이 양허표에 포함된 모든 분야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1) 보조금, 세금감면혜택 및 세액공제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음. 2) 보조금, 세금감면혜택 및 세액공제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3) 제한 없음.	<p>3) 다음을 제외하고는 제한 없음.</p> <p><u>I. 이사회의 구성</u></p> <p>주소 요건은 다음의 법적실체의 구성에 적용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작회사”또는 “무한조합원을 보유한 주식회사”: 이사회의 과반수가 스위스에 거주하여야 함. 그러나 이러한 거주요건은 이 한도 이하로 설정될 수 있음. - “유한책임회사”: 적어도 한 명 이상의 관리인은 스위스에 거주하여야 함. - “협동조합”: 관리인의 과반수가 스위스에 거주하여야 함. <p><u>II. 주주의 범위</u></p> <p>“합작회사”가 회사의 등록된 주식의 취득자에 대한 인정이 연방법에서 요구하는 주주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 회사가 등록된 주식의 취득자로 특정인을 거절할 수 있다고 설립에 관한 조항을 사전 확인하는 것은 금지하지 아니함.</p> <p><u>III. 지점</u></p> <p>지점의 설립은 회사에 의하여 그 회사를 완전히 대표하도록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스위스에 주소를 둔 대표(자연인)를 요건으로 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u>IV. 법인격이 없는 상업적 주재</u></p> <p>스위스 법에 따른 자연인에 의하거나 법인격이 없는 기업(“합작회사”, “유한책임회사”, “협동조합”을 제외 한 형태)의 형태로 상업적 주재의 설립은 지방정부의 법에 의한 영주허가를 요건으로 함.</p> <p><u>V. 보조금 수혜자격</u></p> <p>보조금, 세제혜택 및 세액공제에 대한 자격은 스위스의 특정 지역에 설립한 자에 제한될 수 있음.</p> <p><u>VI. 부동산의 취득</u></p> <p>스위스에 영주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해외에 본부가 있거나 해외 통제를 받는 기업의 토지취득은 허가를 받아야만 함. 그러나 다음은 그러하지 아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직업적 용도 및 영업 활동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b) 스위스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개인적 주거 목적을 위한 주 거주지의 취득 <p>개인적 주거 목적을 위한 휴양주거지와 부차적 주거지의 취득을 위해서는, 용도의 확인이 되는 것에 따라 허가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다음을 제외한 순수하게 금융 투자 및 아파트 거래는 금지됨.</p> <p>(a) 외국인은 자신의 참여가 스위스증권거래소에 기재된다는 조건하에 주식주택소유물을 소유하고 거래하는 법인에 금융참여(예, 주식) 허가 없이 투자할 수 있음.</p> <p>(b) 외국인 및 외국인이 지배하는 은행 및 보험회사는 파산 및 청산의 경우에, 저당대부금 보증을 위한 부동산취득에 대한 허가가 부여됨.</p> <p>(c) 외국인 및 외국이 지배하는 보험회사는 매수인의 재산의 총가치가 스위스에서의 기업 활동에 요구되는 인위적인 준비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투자가 허가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4) 아래의 A·B·C 및 D항에 정의된 유형에 해당하는 자연인의 입국 및 일시체류에 관련되고, 내국민 대우 열에 기재된 내국민 대우에 대한 제한 및 조건 그리고 외국인 서비스 공급자의 스위스 내 입국 및 체류 요건을 조건으로 하는 조치는 허가(거주허가 및 근로허가의 요건)를 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p>아래의 A항에 정의된 주요 인사는 체류기간이 3년에 제한되나, 최장 5년까지 연장될 수 있음. 아래의 BC 및 D항에 정의된 주요 인사는 체류기간이 1년내 90일로 제한됨; 다음 해에 그러한 체류기간 허가가 갱신될 경우, 신청인은 스위스에 연속 체류기간 사이에 두 달간 해외에 체류하여야 함.</p> <p>스위스에 체류하거나 입국하는 자연인 중 시간제한을 받지 않는 고용계약을 기반으로 한 무기한의 또는 연장 가능한 거주허가를 가지고 스위스에 체류하거나 입국하는 자는 스위스에서 일시 체류 또는 일시 고용을 위하여 스위스를 거주 또는 입국하는 자로 간주되지 아니함.</p>	<p>4) 다음 제한 및 조건을 조건으로 하는 시장 접근 열에 기재된 자연인의 범주에 관한 조치를 제외하고는 약속 안함.</p> <p>(a) 지점 및 법률 및/또는 집합적 협정에서 규정된 활동의 지역에서 우세하는 근로 조건(보수, 근로 시간 등 관련)</p> <p>(b) 스위스 내의 전문적 및 지리적 이동을 제한하는 조치</p> <p>(c) 사회보장 및 공공 퇴직 계획(자격 기간, 거주 요건 등과 관련)의 법적 시스템과 관련된 규율. 그리고</p> <p>(d) 이민, 입국, 체류 및 근로와 관련된 그 밖의 모든 법의 규정</p> <p>그러한 자연인을 고용하는 기업은 요청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집행하는 당국과 협력하여야 함.</p> <p>보조금, 세제 혜택 및 세액공제에 대한 수혜자격은 스위스의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제한될 수 있음.</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A. 기업내 전근자(ICT)</p> <p>다른 당사국의 특정 사업 또는 기업 내에서 스위스로 이직하고 스위스에 설립된 지점, 자회사 또는 제휴회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업 또는 기업의 고용인으로서, 입국지원서를 제출하기 직전 1년 이상 스위스 외부에서 그 기업에 고용되었던 아래 (가), (나)에서 정의된 주요인사</p> <p>(a) 임원 및 고위관리자</p> <p>기업 및 하나 이상의 부서 관리를 제1차적으로 지휘하며, 고위임원·임원회 및 주주회로부터 오직 일반적인 관리 또는 지도를 받는 자. 임원 및 고위관리자는 기업의 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에 관련된 업무는 직접 수행하지 아니함.</p> <p>(b) 전문가</p> <p>기업 내에서 서비스, 연구설비, 기술 또는 기업 경영에 대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특정 서비스 공급에 필수적인 고급 인력</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B. 사업상 방문자(BV) 및 서비스 판매자 (SS)</p> <p>(a) 상업적 설립의 책임을 맡은 사업상 방문자(BV)</p> <p>스위스 내에 상업적 주재가 없는 기업의 고용인이며, 입국지원서를 제출하기 직전 1년 이상 스위스 외부에서 그 기업에 고용되었던 자 그리고 B.(가) 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는 자, 또한 스위스 내에 해당 기업의 상업적 주재를 설립하고자 스위스에 입국하는 자. 상업적 주재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공급할 수 없음.</p> <p>(b) 서비스 판매자(SS)</p> <p>자신을 고용하거나 위임을 해준 기업을 대신하여 서비스 판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스위스에 일시체류하고, 그 기업에 의하여 고용되거나 위임을 받은 자. 서비스 판매자는 공중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공급할 수 없음.</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C. 계약적 서비스 공급자(CSS)</p> <p>CSS - 법인의 고용인</p> <p>스위스내 상업적 주재가 없는 스위스 외부의 기업(CPC 872에 정의된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을 제외하고)으로 스위스에서 실제적인 사업에 관여하는 기업과 서비스 계약을 맺은 기업의 고용인으로 입국지원서를 제출하기 직전 1년 이상 스위스 외부에서 그 기업에 고용되었던 A. (나)항에 명시된 조건을 충족하며 전문가로서 스위스 외부의 기업을 대신하여 스위스 내에서 아래에 기재된 서비스 분야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자. 부가 요건으로 3년의 업무 관련 경력이 요구됨. Part II에 양허된 제한이 적용됨. 각 계약에 따라 제한된 수의 서비스 공급자는 한 번에 3월의 일시 입국이 주어지며 그 수는 계약에 따라 수행되는 업무의 규모에 달려 있음. 스위스 외부의 그러한 기업에 고용되지 아니한 개인 서비스 공급자는 스위스 고용시장에 접근하는 것으로 간주함.</p> <p>서비스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률자문서비스 (CPC 861의 일부분) - 엔지니어링서비스 (CPC 8672) - 컴퓨터 하드웨어 설치 관련 자문서비스 (CPC 841) - 소프트웨어 시행 서비스 (CPC 842)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감사서비스. 단, 은행회계 감사 제외 (CPC 86211의 일부) - 회계 검토 서비스 (CPC 86212) - 영업세 계획 및 자문서비스 (CPC 86301) - 영업세 준비 및 검토서비스 (CPC 86302) - 건축설계 서비스 (CPC 8671) - 도심 계획 서비스 (CPC 86741) - 연구 개발 서비스 (CPC 851-853) - 경영컨설팅 서비스 (CPC 865) - 기술시험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 - 관련 과학 및 기술 자문 서비스 (CPC 8675) - 항공기 유지 및 보수 서비스 (CPC 8868의 일부) <p>D. 기타</p> <p>설치자 및 유지자 (IM)</p> <p>기계 또는 산업장비에 대한 설치 또는 유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있는 전문가. 그 서비스의 공급은 양측 모두 법인인, 기계 또는 장비의 생산자와 기계 또는 장비의 소유자 사이에, 요금제 또는 계약제(설치/유지 계약)로 시행되어야 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제 II 부. 분야별 구체적 약속			
1. 사업서비스 A. 전문직 서비스 a) 법률서비스 - 국제법 상사중재 서비스 (CPC 861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법률자문서비스 (CPC 861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2), 3) Ticino를 제외한 모든 주 : 제한 없음. Ticino: 스위스 회계법에 대한 법률 자문서비스는 “수탁회사”로 제한되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4) Ticino를 제외한 모든 주: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Ticino: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단, 스위스 회계법에 대한 자문서비스는 “수탁회사”로 제한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중재 및 재판외 화해서비스 (CPC 861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특허변호서비스(상표 포함) (CPC 861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2), 3) 고객을 대신해서 스위스연방지적재산연구소 (IGE/IPI)에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 IGE/IPI는 특허변호사가 스위스내 영구 우편주소가 있으며, IGE/IPI가 인정한 특허 변호사의 감독하에 스위스에서 1년간의 실무경험을 필요조 건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및 위의 1), 2), 3)에 기재된 제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회계, 감사, 회계장 부정리서비스			
- 회계 및 장부정리서 비스 (CPC 862, 단 86211은 제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은행감사를 제외한 감사서비스. (CPC 86211의 일부)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합작회사” 또는 “무한조합원을 보유한 주식 회사”의 감사 중 적어도 한 명은 스위스 내에 주소, 주요 사무소, 또는 등록 지점이 있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제 I 부에 기재된 제한사항 이외는 약속 안함. “합작회사” 또는 “무한조합원을 보유한 주식 회사”의 회계감사관은 스위스 내에 주소, 주요 사무소, 또는 등록 지점이 있어야 함.</p>	
c) 세무서비스 (CPC 863)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건축설계 서비스 (CPC 867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2), 4) 대한민국 건축설계 사와 스위스 건축설계사의 공동계약 아래 제공되는 건 축설계 서비스는 스위스 라 이센스 없이 허용됨.
e) 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공적 목적 ¹⁾ 을 위한 설문조사 활동, 시험을 통과 한 자격있는 조사관들에게 주어지는 스위스 면허 를 필요로 하는 것 외에는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공적 목적을 위한 조사활동은 시험을 통과한 조사 관들에게 주어지는 스위스 면허를 필요로 하는 것 외에는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단, 공적 목적을 위한 조사활동은 시험을 통과한 자격있는 조사관들에게 주어지는 스위스 라이센스를 필요로 함.	

1) “공적 목적을 위한 조사 활동”이란 지적 측량 및 관련 활동을 말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통합엔지니어링 서비스 (CPC 867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 (CPC 867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h) 의학 및 치의학 서비스 (CPC 93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독립적 진료행위를 위하여 스위스 국적을 필요로 하는 것 외에는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독립적 진료행위를 위하여 스위스 국적을 필요로 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외과 수의사 (CPC93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독립적 진료행위를 위하여 스위스 국적을 필요로 하는 것 외에는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독립적 진료행위를 위하여 스위스 국적을 필요로 함.	
<u>B.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u>			
a) 컴퓨터 하드웨어 설비관련 자문 서비스 (CPC 84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소프트웨어 시행서비스 (CPC 84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데이터 프로세싱 서비스 (CPC 84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CPC 84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타 - 컴퓨터를 포함한 사무실 기계의 유지 및 수리 서비스 (CPC 84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데이터 준비 서비스 (CPC 849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고객상담요원에 대한 교육 서비스, 웹사이트 디자인 서 비스, 컴퓨터 시스템 및 망에 대한 통합 자문서비스, 시장 접근이나 내국민대우 없이 스위스법에서 예견되는 그 밖의 전문적 컴퓨터 서비스 (CPC 8499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C. 연구 개발 서비스</u>			
공적 자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프로젝트 제외			
a) 자연과학부문 연구개발 서비스 (CPC 851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사회과학부문 연구 개발 서비스 (CPC 852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학제간 학문 부문 연구 개발 서비스 (CPC 853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D. 부동산서비스</u>			
a) 소유 또는 임차 재산 포함 -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 위치한 소유 또는 임차 재산 포함 (CPC 821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수수료 혹은 계약에 기초한 서비스 (CPC 82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운전기사 없는 임대			
a) 선박임대서비스 - 해운 서비스 (CPC 83103의 일부)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스위스 국기를 게양하고 항해하기 위해서는 선박은 100% 스위스 국적자에 의하여 소유되고 통제되어야 하며, 그 중 3/4는 스위스에 거주지가 있어야 하는 것 외에는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스위스 국기를 게양하고 항해하는 선박을 소유하는 회사의 이사회는 스위스 국적자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중 과반수는 스위스에 거주지가 있어야 하는 것 외에는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라인강 내부수로운송 (CPC 83103의 일부)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스위스국기를 게양하고 항해하기 위해서는 선박은 스위스 또는 맨하임협약 및 이와 관련된 의정서에 따른 국가에 거주하는 자에 의하여 실질적으로(최소 자본 및 의결권의 66%) 영향을 받은 회사의 소유이어야 하는 것 외에는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연안운송을 포함한 교통권은 맨하임협약과 이와 관련된 의정서를 기초로 제한받으며, 선박의 소유자는 스위스에 적절한 관리대리점이 있어야 하는 것 외에는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연안운송을 포함한 교통권은 맨하임협약과 이와 관련된 의정서에 기초하여 제한 받음.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항공기 임대서비스 - 항공기임대서비스, 정기 운항이나 전세로 기업에게 임대되는 항공 기 제외 (CPC 83104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기타 운수장비 임대서비스 (CPC 83101 + 83102 + 8310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기타 기계 및 장비 임대서 비스 (CPC83106-8310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타 - 개인 또는 가정용품 임대 서비스, 선정적 또는 폭력 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 제외 (CPC 832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기타 사업서비스	<p>a) 광고서비스</p> <p>- 광고서비스 수입허가가 필요한 제품 및 의약품, 알코올음료, 담배, 중독성물질, 폭발물, 무기와 탄약을 제외한 광고 서비스 (CPC 8711의 일부 및 8712의 일부)</p> <p>- 옥외광고 서비스 수입허가 필요한 제품 및 의약품, 알코올음료, 담배, 중독성물질, 폭발물, 무기와 탄약을 제외한 옥외광고 (CPC 8719의 일부)</p> <p>b)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 서비스 (CPC 864)</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기술적 실현 가능성의 부족을 이유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공공장소에서의 야외광고 서비스는 주나 차치제와의 독점적 장기공급 계약의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경영컨설팅서비스 (CPC 86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경영컨설팅 관련 서비스 (CPC 86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술적 시험 및 분석 서비스 (CPC 867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f) 농업·수렵 및 임업 부수 서비스 - 농업·수렵 및 임업 자문서비스 (CPC 881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어업 부수 서비스 (CPC 88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h) 광업 부수 서비스 - 광업부수서비스 시굴·측량·탐사 및 개발 서비스 제외 (CPC 883의 일부+ 5115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i) 제조업 부수 서비스 (CPC 884+ 88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l) 조사 및 안전 - 안전자문서비스 (CPC 8730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m) 과학 및 기술관련 자문 서비스 (CPC 8675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n) 장비의 유지 및 수선 서비스 (선박·항공기 또는 기 타운송장비 제외) (CPC 633 + 8861 - 886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PC 633은 스위스 내 상업적 주재를 필요로 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PC 633은 스위스 내 상업적 주재를 필요로 함.	
o) 빌딩청소 서비스 - 빌딩청소 서비스 (CPC 874, 다만 87409 제외)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스위스 내 상업적 주재를 필요로 함.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스위스 내 상업적 주재를 필요로 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 사진서비스 (CPC 87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q) 포장서비스 (CPC 876)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스위스 내 상업적 주재를 필요로 함.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스위스 내 상업적 주재를 필요로 함.	
r) 인쇄 및 출판 (CPC 8844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s) 국제회의 서비스 (CPC 87909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t) 기타			
- 전화수신 서비스 (CPC 8790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복제 서비스 (CPC 8790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번역 및 통역서비스 (CPC 87905)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2), 3) Genève 및 Zürich를 제외한 모든 주 : 제한 없음. Genève: 공무 목적의 번역은 약속하지 않는 것 외에는 제한 없음. Zürich: 공무 목적의 번역은 주내의 거주가 요구된다는 것 외에는 제한 없음. 4) Genève 및 Zürich를 제외한 모든 주 :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enève: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을 제외하고 약속 안 함. 그리고 공무 목적의 번역을 약속 안함. Zürich: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공식 통역서비스는 주내의 거주조건을 필요로 함.	
- 우편리스트 기입 및 우편서비스 (CPC 87906)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전문디자인서비스 (CPC 87907)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개인연주가 ²⁾ 를 대리하는 에이전시 서비스 (CPC 87909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2. 커뮤니케이션 서비스</u>			
A./B. 우편/택배 서비스			
- 특급배달 ³⁾ (CPC 7511의 일부 + 7512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2) CPC 96114에서 “예외”에 언급되고, 스포츠선수 및 개인 연주자를 위한 에이전시와 관련되어 있는 서비스 유형이나, CPC 872에 기술되어 있는 유형의 활동에 대상이 되지 아니함.

3) 속달서비스는 스위스 법에 따르면 1급 중량 및 형태의 빠른 우편 배달에 비하여 스위스 우체국에 의하여 적용된 5배 가격으로 전달되는 “서신 배달” 및 1급 중량의 소포 배달에 비하여 스위스 우체국에 의하여 적용된 기본요율의 2배로 전달되는 “소포 배달”로 간주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통신서비스			
아래 약속의 목적상, 통신서비스란 방송 ⁴⁾ 을 제외한 소리, 데이터 이미지 그리고 이들 간의 조합 등 전자기적 신호의 전달임.			
<u>기본통신 서비스</u>			
a) 음성전화서비스 (CPC 751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패킷 교환 데이터 전송 서비스 (CPC 7523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회선 교환 데이터 전송 서비스 (CPC 7523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4) 방송은 공공에게 텔레비전 및 라디오 프로그램 신호의 배분을 위하여 필요한 연속적인 전송으로 정의되지만, 운영자간 협조 연결은 포함하지 아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텔레스 서비스 (CPC 7523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전신 서비스 (CPC 752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팩시밀리 서비스 (CPC 7521의 일부 + 752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g) 전용회선서비스 (CPC 7522의 일부 + 7523)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부가통신 서비스</u>			
h) 전자메일 (CPC 7523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i) 음성메일 (CPC 7523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j) 온라인 정보 및 데이터 베이스 복구 (CPC 7523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k) 전자자료 교환(EDI) (CPC 7523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l) 부가 팩시밀리 서비스, 저장 및 전송, 저장 및 회수 포함 (CPC 7523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m) 코드 및 프로토콜 변환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n) 온라인 정보 및 /또는 자료 처리(전환가공 포함) (CPC 843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o) 기타			
- 비디오텍스트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부가 페이징 서비스를 포함하여 인가된 무선망에 근거한 부가 서비스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3. 건축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u>			
<u>A. 일반건설업 - 건축</u> (CPC 512)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B. 일반건설업 - 토목</u>			
- 일반건설업 - 토목 (CPC 5131-5137)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C. 설치 및 조립</u> (CPC 514+516)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단, 주 또는 지방자치 단체 또는 특정 운영자에게 독점적으로 유보된 가스, 물, 전기계량기, 가스관, 전기 및 주요 수도관은 약속 안함.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D. 건축 마무리</u> (CPC 517)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E. 기타</u>			
- 건축현장에서의 선시공 작업 (CPC 511)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특별 트레이드 건설작업 (CPC 515)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운영자를 포함한 건물 또는 토목 건축 작업의 건축과 해체용 장비와 관련된 임대 서비스 (CPC 518) ⁵⁾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5) 운영자를 수반한 임대 서비스는 CPC 872상에 기술된 유형의 활동을 대상으로 하지 않음. 임대 서비스의 전달 유형이 무엇이든지간에 개별 운영자 그 자체에게 적용가능한 대우는 자연인의 이동에 따른 것임.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4. 유통서비스</p> <p><u>A. 중개서비스</u></p> <p>-중개서비스. 단, 수입허가 대상품목, 의약품, 독극물, 폭발물, 무기류, 화약류 및 귀금속과 관련된 서비스는 제외 (CPC 6211의 일부)</p> <p><u>B. 도매서비스</u></p> <p>-도매서비스. 단, 수입허가 대상품목, 의약품, 독극물, 폭발물, 무기류, 화약류 및 귀금속과 관련된 서비스는 제외 (CPC 622의 일부)</p>	<p>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C. 소매서비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매서비스. 다만, 수입허가 대상품목, 의약품, 독극물, 폭발물, 무기류, 화약류 및 귀금속과 관련된 서비스는 제외 (CPC 631의 일부 + 632의 일부 + 6111 + 6113 + 6121)⁶⁾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단, 허가의 거부가 가능한, 주 또는 지방정부의 허가 절차 대상인 대규모 유통 시설은 제외. 경제적 수요심사 또는 기타 시장 접근 제한조치 불가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스위스내 상업적 주재를 필요로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D. 프랜차이징</u> (CPC 89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6) 이 업종은 자동차 및 그 부품과 관련된 모든 유통서비스를 포함함.(CPC 6111 + 6113 + 6121)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5. 교육 서비스</u>			
사립교육 서비스			
A. 의무교육(초등, 전기중등) (CPC 921의 일부 + 922의 일부)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약속 안함. 3) 제한 없음. 4) 약속 안함.	
B. 비의무교육 (후기중등) (CPC 922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고등교육 (CPC 923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성인교육 (CPC 924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타 교육			
- 외국어 및 요리 분야 (CPC 929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6. 환경서비스</u>			
지방자치단체, 주 또는 연방정부 가 운영 또는 소유하거나 계약한 공공시설은 제외			
<u>A. 폐수 서비스</u> (CPC 9401의 일부)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B. 폐기물 처리 서비스</u> (CPC 9402의 일부)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스위스에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스위스에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u>C. 위생 및 유사 서비스</u> (CPC 9403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D. 기타 환경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출가스 클리닝 서비스 (CPC 9404의 일부) - 소음감쇄 서비스 (CPC 9405의 일부) - 자연 및 전경 보호서비스 (CPC 9406의 일부) - 기타 환경 및 부속 서비스 의무적인 환경영향평가 및 독성 또는 방사선과 관련된 서비스를 포함함. (CPC 9409의 일부)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7. 금융서비스</u>			
보험 및 보험 관련 서비스	<p>“양해각서“ B. 1항에 명시된 독점권.</p> <p>건물의 화재 및 자연재해 보험에 대한 공공 독점이 다음 주에 존재함.</p> <p>Zurich, Berne, Luzern, Nidwalden, Glarus, Zog, Fribourg, Solothurn, Basel-Stadt, Basel-Landschaft, Shaffhausen, Argovie, St-Gallen, Graubunden, Appenzell Innerrhoden, Thurgau, Vaud, Neuchatel, Jura</p> <p>Nidwalden과 Vaud 주에서는 화재와 자연 재해 보험에 대한 공공 독점은 건물내의 이 동할 수 있는 자산도 포함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p>3) 대표사무소는 영업행위 또는 대리점으로서 행위를 하지 못함. 스위스에서 법인으로 설립된 보험회사에 대하여, 합작회사 또는 협동조합의 법적 형태가 요구됨. 외국보험회사의 지점에 대하여 대표사무소가 있는 국가에서의 보험회사의 법적 형태는 스위스 합작회사 또는 스위스 협동조합과 필적할 수 있어야 함. 기초건강보험체계에의 참여는 다음의 법적실체, 즉 조합, 협동조합, 재단 또는 합작회사 중 하나로 조직되어진 건전한 보험공급자로서의 요건이 요구됨. 법정연금 기금체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상호제휴 또는 재단의 형태로 설립되어진 연금기금을 요구함.</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직접보험업은 본사가 위치한 국가에서 최소 3년 동안의 영업경험이 요구됨.</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 (보험은 제외)	<p>“양해각서” B. 1항에 명시되어 있는 독점권 :</p> <p>두 개의 담보부 증권 발행기관은 특정 담보부 증권 발행을 위한 배타적 권리가 부여됨.</p> <p>첫 번째 기관과 관련해서 스위스 주 은행만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음.</p> <p>두 번째 기관의 경우 담보부 대출이 대차대조표의 최소 60%에 해당하는 스위스에 본점을 둔 은행이 회원이 될 수 있음.</p> <p>다른 저당권 담보부증권의 발행은 동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음.</p> <p>1)7) 외국인 투자펀드는 스위스에서 면허를 받은 대표 중개인 거주자를 통하여서만 매매되고 유통될 수 있음.</p> <p>3) 상업적 주재는 최대 주주 및/또는 수익권자가 비당사국의 자연인이라면 금융서비스 공급이 거절될 수 있음. 대표사무소는 영업을 하거나 대리점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음.</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외국인 집단투자펀드의 발행은 인지세를 내야 함</p> <p>2) 제한 없음.</p> <p>3) 외국인 금융서비스 공급자의 상업적 주재는 기업의 이름과 본국에서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에 따라서 특정한 요건을 필요로 함.</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7) “양해각서”의 B.3항에 명시된 거래뿐만 아니라 은행 및 기타 금융서비스 거래의 모든 범위가 포함됨(보험 제외).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9. 관광 및 여행 관련 서비스			
A. 호텔 및 레스토랑 (케이터링: 음식조달서비스 포함) (CPC 641-643)	<p>1) 케이터링(CPC 6423) 외에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의 부족으로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스위스에서의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p>	<p>1) 케이터링(CPC 6423) 외에는 기술적 실현 가능성의 부족으로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동일 주내에서의 시험 통과가 요구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없음. Jura주에서는 면허 보유자가 같은 주에 거주하여야 함.</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스위스에서의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Jura주에서는 면허 보유자가 같은 주에 거주하여야 함.</p>	
B. 여행업 및 투어 오퍼레이터 (CPC 7471)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C. 관광가이드 서비스 (CPC 7472)	<p>1) 기술적 실현 가능성의 부족으로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기술적 실현 가능성의 부족으로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 다만, 산악가이드로 일하기 위하여 시험합격이 필수이며 일부 주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수험자격이 제한적으로 부여될 수 있음. 어떤 주에서는 외국인 산악가이드에게 독자적인 영업만을 허용할 수 있음</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단 산악가이드로 일하기 위하여 시험합격이 필수적이며 일부 주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수험자격이 제한적일 수 있음. 어떤 주에서는 외국인 산악가이드에게 독자적인 영업만을 허용할 수 있음</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10. 레크리에이션, 문화 및 스포츠 서비스 (시청각 제외)			
B. 뉴스 대리점 서비스 (CPC 962)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스포츠 및 기타 레크리에이션 서비스	- 스포츠 서비스 (CPC 964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11. 운송서비스</u> <u>A. 해운서비스</u> (a/b) 국제운송 (여객 및 화물) (CPC 7211의 일부 + 7212의 일부)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단, 아래 주된 사무소와 주 활동이 스위스에서 일어나는 기업의 유형은 스위스 국기를 걸고 다음의 조건하에 선박을 소유·작동할 수 있음(선박소유자 또는 운송회사): “합작회사” 또는 “무한 조합원을 보유한 주식회사”의 지분의 대다수를 대표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2/3은 스위스에 거주하는 스위스 국적자나 현저하게 스위스인이 소유하고 스위스인이 통제하는 스위스에 등록된 사무소가 있는 기업이 소유해야 함. 합작회사의 총지분 또는 “무한 조합원을 보유한 주식회사”는 기명주식의 형태로만 발행되어야 함. “합명회사”·“제한파트너쉽”·“유한주식회사”의 최소 3/4 이상을 형성하는 준경영자 및 기타 파트너들은 스위스 국적자나 현저하게 스위스인이 소유하고 스위스인이 통제하는 스위스에 등록된 사무소가 있는 기업이 소유해야 함.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시장접근의 제3유형에 명시된 모든 유형의 기업 제외. 이사회와 경영진의 대다수는 스위스에서 거주하여야 함. 이사회나 경영진이 한 사람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경우 그 사람은 스위스에 거주하는 스위스국적자여야 함. 스위스해양항해사무소는 스위스의 기업에 대한 현저한 소유 및 영향력 있는 통제 등의 해당 업계의 특성의 보존을 위하여 기업의 다른 이사 또는 고위관리자에 대해서 스위스 거주 및 국적조건을 요구할 수 있음. “합작회사”·“무한조합원을 보유한 주식회사”·“유한책임회사”·“협동조합”的 임원 및 경영진의 최소 2/3 이상은 스위스 국적자이어야 함. 법적 회계감사보고서는 스위스에 등록된 사무소가 있는 회사나 스위스의 상업등록부에 등록된 지점이 있는 회계회사가 제작하여야 함. 바다로 항해하고자 하는 선박의 대출공인은 스위스 국기를 달고 항해하는 선박에 한하여 주어짐.	항구에서 서비스 :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외항선의 유지 및 보수 서비스 (CPC 8688의 일부)	<p>“협동조합”은 자산의 2/3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임원 2/3이상이 스위스 국적자나 현저하게 스위스인이 소유하고 스위스인이 통제하는 스위스에 등록된 사무소가 있는 기업이 소유하여야 함. 스위스 국기를 달고 항해하는 선박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외국자본은 그 선박회사와 선박의 운항에 대한 스위스의 영향권을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함.</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선박승무원에 대하여는 약속 안함.</p> <p>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선박승무원에 대하여는 약속 안함. 보조금 적격성에 대하여는 약속 안함.</p> <p>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해운 보조 서비스			
- 해상화물 처리 서비스 (부속서 I의 정의 1에 규정된 대로)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항만내 창고업(CPC 742의 일부)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통관 서비스 (부속서 I의 정의 2에 규정된 대로)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컨테이너 저장 서비스 (부속서 I의 정의 3에 규정된 대로)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해운 대리점 서비스 (부속서 I의 정의 4에 규정된 대로)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화물 주선 서비스 (부속서 I의 정의 5에 규정된 대로)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B. 내부수로운송			
라인강에서 내부수로운송 a) 여객운송 (CPC 7221의 일부)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 다만, 스위스 국기를 걸고 항해하기 위하여, 그 선박은 스위스 또는 맨하임협약 및 이에 관련 의정서에 따른 국가에 거주하는 자가 실질적인 영향(자본과 투표권의 66% 이상)을 미치는 기업에 의하여 소유되어야 함.</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 다만, 연안항해를 포함한 교통권은 맨하임협약 및 이에 관련 의정서에 기초하여 제한됨. 선박의 소유자는 스위스 내에 적합한 관리대리점이 있어야 함.</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연안항해를 포함한 교통권은 맨하임협약 및 이에 관련 의정서에 기초하여 제한됨.</p>	
b) 화물운송 (CPC 7222의 일부)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 다만, 스위스 국기를 걸고 항해하기 위하여, 그 선박은 스위스 또는 맨하임협약 및 이에 관련 의정서에 따른 국가에 거주하는 자가 실질적인 영향(자본과 투표권의 66% 이상)을 미치는 기업에 의하여 소유되어야 함.</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 다만, 연안항해를 포함한 교통권은 맨하임협약 및 이에 관련 의정서에 기초하여 제한됨. 선박의 소유자는 스위스 내에 적합한 관리대리점이 있어야 함.</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연안항해를 포함한 교통권은 맨하임협약 및 이와 관련된 의정서에 기초하여 제한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승무원을 포함한 선박대여 (CPC 7223의 일부)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다만, 스위스 국기를 걸고 항해하기 위하여, 그 선박은 스위스 또는 맨하임협약 및 이에 관련 의정서에 따른 국가에 거주하는 자가 실질적인 영향(자본과 투표권의 66%이상)을 미치는 기업에 의하여 소유되어야 함.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다만, 연안항해를 포함한 교통권은 맨하임협약 및 이에 관련 의정서에 기초하여 제한됨. 선박의 소유자는 스위스 내에 적합한 관리대리점이 있어야 함.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연안항해를 포함한 교통권은 맨하임협약 및 이와 관련된 의정서에 기초하여 제한됨.	
d) 선박유지 및 수선 (CPC 8868의 일부)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견인서비스 (CPC 7224의 일부)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f) 내부수로운송 보조서비스 (CPC 745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C. 항공운송서비스</u>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공기 유지 및 보수 (CPC 8868의 일부) - 항공운송서비스 판매 및 마케팅 - 컴퓨터예약시스템(CRS)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컴퓨터예약시스템의 모항공사가 제공하는 항공운송 컴퓨터예약시스템의 유통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컴퓨터예약시스템의 모항공사가 제공하는 항공운송 컴퓨터예약시스템의 유통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컴퓨터예약시스템의 모항공사가 제공하는 항공운송 컴퓨터예약시스템의 유통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컴퓨터예약시스템의 모항공사가 제공하는 항공운송 컴퓨터예약시스템의 유통에 대해서는 약속 안함을 제외하고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 지상조업 서비스 ⁸⁾ (CPC 7461의 일부)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공항유지 서비스 ⁹⁾ (CPC 7461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우주 운송 (CPC 733)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약속 안함. 4) 약속 안함.	

8) 이 업종은 지상 관리, 승객 관리, 수화물취급, 화물 및 우편취급, 진입로 관리, 항공기서비스, 연료 관리, 취항조차 및 승무원 관리, 지상운송을 포함함.

9) 이 업종은 공항 기본 시설 및 조작서비스를 포함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E. 철도 운송 서비스			
a) 여객운송 (CPC 7111)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 없음. 다만, 철로를 사용하여야 하는 수요가 있고,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는 다른 운송수단이 없는 경우에 허가가 부여됨.</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b) 화물운송 (CPC 7112)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 없음. 다만, 철로를 사용하여야 하는 수요가 있고,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는 다른 운송수단이 없는 경우에 허가가 부여됨.</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c) 견인 서비스 (CPC 7113)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한 없음. 다만, 철로를 사용하여야 하는 수요가 있고,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더욱 합리적이 방법으로 그 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는 다른 운송수단이 없는 경우에 허가가 부여됨.</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p>1) 약속 안함.</p> <p>2) 제한 없음.</p> <p>3) 제한 없음.</p> <p>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p>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d) 철도운송 장비 정비 수리 (CPC 8868의 일부)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u>F. 도로운송 서비스</u>			
(a) 여객운송			
- 정기적 운송, “비개방형” 관광버스 (CPC 7121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비정기적 운송, 국내 운송 및 택시 운송은 제외 (CPC 7122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화물운송, 국내 운송은 제외 (CPC 7123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c) 운전기사 있는 상업용 차량 임대 (CPC 7124)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도로운송시설 유지 및 보수 (CPC 6112 + 8867)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e) 기타 도로운송 보조서비스 (CPC 7449)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H. 운송 보조 - 모든 방식의 운송			
a) 화물 처리 서비스 (CPC 741)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창고 및 저장소 (CPC 742)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기술적 실현 가능성 부족으로 약속 안함.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c) 화물운송 주선 (CPC 748)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d) 기타, 지역 핵업 및 배달은 제외 (CPC 749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추가적 약속
<u>12. 그 밖의 서비스</u>			
a) 세탁, 클리닝 및 염색 서비스 (CPC 9701)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b) 이발 및 그 밖의 미용 서비스 (CPC 9702) ¹⁰⁾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상업적 주재가 요구됨.	
c) 그 밖의 서비스			
- 애완동물 케어링 서비스 ¹¹⁾ (CPC 9709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 건강 서비스 - 사우나 및 스파 (CPC 9709의 일부)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 제한 없음. 2) 제한 없음. 3) 제한 없음. 4) 제 I 부에 기재된 사항 외에는 약속 안함.	

10) 명확화를 위한 설명 : 이 업종의 CPC 유형은 치료적, 의료적, 준의료적 또는 재활 치료의 어떠한 유형을 포함하지 아니함.

11) 이 약속은 텔 손질 또는 애완동물 기숙과 같은 서비스를 포함함.

첨부 I

이 양허표의 정의(해운 보조 서비스)

1. "해상 화물 처리 서비스"라 함은 터미널 운영업자를 포함한 하역업체에 의해 행해지는 활동을 말하나, 부두 노동력이 하역업체나 터미널 운영업체와 독립적으로 조직된 경우, 부두 노동자가 행하는 직접적인 활동은 포함하지 않는다. 대상이 되는 활동은 선박에 대한 화물의 양적하, 화물의 뮤기/풀기, 선적 전이나 양하 후 화물 접수/인도 및 보관을 포함한다.
2. "통관 서비스"(또는 "세관 브로커 서비스")라 함은, 이 서비스가 서비스공급자의 주요 활동 또는 주요 활동을 일상적으로 보완하는 조치든 상관없이, 타방 당사국의 관세절차를 대신하여 수입, 수출 또는 화물 운송에 관련된 세관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3. "컨테이너 저장 서비스"라 함은 컨테이너를 채우거나 비우기, 수선 및 선적 가능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항만지역이나 내륙에서 컨테이너를 보관하는 행동을 말한다.
4. "해운 대리점 서비스"라 함은 해당 지리적 영역 내에서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대리점으로서 하나 이상의 선사나 해운회사의 사업 이해를 대표하는 행동을 의미한다.
 - 가. 견적에서 송장에 이르기까지, 해상운송 서비스와 관련 서비스의 마케팅과 판매, 업체를 대신한 선하증권의 발급, 필요한 관련 서비스의 획득과 재판매, 서류 준비 및 사업정보의 제공
 - 나. 업체를 대신하여 선박의 입항을 주선하거나 요구되는 경우 화물을 인수
5. "화물 주선 서비스"라 함은 운송 및 관련 서비스의 획득, 서류준비, 기업정보 제공을 통하여 선사를 대신하여 선적 작업을 조직 및 감독하는 활동을 말한다.

첨부 II

이 양허표에 사용된 영어 번역 (공급형태 3 - 법적실체의 형태)

아래 리스트는 법적실체의 형태를 영어로 번역하는데 적용되고, 이들은 이 양허표에서만 사용된다.¹⁾

"조합(Association)" :	association, Verein
"협동조합(Co-operative society)" :	société coopérative, Genossenschaft
"합명회사(General partnership)" :	société en nom collectif, Kollektivgesellschaft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	société à responsabilité limitée (sàrl), Gesellschaft mit beschränkter Haftung (GmbH)
"재단(Foundation)" :	fondation, Stiftung
"합작회사(Joint-stock company)" :	société anonyme (SA), Aktiengesellschaft (AG)
"제한 파트너쉽(Limited partnership)" :	société en commandite, Kommanditgesellschaft
"무한조합원을 보유한 주식회사(Stock company with unlimited partners)" :	société en commandite par actions, Kommanditaktiengesellschaft

1) 이들 비공식 번역은 문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어지는 것들에 근거하였음.

부속서 VIII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노르웨이, 스위스의 MFN 면제목록

제1부

아이슬란드의 MFN 면제 목록

분야 또는 업종	제3.4조와 불합치하는 조치에 대한 기술	조치 적용대상 국가	예정 기간	면제필요조건
모든 분야	<p>다음과 같은 북유럽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프로젝트 및 수출에 대한 보증 및 대출 (북유럽투자은행)- 연구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 (북유럽산업기금)- 국제적 프로젝트를 위한 타당성 연구의 대한 자금 조성 (프로젝트 수출을 위한 북유럽기금)- 환경기술을 사용하는 기업*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북유럽환경금융사)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	무기한	북유럽 협력의 유지 및 발전

분야 또는 업종	제3.4조와 불합치하는 조치에 대한 기술	조치 적용대상 국가	예정 기간	면제필요조건
시청각서비스 : 시청각프로그램 전송	유럽공동체 텔레비전 방송 지침(No. 89/552)과 같은 규정의 이행을 위하고, 그와 합치되게 채택된 조치 및 특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시청각 프로그램에 내국민 대우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럽 원산지 프로그램을 정의하는 조치	국경간 텔레비전에 관한 유럽의회협약의 당사국 또는 협정이 체결될 수 있는 유럽 경제지역 협정의 그 밖의 유럽국가 당사국	무기한	특정한 언어정책 목적의 달성 및 유럽 방송분야 내에서 문화정책의 증진
시청각 서비스 : 영화영사물과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배급	특정 유럽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시청각 프로그램 및 그 프로그램의 공급자에 대한 MEDIA 및 EURIMAGES와 같은 지원프로그램에 합치되게 혜택의 이행을 위하여 채택된 조치 영화영사물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배급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북유럽영화 및 TV 기금)	유럽국가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	무기한	관련국가 간의 지역적 정체성의 보존 및 증진 북유럽 협력의 유지 및 발전
	시청각물의 공동제작에 대한 정부간 기본 협정 및 복수국 간 협정에 근거한 조치로써, 그 협정들이 대상이 되는 시청각물에 대하여, 특히 배급 및 자금조달에 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는 조치	문화적 협력이 바람직한 모든 국가 (다음 국가에 대해서는 협정이 이미 존재하거나, 협상중에 있음 : 프랑스, 캐나다)	무기한 (국가 간 문화적 유대의 증진은 시간적으로 제한될 수 없음)	이러한 협정의 목적은 관련 국가들 간 문화적 유대를 증진하기 위한 것임.

제2부
리히텐슈타인의 MFN 면제 목록

분야 또는 업종	제3.4조와 불합치하는 조치에 대한 기술	조치 적용대상 국가	예정 기간	면제필요조건
시청각서비스	시청각물 분야에서 공동제작에 대한, 특히 자금조성과 배급과 관련하여, 양자 간 또는 복수국 간 협정의 대상이 되는 시청각물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함.	문화적 협력이 바람직한 모든 국가	무기한	공동의 문화적 목적의 증진
	MEDIA 및 EURIAMGES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부여하는 조치 그리고 국경 간 텔레비전에 관한 유럽의회 협약과 같은 약정을 이행하고 시청각물 및/또는 특정유럽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시청각서비스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며 상영시간의 할당과 관련된 조치	유럽국가	무기한	장기간 지속된 문화적 유대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 목적의 증진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방송국의 운영에 대한 양허는 리히텐슈타인 외의 국가의 국민에게 부여 될 수 있음.	문화적 협력이 바람직한 모든 국가	무기한	공동의 문화적 목적의 증진 그리고 공급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한정된 규모의 시장에의 접근을 규율

분야 또는 업종	제3.4조와 불합치하는 조치에 대한 기술	조치 적용대상 국가	예정 기간	면제필요조건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	상업적 주재의 권리 및 자연인의 주재의 권리는 리히텐슈타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상호주의에 따른.	모든 국가	무기한	리히텐슈타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충분한 시장접근을 보장
도로운송서비스 승객 및 화물	일반적으로 양자 간 협정에 근거하여 리히텐슈타인 이외의 국가에서 등록된 차량에 의한 물품 및 승객의 리히텐슈타인 영역 내의 운송, 리히텐슈타인 영역에의 입국, 출국 및 경유 운송을 상호시장 접근을 기초로 규율	도로운송에 관한 양자협정 또는 도로운송에 관한 그 밖의 약정이 존재하거나 바람직한 모든 국가 (현재 약 45개국)	도로 운송의 지역적 특성 및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도로운송서비스의 다자간 자유화가 합의될 때까지	도로운송 서비스 제공의 지역적 특성의 고려 그리고 도로기반구조의 완전성 및 환경 보호
모든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자연인의 이동을 목적으로,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간 양자협정에 근거한 조치	스위스	무기한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간 포괄적인 양자 협정의 요소
	리히텐슈타인 법에 따르면 모든 분야의 자연인의 주재에 대한 권리는 리히텐슈타인의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상호주의에 따른.	모든 국가	무기한	리히텐슈타인 서비스 제공자에게 충분한 시장접근의 보장

제3부
노르웨이의 MFN 면제 목록

분야 또는 업종	제3.4조와 불합치하는 조치에 대한 기술	조치 적용대상 국가	예정 기간	면제필요조건
도로운송 승객 및 화물	<p>노르웨이로의 출입 및 관련 제3국 간 수송에 대한 운수권 보유를 위하여 하나 이상의 국가와의 기준 및 장래의 도로운송협정의 규정</p> <p>도로 연안운송도 특정 국가에게 허용 가능</p>	모든 국가	무기한	도로운송 서비스의 지역적 특성
시청각서비스 공중에계의 시청각프로그램의 전송	<p>유럽공동체 텔레비전 방송 지침(No. 89/552)과 같은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그 와 합치되게 채택된 조치 및 특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시청각 프로그램에 내국민 대우를 확대하기 위하여 유럽 원산지 프로그램을 정의하는 조치</p>	<p>국경간 텔레비전에 관한 유럽의회협약의 당사국 또는 협정이 체결될 수 있는 유럽경제지역 협정의 그 밖의 유럽국가</p>	무기한	특정한 언어정책 목적의 달성 및 유럽 방송분야 내에서 문화정책성의 증진
시청각 서비스 영화 및 비디오테이프 제작·배급	<p>영화 공동제작에 대한 정부간 기본 협정을 통하여 시청각물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 부여</p> <p>영화 공동제작에 있어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정부간 협정에 의한 공동제작에는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음.</p>	모든 국가	무기한	그러한 협정의 목적은 관련국가 간 문화적 유대를 증진

분야 또는 업종	제3.4조와 불합치하는 조치에 대한 기술	조치 적용대상 국가	예정 기간	면제필요조건
시청각 서비스: 북유럽 국가에서 영화영 사물과 텔레비전 프로그 램의 제작 및 배급	북유럽 국가에서 생산된 시청각물의 제작과 배급을 증진하기 위하여, 북유럽 영화 및 텔레비전 기금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과 부합되게 혜택의 이행을 위하여 채택된 조치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및 덴마크	무기한	관련국가의 지역적 정체성의 보존 및 증진
시청각 서비스 영화영사작업과 텔레비 전 프로그램의 제작 및 배급	특정 유럽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시청각 프로그램 및 그 프로그램의 공급자에 대한 MEDIA 및 EURIMAGES와 같은 지원프로그램에 합치되게 혜택의 이행을 위하여 채택된 조치	유럽국가들	무기한	관련국가의 지역적 정체성의 보존 및 증진
모든 분야	다음과 같은 북유럽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치 - 투자프로젝트 및 수출에 대한 보증 및 대출 (북유럽투자은행) - 연구개발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북유럽산업기금)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및 노르웨이	무기한	북유럽 협력의 유지 및 발전

분야 또는 업종	제3.4조와 불합치하는 조치에 대한 기술	조치 적용대상 국가	예정 기간	면제필요조건
컴퓨터 예약시스템 및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프로젝트를 위한 타당성 연구의 대한 자금 조성 (프로젝트 수출을 위한 북유럽기금) - 환경기술을 사용하는 기업*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북유럽환경금융사) 	<p>* 하나 이상의 북유럽 기업과 협력하는 유럽회사에 적용</p> <p>컴퓨터 예약시스템 판매자 또는 모항공사 및 참여 항공사의 의무는 그 모회사 또는 판매자의 원산지 국가에서 동등한 대우가 부여되지 않을 경우, 적용되지 않음.</p>	컴퓨터 예약시스템 판매자 또는 모항공사가 소재한 모든 국가	<p>무기한</p> <p>컴퓨터 예약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다자 간에 합의된 규칙의 불충분한 개발로 인한 면제의 필요</p>
국내 해상운송서비스 승객 및 화물	국내해상운송에 대한 접근에 관한 협정의 규정	덴마크, 펁란드, 아이슬란드, 독일, 스웨덴 및 영국	무기한	<p>이 협정들은 유럽경제지역 협정에서 다루어지는 권리 이상이고, 그렇게 적용 가능</p> <p>이 면제는 이 분야에서 부분적이고 점진적인 약속의 제출을 허용</p>

제4부
스위스의 MFN 면제 목록

분야 또는 업종	제3.4조와 불합치하는 조치에 대한 기술	조치 적용대상 국가	예정 기간	면제필요조건
시청각서비스	<p>시청각물 분야에서 공동제작에 대한, 특히 자금조성과 배급과 관련하여, 양자간 또는 복수국 간 협정의 대상이 되는 시청각물에 대하여 내국민 대우를 부여함.</p> <p>MEDIA 및 EURIAMGES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부여하는 조치 그리고 국경 간 텔레비전에 관한 유럽의회 협약과 같은 약정을 이행하고 시청각물 및/또는 특정유럽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시청각서비스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며 상영시간의 할당과 관련된 조치</p>	<p>문화적 협력이 바람직한 모든 국가(현재 유럽의회의 회원국 그리고 캐나다 및 프랑스와는 협정이 존재)</p> <p>유럽국가</p>	무기한	<p>공동의 문화적 목적의 증진</p> <p>장기간 지속된 문화적 유대를 기반으로 한 문화적 목적의 증진</p>
시청각 서비스 : 지상파방송 또는 수신료의 수입을 통하여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기를 원하는 방송사에 한정	이 분야에 외국자본 참여에 대하여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사의 운영에 대한 양하는 상호주의에 근거하여 부여	스위스법상 동일한 근거로 방송 서비스에의 접근이 부여되는 모든 국가	무기한	공동의 문화적 목적의 증진 및 공급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하여 한정된 규모(스위스의 규모를 감안한)의 시장에의 접근을 규율

분야 또는 업종	제3.4조와 불합치하는 조치에 대한 기술	조치 적용대상 국가	예정 기간	면제필요조건
내륙수상운송	맨하임협약(관련 추가 조항 및 의정서 포함) 및 그 밖의 유럽내륙수상운송협정에 근거한 스위스 외의 국가에 등록된 선박의 연안운송을 포함한 라인강에서의 운송서비스 허가	맨하임협약 및 그 밖의 스위스가 회원국인 유럽내륙수상운송관련 협약의 수혜국(현재 유럽공동체 회원국)	무기한	내륙수상에 대한 수송능력 규율
도로운송서비스 (승객 및 화물)	상호시장접근을 기초로 주로 양자간 협정에 의하여 스위스 이외의 국가의 물품 및 승객의 스위스 내에서의 운송, 스위스에의 입국, 출국 및 경유 운송을 통제	도로운송 또는 여타 도로운송관련 양자간 협정이 존재하거나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국가(현재 약 45개국)	도로 운송의 지역적 특성 및 환경적 영향을 고려하여, 도로운송서비스의 다자간 자유화가 합의될 때 가지 면제 필요	도로운송 공급의 지역적 특성 감안과 도로기반구조의 완전성 및 환경 보호
모든 분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유형의 자연인의 이동을 목적으로, 리히텐슈타인 공국 또는 유럽공동체 및/또는 그 회원국과 스위스 간의 양자 협정에 근거한 조치	리히텐슈타인 공국과 유럽공동체	무기한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 간 및 스위스와 유럽공동체 간의 포괄적인 양자 협정의 요소

부속서 IX

제3.9조제3항에 규정된 상호 인정

제 1 조

서비스 공급자의 표준

당사국들은, 각 당사국의 관련 기관이 서비스 공급자, 특히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면허·인증·영업 및 증명을 위하여 각 당사국이 적용하는 상호 수용가능한 표준과 기준을 개발하고 그 분야에서의 국제적 협력과 관련 국제 합의문서 및 표준에 대하여 적절히 고려하여 상호인정을 촉진하도록 권장한다. 당사국들은 진전상황과 경험한 장애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2 조

임시면허

당사국들이 동의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련 기관이 타방 당사국의 전문직 서비스 공급자의 임시면허를 위한 절차를 개발하도록 권장한다.

제 3 조

검 토

제1조에 규정된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동위원회는 그 보고서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검토한다. 공동위원회의 검토에 기초하여,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자국의 관련 기관이 상호인정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권장한다.

부속서 X
제3.16조제4항에 규정된 통신서비스

제 1 조
정 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1. “전기통신서비스”라 함은 전자기적 수단에 의한 신호의 전송 및 수신을 말하며, 방송은 제외한다.
2. “규제당국”이라 함은 이 부속서에 의하여 다루어지는 쟁점들과 관련하여 할당된 규제업무를 위탁받은 기구 또는 기구들을 말한다.
3. “필수전기통신 설비”라 함은 다음과 같은 공중전기통신전송망 또는 서비스의 설비를 말한다.
 - 가. 하나의 또는 제한된 수의 공급자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또는 지배적으로 제공되고, 그리고
 - 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제적 또는 기술적으로 쉽게 대체될 수 없는 설비

제 2 조
규제당국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규제당국이 어떠한 기본전기통신서비스 사업자와도 분리되고, 책임지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규제당국의 결정과 사용하는 절차가 모든 시장 참가자에게 공정하도록 보장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규제당국의 결정에 영향을 받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행정기관 및/또는 법원에서 이를 다룰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3 조 허가절차

1. 전기통신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각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가 그러한 허가를 위한 모든 허가 기준과 조건. 그리고
나 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에 이르는데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

2.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허가가 요구되는 경우, 신청자가 제1항가호의 조건들을 충족하면, 당사국은 신청자에게 허가를 합리적 기간 내에 부여한다.

3. 당사국이 허가신청을 거부한 경우, 당사국은, 요청이 있을 때, 그러한 거부의 사유를 신청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 4 조 희소자원

각 당사국은 주파수·번호 및 관로구축권을 포함한 희소자원의 할당 및 이용에 관한 절차를 객관적이고, 시의적절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시행한다. 각 당사국은 할당된 주파수 대역의 현재 상황을 공개한다.

제 5 조 경쟁보장 장치

1. 지배적 사업자는 다음의 결과로 기본전기통신서비스의 관련 시장에서 참가조건(요금 및 공급 관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업자이다.

- 가. 필수 설비의 통제. 또는
 - 나.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 이용
2. 각 당사국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지배적 사업자인 사업자가 반경쟁적 관행에 관여되거나 이를 계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유지한다.
3. 제2항에 규정된 반경쟁적 행위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반경쟁적 교차보조 행위
 - 나. 경쟁자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이용으로 반경쟁적 결과의 초래. 그리고
 - 다. 다른 서비스사업자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필수설비에 관한 기술적 정보와 상업적으로 관련 있는 정보의 시의적절한 이용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 6 조 상호접속

- 1. 상호접속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GATS에 의하여 규율된다.
- 2. 각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가 망 내에 기술적으로 가능한 어떠한 지점에서도 상호접속을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상호접속은,
 - 가. 비차별적인 조건(기술적 표준 및 세부사항 포함) 및 그 자신의 동종 서비스 또는 비계열 서비스 사업자의 동종 서비스 또는 자회사 또는 계열사의 동종 서비스에 대하여 제공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요금과 품질로 제공되어야 한다.
 - 나. 시의적절하게, 투명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 가능성을 고려하고, 충분히 망이 세분화되어 있어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구하지 아니하는 망 구성요소 또는 설비를 위하여 지불할 필요가 없는 조건(기술표준 및 세부사항 포함)과 원가지향적인 요금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그리고

다. 요청이 있을 때, 대다수 이용자에게 제공된 망 종단점에 추가되는 지점들에서, 필요한 추가적인 설비 구축을 위한 비용을 반영하는 부과를 조건으로 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절차를 공개한다.

4. 각 당사국은 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상호접속 협정 및/또는 상호접속 제공 지침을 공개하도록 보장한다.

5. 사업자들이 규정된 시간 내에 지배적 사업자와의 상호접속 협정의 협상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그 사업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상호접속을 위한 적절한 조건 및 요금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국의 관련 규제당국으로부터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관련 규제당국은 해당 시장 및 부문을 규율하는 일반 원칙에 따라, 그리고 이 부속서, 특히 제2조 및 제6조에 명시된 원칙에 따라 상호접속 조건을 결정한다. 이러한 지원은 특별한 조정절차를 포함한다.

제 7 조 보편적 서비스

각 당사국은 자국이 유지하기를 희망하는 보편적 서비스 의무의 종류를 규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의무는, 그것이 당사국에 의하여 투명하고, 비차별적이며, 경쟁 중립적인 방식으로 시행되며 당사국이 규정한 종류의 보편적 서비스에 대하여 필요한 이상으로 부담이 되지 아니한다면, 그 자체로서 반경쟁적인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부속서 XI
제3.16조제4항에 규정된 방송프로그램 공동제작

제 1 조
범 위

1. 이 부속서의 목적상, “공동제작물”이라는 용어는 뉴미디어 서비스를 포함한 방송용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및 다큐멘터리 제작을 포함한, 기획물을 말한다.
2. 이 부속서에 따라 행하여진 공동제작물은 다음 당국(이하 “권한있는 당국”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 방송위원회

아이슬란드 : 교육부

리히텐슈타인 : 문화부

노르웨이 : 노르웨이 영화재단(독립제작사의 공동제작에 대하여) 및 노르웨이 미디어위원회(TV 방송사와의 공동제작에 대하여). 그리고

스위스 : 연방 문화청

제 2 조
내국민대우

이 부속서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물은, 관련 당사국에서 시행 중인 국내법을 조건으로, 그 공동제작에 관여한 각 당사국의 TV 방송과 관련하여 국내 생산으로 간주된다. 공동제작 재정지원에 대하여는, 각 당사국은 자국의 원칙과 관행을 유지한다.

제 3 조
시장접근

관련된 다른 당사국들에서의 당사국 방송제작물의 수입·배급 및 전시에 대하여는, 각 관련 당사국에서 시행 중인 법률과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 외에 어떠한 제한도 부과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4 조 일시 입국

시행 중인 법률과 규정을 조건으로, 당사국들은 공동제작을 목적으로 공동제작자가 고용한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인력과 출연자에 대하여 각 영역으로의 일시 입국을 용이하게 한다. 당사국들은 마찬가지로 공동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의 일시 반입 및 재반출을 허용한다.

제 5 조 기여 및 소유권

1. 각 공동제작자의 기여비율은 각 공동제작에 대한 예산의 20% 이상이어야 한다.
2. 공동제작자는 각각의 투자에 비례하여 실질적인 기술적 및 창의적인 기여를 하여야 한다.
3. 제작물 및 재제작물의 복사본의 소유권 및 이용과 원본 제작물에 대한 접근은 공동제작자들에 의하여 합의되어야 한다.

제 6 조 언어

1. 각 공동제작물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관련 당사국의 국어로 제작되어야 한다. 하나 또는 여러 당사국의 언어로 제작하는 것은 허용된다. 대본상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언어로 된 대사가 공동제작에 포함될 수 있다.

2. 각 공동제작물에 대한 당사국 국어로의 더빙 또는 자막작업은 그 당사국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이와 다르게 하는 경우, 관련 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조 수 출

쿼타규제가 있는 국가로 공동제작물이 수출되는 경우,

- 가. 공동제작물은, 원칙적으로, 주 공동제작자의 당사국 쿼타에 포함되거나,
- 나. 공동제작물을 수출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당사국의 쿼타에 포함될 수 있다.

제 8 조 절차규정

공동제작에 대한 절차규정은 첫 번째 공동위원회에서 제정될 수 있다.

부속서 XII
제6.2조에 규정된 정부조달에 관한 “접촉선”

1. 정부조달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위한 “접촉선”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경우:

재정경제부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경우:

아이슬란드: 재무부

리히텐슈타인: 외교부

노르웨이: 현대화부

스위스: 경제부

2. 당사국들은 “접촉선”의 조정을 정기적으로 교환한다.

부속서 XIII

제7.1조제1항에 규정된 지적재산권

제 1 조

국제협약

1. 당사국들은 자국이 당사국인 국제협정, 특히 다음의 다자 협정에서 규정된 자국의 의무를 재확인한다.

- 가. 「1994년 4월 15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TRIPS)
- 나. 「1883년 3월 20일 산업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1967년도 스톡홀름 의정서). 그리고
- 다. 「1886년 9월 9일 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1971년도 파리 의정서)

2. 아래에 기재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협정의 당사국이 아닌 당사국들은 늦어도 2008년도까지 다음의 다자 협정을 비준 또는 이에 가입하거나, 또는 이의 실체적 기준을 적용한다.

- 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제네바 1996년도)
- 나.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제네바 1996년도). 그리고
- 다. 「1961년 10월 26일 실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로마협약)

제 2 조

특 허

당사국들은 자국 국내법에서 최소한 다음을 보장한다.

- 가. 기술의 전 분야에서의 발명을 위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특허 보호. 다만, 발명은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및 스위스에 대하여, 이는 TRIPS 협정 제27조제1항의 수준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호를 말한다. TRIPS 협정 제27조제2항에 규정된 것에 추가하여, 당사국들은 다음을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1) 인간의 치료를 위한 진단·치료 및 외과적 방법 또는 동물의 신체에 행하여진 그러한 방법. 이 규정은 그러한 방법 중 어느 것의 사용을 위한 제품, 특별히 물질 또는 구성물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 (2) 식물 또는 동물 변종, 또는 식물 또는 동물의 생산을 위한 본질적으로 생물학적인 제법. 이 규정은 미생물학적 제법 또는 이에 의한 제품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식물 변종은 특허 또는 효과적인 독자적 제도 또는 이들의 조합에 의하여 보호된다.

노르웨이에 대하여, 이는 국내법으로 시행되는 1992년 5월 2일의 유럽경제지역에 관한 협정의 수준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호를 말한다.

나. 판매 허가 절차의 결과로서 초래되는 효과적인 특허기간의 단축에 대하여 최장 5년까지의 기간동안 의약품 및 식물 보호제¹⁾의 보상적 보호기간. 그리고

다. TRIPS 협정의 조건과 TRIPS 협정 및 공중보건에 관한 선언(2001년 11월 14일 도하 각료회의에서 채택)에 합치하는 강제실시권의 부여

제 3 조 미공개 정보

당사국들은 TRIPS 협정 제39조에 따라 미공개 정보를 보호한다. 원개발 제품을 위하여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당사국들은 의약품 및 농화학품의 판매 허가를 위한 신청자가 새로운 화학물질을 이용하는 의약품 및 농화학품의 판매 허가를 위하여 권한있는 당국에 최초 신청자에 의하여

1)‘식물보호제’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한다.

- 그러한 물질이나 재재가 아래에 달리 정의되지 않은 한, 모든 해로운 생물체에 대하여 식물 및 식물 제품을 보호하거나 또는 그러한 생물체의 활동을 방지하는 제품
- 영양제(예 : 식물 성장 조절제)로서가 아니라, 식물의 생명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
- 바람직하지 못한 식물을 멸하는 제품, 또는
- 식물의 일부분을 멸하거나 식물의 바람직하지 못한 성장을 제한 또는 방지하는 제품

제출된,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소요되는 미공개 시험 또는 그 밖의 미공개 자료에, 허가일로부터 적절한 연수²⁾ 동안 원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 대신에, 당사국이 최초 신청자가 충분히 보상받는³⁾ 경우, 신청자가 그러한 자료에 원용하는 것을 자국 법에서 허용할 수 있다.

제 4 조 산업디자인

당사국들은 최소 15년의 보호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산업디자인의 충분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자국 국내법에서 보장한다. 당사국은 상품 수리의 목적상 사용되는 부속품의 디자인에 대하여 더 짧은 보호기간을 규정할 수 있다.

제 5 조 지리적 표시

1. 당사국들은 모든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 명칭을 포함하여,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기 위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자국의 국내법에서 규정한다.

2. 서비스에 대한 그러한 표시의 사용에 대하여, 당사국들은 서비스의 지리적 원산지와 관련하여 대중을 오도하거나 달리 불공정한 경쟁 행위⁴⁾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표시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충분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자국의 국내법에 규정한다.

3. 이 협정의 발효일로부터 3년 후,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및 스위스는 지리적 표시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의 채택에 대하여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다.

제 6 조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유지

2) 연수(年數)는 당사국들의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3) 당사국들은 대한민국이 현재 그러한 보상제도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에 유의한다.

4) 어떠한 사용이 불공정한 경쟁 행위를 구성하는지를 정의하는 것은 당사국들에 달려있다.

지적재산권의 취득이 권리가 부여되거나 등록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당사국들은 부여 또는 등록을 위한 절차가 TRIPS 협정, 특히 그 협정 제62조에 따를 것을 보장한다.

제 7 조

지적재산권의 집행

당사국들은 TRIPS 협정, 특히 그 협정 제41조 내지 제61조에 따라 자국의 국내법에 집행규정을 규정한다.

공동선언

이 협정이 2006년 9월 30일 후에 발효하는 경우, 부속서 IV·V 및 VI의 관세인하 및 철폐의 일정은 다음과 같이 조정된다.

- 가. 최초의 관세인하는 이 협정의 발효시에 발생한다. 그리고
- 나. 부속서 IV·V 및 VI에 규정된 관세철폐를 위한 후속 단계는 1년씩 연기된다.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에 의한 의료기기에 관한 선언

이 협정 제2.8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은 의료기기에 대한 적합성 평가결과의 수용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약정체결 가능성에 대하여 탐구를 계속하려는 그들의 의지를 선언한다.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양해록

제3장 (서비스무역) 및 제4장 (금융서비스)

보조금에 대하여, 제3장 및 제4장의 적용범위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적용범위와 같은 것으로 양해된다.

어떤 상황에서는, 보조금이 서비스무역에 대하여 왜곡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더 나아가 인정되며, 당사국들은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협상에 주목한다.

다른 당사국의 보조금에 의하여 자국이 불리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고 간주하는 당사국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양해된다.

제3.6조 - 내국민대우

당사국의 지방정부 또는 당국에 의하여 부여되는 대우에 대하여, “자국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라는 용어는 그 지방정부 또는 당국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포함하여 그 당사국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3.14조 -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제12조제2항가호는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상에서 약속한 것 외의 분야에서 구체적 약속에 대한 제한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다만, 그러한 제한은 그 분야의 시장에 동일한 접근을 향유하고 있는 국가들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비차별적 기준 하에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들은 이 양해록에
서명하였다.

2005년 12월 15일, 홍콩에서 영어로 1부 작성된 원본이 노르웨이 정부에
기탁된다. 기탁처는 모든 서명국들에게 인증사본을 전달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아이슬란드공화국을 대표하여

리히텐슈타인공국을 대표하여

노르웨이왕국을 대표하여

스위스연방을 대표하여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리히텐슈타인공국·
스위스연방 간의 투자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이 일방이 되고, 아이슬란드공화국·리히텐슈타인공국 및 스위스 연방(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 당사국”이라 한다)이 타방이 되어(이하, 집합적으로 “당사국들”이라 한다),

상호간에 증진된 투자기회가 당사국들의 민간 자본의 흐름과 경제발전을 촉진할 것임을 인식하며,

일방 당사국 투자자에 의한 타방 당사국 영역 내 투자에 대하여 유리한 조건을 창출 및 유지하고, 그러한 투자자와 투자자의 투자에 보호를 제공할 의도를 가지며,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자유무역 협정”이라 한다)과 동시에 행하여진 서명임을 상기하며,

이 협정이 자유무역협정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문서의 일부를 구성함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기업”이라 함은 영리목적 여부 및 민간소유 또는 정부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주식회사·신탁회사·합명회사·개인기업·지사·합작투자기업 또는 그 밖의 연합체를 포함하여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조직된 실체를 말한다.

2. “투자”라 함은 모든 종류의 자산, 특히 다음을 말한다.

가. 기업

나. 동산 및 부동산, 그리고 저당권·유치권 및 질권과 같은 그 밖의 물권적 권리

다. 지분·주식 및 기업에 대한 그 밖의 종류의 지분참여

라. 채권·회사채·대부 및 그 밖의 형태의 차입

마. 금전적 청구 또는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업과 관련된 이행청구

바. 지적재산권·기술적 노하우 및 영업권. 또는

사. 천연자원의 탐사·개발·추출 또는 채굴을 위한 양허권을 포함하여, 양허·면허·인가 및 허가와 같이 법률 또는 계약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

3.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라 함은 당사국 투자자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투자를 말한다.

4. “당사국의 투자자”라 함은,

가. 그 당사국의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그 당사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연인. 또는

나. 그 당사국의 적용가능한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조직되고, 그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행위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지점을 제외한 다른 실체로서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투자를 하거나 이미 투자한 자를 말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1. 이 협정은 당사국의 투자자에, 그리고 이 협정의 발효일 이전 또는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계없이,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적용된다. 이 협정은 발효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서 비롯된 청구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제4조는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분야가 자유무역협정의 제3장 또는 제4장에 의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3. 이 협정의 규정은 투자와 관련된 다른 국제협정상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은 유럽자유무역연합 개별 당사국들 간의 투자관계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을 일방으로 하고 유럽자유무역연합 당사국을 타방으로 하는 투자관계에 적용된다.

제 3 조 일반적 대우 및 보호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국 영역에서 투자를 하는 다른 당사국들의 투자자에게 안정적이고 공평하며 호의적이고 투명한 조건을 창출하고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완전한 보호 및 안전을 다른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한다. 어떤 당사국도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에 의하여 투자의 운영·경영·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을 해하지 아니한다.

3. 더 나아가,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 투자자의 특정한 투자에 대하여 지게 된 서면의무로서, 그 투자자가 투자를 설립·인수 또는 확장할 때 선의로 의지하였을 의무를 준수한다.

제 4 조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1. 각 당사국은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영업·운영·청산·판매·송금 또는 그 밖의 처분에 대하여, 자국 투자자 및 자국 투자자의 투자

(내국민대우) 또는 제3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최혜국대우)에 부여하는 대우 중, 보다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에 부여한다.

2. 당사국이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또는 실질적인 투자자유화를 규정하는 유사한 협정에 의하여 제3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 다른 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그러한 이익을 부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그러나 다른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들에게 그러한 협정에서 부여되는 혜택에 관하여 협상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부여한다.

3.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는 직접세의 공정하고 효과적인 부과 및 징수에 필요한 편차를 조건으로 조세조치에 적용¹⁾된다. 그러나 당사국이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하여 제3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특별한 이익을 부여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의 투자자 및 그들의 투자에 대하여 그러한 이익을 부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4. 제1항에 규정된 내국민대우의 기준은 당사국의 사회정책 또는 경제개발정책에 기초한 보조금에는, 그러한 보조금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국내기업 또는 기업가를 유리하게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른 당사국이 그러한 보조금이, 특정한 사례에서, 자국 투자자의 투자기회에 심각한 왜곡효과를 갖는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사안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는 호의적인 고려가 부여된다.

5. 제1항에 규정된 내국민대우의 기준이라 함은, 지방정부에 대하여, 그 지방정부가 자신이 일부를 구성하는 당사국의 투자자 및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1)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4조의 각주 6이 적용된다.

제 5 조

송 금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에서 다른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한 모든 지불이 자체 없이 자국 영역 안으로 그리고 밖으로 자유롭게 송금되도록 보장한다. 이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 가. 초기 자본 및 투자를 유지하거나 증가시키기 위한 추가금액
- 나. 이윤·이자·배당금·자본이득·사용료·수수료 및 현물수익
- 다. 융자계약을 포함하여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 라. 투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각 또는 청산에 따른 대금
- 마. 투자와 관련하여 외국으로부터 고용된 인력의 급료 및 다른 보수
- 바.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그리고
- 사. 제16조에 따라 발생하는 지불

2. 각 당사국은 더 나아가 그러한 송금이 자유태환가능통화, 다시 말해서 국제외환시장에서 널리 거래되고, 국제 상거래에서 널리 사용되어지는 통화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한다. 송금은 송금 당일 지배적인 시장 환율로 이루어 질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의 관련된 조치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의 적용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 가. 파산, 지불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보호
- 나. 다음과 관련된 법 및 규정 또는 법 및 규정의 준수 보장
 - (1) 유가증권·선물 및 파생상품의 발행·유통 및 거래. 또는
 - (2) 송금에 대한 보고 또는 기록. 또는
- 다. 형사 범죄와 행정 및 소송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

제 6 조

임시 긴급제한조치

1. 예외적인 상황에서, 당사국들 간 지불 및 자본이동이 어느 당사국의

통화정책 또는 환율정책의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자본이동에 대하여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엄격히 필요한 긴급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조치는 국제 통화기금 협정과 합치하여야 한다. 긴급제한조치의 적용은 이의 공식적인 재도입을 통하여 연장될 수 있다.

2. 긴급제한조치를 채택하는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들에게 즉시 통보하고, 이의 철회를 위한 일정을, 가능한 한 빨리, 제시하여야 한다.

제 7 조 통화 및 환율 정책

제5조 상의 당사국들의 의무를 넘어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통화 및 관련 신용정책 또는 환율정책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관이 취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비차별적 조치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8 조 핵심인력

1. 각 당사국은, 자연인의 입국·체류 및 근로와 관련된 자국의 법 및 규정을 조건으로, 다른 당사국의 투자자 그리고 그러한 투자자 또는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에 의하여 고용된 핵심인력이, 자문 또는 핵심 기술 서비스의 제공을 포함하여, 관련 투자의 경영·유지·이용·향유·확장 또는 처분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자국의 영역에 일시적인 입국 및 체류를 허가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 및 규정을 조건으로, 다른 당사국의 투자자와 그들의 투자가, 국적 및 시민권에 관계없이, 투자자 또는 투자가 선택하는 핵심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그러한 핵심인력은 그 당사국의 영역에 입국·체류 및 근로를 허가받았고 당해 고용이 그러한 핵심인력에게 부여된 허가의 조건 및 시간제한에 합치하여야 한다.

3. 각 당사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일시적 입국·체류 및 근로허가를 부여받은 자연인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자국의 관련 법 및 규정을 조건으로 일시적 입국 및 체류를 허가하고, 필요한 확인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그 자연인의 체류기간을 인정받는다.

제 9 조 보건·안전 및 환경조치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보건·안전 또는 환경상의 고려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와 같이 공공의 이익에 속하는 이 협정과 합치되는 어떠한 조치를 채택·유지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2. 당사국들은 국내 보건·안전 또는 환경 조치를 완화함으로써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당사국 또는 비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의 설립·인수·확대 또는 유지를 장려하기 위하여 그러한 조치를 철회 또는 완화하거나, 또는 철회 또는 완화할 것을 제안하여서는 아니된다.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이 그러한 장려를 제안하였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다른 당사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고, 당사국들은 그러한 장려를 회피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 10 조 건전성조치

자유무역 협정 제4.8조 제2항이 이 협정에 준용된다.

제 11 조 투명성

자유무역 협정 제10.1조가 이 협정에 준용된다.

제 12 조 유 보

1. 제4조에 규정된 내국민대우는 다음의 유보가 제4조에 불합치하는 한도에서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이 협정의 부속서에 당사국에 의하여 열거된 유보
 - 나. 그 개정이 유보의 제4조와의 합치성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가호에 의하여 포함된 유보의 개정. 그리고
 - 다. 이 협정상 그 당사국의 약속의 전반적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당사국에 의하여 채택되고 당사국의 부속서에 통합되는 새로운 유보
2. 제19조에 규정된 검토의 일부로서, 당사국들은 유보를 줄이거나 삭제하기 위하여 부속서에 규정된 유보의 현황을 검토한다.
3.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들에게 서면통지에 의하여 자국의 부속서에 규정된 유보를 전부 또는 일부분을 언제라도 다른 당사국의 요청에 의하거나 일방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4.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들에게 서면통지에 의하여 제1항다호에 따라 자국의 부속서에 새로운 유보를 언제라도 통합할 수 있다. 그러한 서면통지를 받은 때에는, 다른 당사국들은 그 유보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새로운 유보를 통합하려는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들과 협의를 개시한다.

제 13 조 수용 및 보상

어느 당사국도, 그 조치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비차별적 기초 하에서, 그리고 적법절차에 따라 취하여지지 아니한다면, 그리고 신속하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보상이 제공되지 아니한다면, 수용 또는 국유화 또는 다른 당사국 투자자의 투자에 반하여 이와 동일한 성격이나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어떠한 조치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취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보상은 수용조치가 취하여진 때 또는 대중에게 알려진 때 중 먼저의 시점 직전에 수용된 투자의 시장가격에 상당하여야 한다. 보상액은 수용일로부터 지불일까지의 통상적인 상업적 이율의 이자를 포함하고, 자유태환가능통화로 정산되며, 자체 없이 지불되고, 자유롭게 송금 가능하여야 한다²⁾.

제 14 조 손실에 대한 보상

당사국의 투자자가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쟁이나 그 밖의 무력충돌·혁명·국가 비상사태·반란·시민폭동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투자에 손실을 입은 경우, 그 당사국이 그러한 손실에 대하여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해당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그 당사국으로부터 부여받는다.

제 15 조 변제자대위

1.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지정된 기관이 다른 당사국의 영역에서 자국 투자자에 의한 투자와 관련하여 비상업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적 보증에 따라 지불을 한 경우, 다른 당사국은 투자자의 권리에 대한 변제자대위의 원칙에 따라 당해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지정된 기관의 권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지정된 기관이 자국 투자자에게 지불하고 그로 인하여 그 투자자의 권리를 인수한 경우, 그 투자자는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지정된 기관의 동의 없이 타방 당사국에 대하여 이러한 권리에

2) 제13조는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에 따라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강제실시권의 발동 또는 지적재산권의 취소·제한 또는 생성에는 그러한 발동·취소·제한 또는 생성이 자유무역협정 제7장에 합치하는 한도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기초한 청구를 할 수 없다.

제 16 조

투자자와 당사국 간의 분쟁

1. 당사국의 투자자가 다른 당사국이 적용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의무에 불합치하여 그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투자에 손실 또는 손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경우, 그 투자자는 그 사안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서면 협의요청일로부터 6월의 기간 내에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안은 해당 당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법원 또는 국제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국제중재에 회부되는 경우, 투자자는 다음 중에서 선택권을 가진다.
 - 가. 1965년 3월 18일에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가와 다른 국가의 국민 간의 투자분쟁 해결에 관한 협약」이 이용가능한 경우, 이 협약에 의하여 규정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 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의 추가절차규칙」에 따른 조정 또는 중재. 또는
 - 다. 분쟁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의 중재규칙에 따라 설치될 특별 중재판정부
3.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 투자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투자와 관련된 분쟁을 제2항에 따라 국제중재에 회부하는 데에 대하여 이로써 사전동의를 부여한다. 다만, 분쟁투자자가 중재청구가 제기되기 전 최소 60일 전에 자신의 의사로 분쟁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³⁾
4. 일단 투자자가 제2항에 규정된 국내법원 또는 국제중재 메커니즘 중 어느 곳에라도 분쟁을 제기하면, 그러한 절차의 선택은 최종적이다. 더 나아가, 투자자가, 제3조제3항에 규정된 대로, 당사국이 그 투자자에 의한 특정

3) 명확히 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투자” 용어는 투자가 더 이상 설립 또는 획득의 과정에 있지 아니한 경우의 상황을 말한다.

투자와 관련하여 지게 된 서면의무와 관련된 청구를 국내 법정에 제기하였을 경우, 그 투자자는 동일한 사안을 국제중재에 더 이상 제기할 수 없다.

5. 당사국은 분쟁투자자가 자신의 권리 및 이익의 보전을 위하여, 제2항에 규정된 분쟁해결의 장에서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분쟁당사국의 법원 또는 행정법원에서 손해배상과 분쟁사안의 실질 문제의 해결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잠정보호 조치를 구하는 것을 금지하여야하는 아니된다.

6. 투자자가 분쟁을 야기한 사건을 처음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 투자자는 제1항에 따른 해결을 위하여 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

7. 분쟁당사국은 그 절차 진행 중 어느 때에도 자국의 면제 또는 그 투자자가 발생된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는 배상을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았다는 사실을 방어로서 주장할 수 없다.

8. 어떠한 당사국도 타방 당사국이 중재판정을 준수하고 따르지 아니하지 않는 한, 국제중재에 회부된 분쟁을 외교적 채널을 통하여 추구하여야하는 아니된다.

9.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에게 최종적이고 기속력을 가지며, 당해 당사국의 법에 따라 지체 없이 집행되어야 한다.

제 17 조 금융서비스에서 투자자와 당사국 간의 분쟁

1. 당사국의 투자자가 제16조에 따라 분쟁당사국에게 국제중재에 청구를 제기하겠다는 그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분쟁당사국이 제6조·제7조 또는 제10조를 발동하는 경우, 분쟁당사국은 자유무역협정 제4.20조에 따라 설치되는 금융서비스 소위원회에 결정을 내려 주도록 사안을 서면으로 회부 할 수 있다. 이 사안의 목적상, 그 소위원회는 분쟁당사국과 투자자의 당사

국의 대표만으로 구성된다.

2. 제1항에 따른 회부에서, 금융서비스 소위원회는 제6조·제7조 또는 제10조가 투자자의 청구에 대한 유효한 방어가 될 것인지 그리고 어느 한도 까지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소위원회는 그 결정을 투자자에게 송부한다. 소위원회가 언급된 조항 중 하나가 유효한 방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투자자는 청구를 국제중재에 회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위원회가 언급된 조항 중 하나가 유효한 방어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거나 회부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결정을 내리지 아니한 경우, 투자자는 그 청구를 국제중재에 회부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3. 투자자가 청구를 국제중재에 회부하는 경우, 패널은 자유무역협정 제4.21조제4항을 준용하여 구성된다.

4. 제1항 내지 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제16조가 적용된다.

제 18 조 당사국 간의 분쟁

자유무역협정 제9장이 이 협정의 당사국 간에 준용된다.

제 19 조 검 토

투자의 점진적 자유화를 위하여, 당사국들은 투자 법률 체제, 투자환경 및 국제투자협정상 자신들의 약속에 합치하는 당사국 영역 간 투자의 흐름을 이 협정 발효일 후 3년 내에, 그리고 그 이후 일정한 기간을 두고 검토한다.

제 20 조 예 외

다음의 조치가 같은 조건이 우세한 국가 간에 자의적이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수단을 구성하거나, 투자자 및 투자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요건을 조건으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그러한 조치를 채택하거나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공중도덕을 보호하거나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나. 인간·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 다. 이 협정의 규정에 불합치하지 아니하는 법률 및 규정에 대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 21 조 위원회

- 1. 이 협정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당사국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설치된다.
- 2. 위원회는,
 - 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검토한다.
 - 나.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해결 하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 다.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밖의 사안을 검토한다.
- 3. 위원회는 컨센서스에 의하여 운영된다.
- 4. 위원회는 부속서를 개정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5항을 조건으로, 위원회는 그러한 결정의 발효일을 정할 수 있다.
- 5. 위원회에서 당사국의 대표가 헌법상 요건의 완료를 조건으로 결정을 수락한 경우, 그 결정은 결정 자체가 이후의 날짜를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마지막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통보한 날에 발효된다.

위원회는 대한민국이 그러한 당사국 중 하나인 경우, 국내 요건을 완료한 당사국에게 결정이 발효하도록 정할 수 있다. 당사국은, 자국의 헌법상 요건을 조건으로, 그러한 결정이 발효하기 전까지 위원회의 결정을 잠정적으로 적용 할 수 있다.

6.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위원회는 자유 무역 협정의 공동위원회와 동시에 회의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위원회의 활동을 통보한다.

7. 위원회의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그리고 유럽자유무역연합 당사국 중 한 국가가 공동의장이 된다. 위원회는 자신의 절차규칙을 제정한다.

제 22 조 부속서

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가 된다.

제 23 조 개 정

1. 제21조제4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이 협정의 개정은, 위원회의 승인 후에, 각 당사국의 헌법상 요건에 따른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위하여 당사국들에게 제출된다.

2. 당사국들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개정은 마지막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기탁 후 세 번째 달의 1일에 발효된다.

3.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뿐만 아니라 개정 원본도 기탁처에 기탁된다.

제 24 조 가입

1. 자유무역협정의 당사국인 국가는, 가입하려는 국가와 기존 당사국들 간에 합의된 조건으로 위원회가 가입을 승인한 후에 이 협정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서는 기탁처에 기탁된다.
2. 가입국에 관하여, 이 협정은 가입서의 기탁 또는 기존 당사국에 의한 가입조건의 승인 중에서, 더 늦은 날로부터,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된다.

제 25 조

발 효

1. 이 협정은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기탁처에 기탁된다.
2. 이 협정은 자유무역협정과 이 협정을 모두 비준한 서명국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날에 발효된다. 다만, 그 국가들이 기탁처에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하여야 하며, 대한민국이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국가들 중 하나이어야 한다.
3. 이 협정 발효 후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하는 유럽자유무역연합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은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날에 발효되거나, 자유무역협정이 이미 대한민국과 해당 유럽자유무역연합 당사국 간에 발효한 경우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으로부터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된다.
4. 자국의 헌법상 요건이 허용하는 경우, 유럽자유무역연합 당사국은 이 협정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 항에 따른 이 협정의 잠정적용은 기탁처에 통보된다.

제 26 조

탈퇴 및 종료

1. 당사국은 기탁처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그 통지가 기탁처에 접수된 날로부터 6월 후에 발효된다.
2. 대한민국이 탈퇴하는 경우, 이 협정은 제1항에 규정된 날에 효력을 상실한다.
3. 어느 당사국이 자유무역협정으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그 탈퇴는 제1항에 따라 이 협정에도 미친다.
4. 자유무역협정이 종료하는 경우, 이 협정은 같은 날에 종료한다.
5. 이 협정에서의 탈퇴 또는 이 협정의 종료일 이전에 이루어진 투자에 관하여, 제1조 내지 18조 및 제20조는 탈퇴 또는 종료일로부터 10년의 기간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제 27 조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정부간의 투자촉진 및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과의 관계

이 협정이 시행 중이거나 유효한 동안에는, 이 협정은 1971년 4월 7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스위스 정부간의 투자촉진 및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을 대체하고 효력을 정지시킨다.

제 28 조

기탁처

스위스 정부가 기탁처의 역할을 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들은 이 협정에 서

명하였다.

2005년 12월 15일, 홍콩에서 영어본으로 1부 작성된 원본이 스위스 정부에 기탁된다. 기탁처는 모든 서명국에게 인증사본을 전달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아이슬란드공화국을 대표하여

리히텐슈타인공국을 대표하여

스위스연방을 대표하여

부속서 I
제12조에 규정된 대한민국의 유보

대한민국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현행법령	<p>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법률 제7281호, 2004. 12. 31)</p> <p>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6조, 제7조, 제8조(대통령령 제18736호, 2005. 3. 8)</p> <p>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산업자원부령 제269호, 2005. 4. 8)</p>
유보내용	<p>외국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산업자원부 시행령에 따라 사전에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는 외국인직접투자 금액 및 외국인투자 비율 등 사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p> <p>대한민국은 국가의 안전·공공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민의 보건위생·환경보전 및 미풍양속에 반하거나 또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되는 외국인투자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p> <p>“외국인직접투자”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이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 국민이 운영하는 기업의 경영에 참여하고,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관계를 구축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 또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매입하는 것 (2)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만기 5년 이상의 대부가 당해 지주회사의 자본투자와 관계에서, 당해 해외 지주회사 또는 회사에 의하여 투자되는 외국 자본 회사로 확장되는 것
유보목적 또는 동기	통계상 목적 및 인센티브 검토 국가안보 및 공공질서 유지

대한민국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현행법령	적용 불가능
유보내용	<p>전기, 가스와 같은 산업에서 기존의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는 지분 또는 자산의 이전이나 처분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은 그러한 지분이나 자산의 소유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p> <p>또한 대한민국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러한 과정에서 설립된 기업이나 투자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p> <p>이 유보의 목적상,</p> <p>(1)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 유지되거나 채택된 것으로, 이전 또는 처분시점에 지분이나 자산의 소유를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여기에 규정된 국적요건을 부여하는 어떠한 조치도 발효 중인 조치로 간주된다. 그리고</p> <p>(2) “공기업”은 소유지분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기업을 의미하며, 이 협정의 발효일 이후에 오로지 기존의 공기업 또는 정부기관의 지분이나 자산의 매각 또는 처분을 위하여 만들어진 어떠한 기업도 포함된다.</p>
유보목적 또는 동기	국가안보 및 공익

대한민국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현행법령	외국인토지법 제4조, 제5조, 제6조(법률 제7297호, 2004. 12. 31)
유보내용	<p>대한민국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유지하거나 채택할 권리를 보유한다.</p> <p>현행조치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국인·외국법인·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는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반시 벌칙이 부과된다. (2) 국방, 문화재보호, 그리고 생태계/자연보호 등의 목적으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토지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전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계약은 효력이 없으며 처벌 가능하다. (3) 상속·경매 또는 계약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4) 대한민국 내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 법인 또는 단체가 국적을 바꾼 채 토지의 소유권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국적 변경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유보목적 또는 동기	제한된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외국인의 국내 토지취득 현황 파악

대한민국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비거주자의 자본거래
현행법령	외국환거래법(법률 제6316호, 2000. 12. 29)
유보내용	<p>비거주자는 다음의 경우 재정경제부 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1)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한도(원화차입의 경우 10억원, 원화증권차입의 경우 50억원)를 초과하여 거주자로부터 원화를 차입하거나 원화표시증권을 차입하는 경우</p> <p>(2) 단기 원화표시증권을 발행하는 경우</p> <p>비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재정적으로 불건전한 국내 기업에 단기외화자금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국내 개인 또는 비영리기관이 다른 거주자의 담보에 기초하여 재무신용을 제공하는 경우, 거주자는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한국은행총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비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바에 의하여 거주자로부터 외화 표시 자금을 차입하거나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받을 경우, 한국은행총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비거주자가 파생상품을 통하여 외국환거래법에서 허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특정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p>
유보목적 또는 동기	국가 안보 및 금융 안정

대한민국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현행법령	적용 불가능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서비스 분야에서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매입과 같은 활동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유보목적 또는 동기	공익, 문화 다양성 및 정체성 보호 및 국가 안전 보장

대한민국

분야	농림축산업 및 관련 제조업
하위분야	
현행법령	<p>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법률 제7281호, 2004. 12. 31)</p> <p>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 18736호, 2005. 3. 8)</p> <p>축산법 제27조(법률 제6821호, 2002.12.26)</p> <p>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3조, 제47조(법률 제7311호, 2004. 12. 31)</p> <p>양곡관리법(법률 제7433호, 2005. 3. 31)</p> <p>산림법 제5조, 제90조(법률 제7167호, 2004. 2. 9)</p> <p>산지관리법 제25조, 제32조(법률 제7335호, 2005. 1. 14)</p>
유보내용	<p>대한민국 국민과 법인만이 대한민국에서 벼·보리 재배업과 육우사육업을 소유하고 운영할 수 있다.</p> <p>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그와 같은 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소유는 관련 법에 정한 한도를 따라야 한다.</p> <p>이에 더하여, 대한민국은 농림축산업 및 그의 관련 제조업(금속·기계류는 제외)에 대하여 식량안보·국민보건위생·환경 및 자원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조치도 유지하거나 채택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p>
유보목적 또는 동기	식량안보·보건위생·환경 및 자원보전 정책

대한민국

분야	항공운송서비스
하위분야	<p>CPC 731, 732 항공운송서비스</p> <p>※ 글라이더토잉, 낙하산 낙(투)하, 항공건설, 벌목 및 건축 목적의 헬리콥터 활용(헬리콥터를 이용한 벌목), 항공 관광 (유람) 등 포함</p> <p>CPC 734 운영자를 포함한 항공기 대여 서비스</p>
현행법령	<p>항공법 제3조, 제6조, 제112조, 제113조, 제114조, 제132조(법률 제7428호, 2005. 3. 31)</p> <p>항공법 시행규칙 제278조, 제278조의2, 제298조, 제299조(건설교통부령 제430호, 2005. 3. 11)</p>
유보내용	<p>항공법 제6조의 세부규정에 규정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운송 또는 국제운송의 정기항공운송서비스 및 부정기 항공운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상기 (1) ~ (3)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5) 외국인이 대표이거나 외국인이 임원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 <p>또한, 항공기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항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는 이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항공기의 등록은 상기 (1) ~ (5)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협용되지 아니한다.</p>
유보목적 또는 동기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서 자유무역협정 제3장 (서비스무역)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분야

대한민국

분야	항공운송서비스
하위분야	<p>항공기 사용사업</p> <p>CPC 734* 운영자를 포함한 항공기 대여 서비스</p> <p>* 항공화재진압, 산림화재관리, 항공광고, 비행훈련, 항공 지도 제작, 항공조사, 항공분사, 항공사진 기타 항공농업, 항공검사 및 감시 등 포함</p>
현행법령	<p>항공법 제3조, 제6조, 제134조(법률 제7428호, 2005. 3. 31)</p> <p>항공법 시행규칙 제298조, 제299조의2(건설교통부령 제430호, 2005. 3. 11)</p>
유보내용	<p>항공기사용사업(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 또는 화물의 운송 외의 업무를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소유 또는 임차한 항공기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항공기의 등록이 허용되지 아니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외국정부 또는 외국의 공공단체 (3)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 (4) 상기 (1) ~ (3)에 해당하는 자가 주식이나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5) 외국인이 대표자이거나 외국인이 임원수의 2분의 1 이상인 법인
유보목적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로서 자유무역협정 제3장(서비스무역)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분야

대한민국

분야	방위 산업
하위분야	
현행법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제6조(법률 제7281호, 2004. 12. 31)
유보내용	<p>대한민국은 방위 산업에서의 투자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유지하거나 채택할 권리를 보유한다.</p> <p>방위산업체(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기업)의 신주 이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에 규정된) 구주를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자는 산업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p>
유보목적 또는 동기	<p>방위산업은 국가안보에 관련된 무기체계를 개발·생산하는 특수한 분야</p> <p>특히 대한민국은 아직도 세계에서 안보 위협이 가장 높은 나라이므로, 국가안보 차원에서 투자를 유보</p>

대한민국

분야	전력 산업
하위분야	원자력을 제외한 발전 전력 송전, 배전 및 판매
현행법령	증권거래법 제203조(법률 제7428호, 2005. 3. 31)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7조의2(대통령령 제18757호, 2005. 3. 28)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제5조(법률 제7281호, 2004. 12. 3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 18736호, 2005. 3. 8)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제5조(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51호, 2004. 5. 11)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발전, 송전, 배전 및 판매를 포함하여 전력 산업의 민영화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외국투자자는 한국전력 주식의 40% 이상을 소유할 수 없고, 최대주주가 될 수 없다. 송전, 배전 및 판매사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만 허가된다. 최대주주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유보목적 또는 동기	전력 산업 민영화 계획과의 일관성 유지 및 전력 산업의 공익성 확보 차원

대한민국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
현행법령	한국산업은행법 제4조(법률 제6679호, 2002. 3. 30) 한국수출입은행법 제4조(법률 제7527호, 2005. 5. 31)
유보내용	외국인은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에 투자할 수 없다.
유보목적 또는 동기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수출입은행은 국가 산업정책의 이행을 위한 금융기관

대한민국

분야	금융서비스
하위분야	신금융서비스 등을 이용한 금융상품 또는 자본거래
현행법령	적용 불가능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신금융서비스 등을 이용한 금융상품 또는 자본거래에 필요한 조치를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유보목적 또는 동기	금융제도의 안정

대한민국

분야	총포·도검·화약류
하위분야	
현행법령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조, 제6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41조, 제42조, 제47조 등(법률 제7428호, 2005. 3. 31)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분야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조치도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 사용, 판매, 저장, 운반, 수입, 수출 및 소지는 국가안보 및 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규제된다.
유보목적 또는 동기	국가안보 보호 및 사회질서 유지

대한민국

분야	수산 관련 산업
하위분야	
현행법령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법률 제5809호, 1999. 2. 5) 수산업법 제5조(법률 제7477호, 2005. 3. 31)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관할수역에서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수산 관련 활동을 통제할 권리를 보유한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수산 관련 산업을 운영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투자할 경우 지방정부 광역시장, 도지사, 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한다.
유보목적 또는 동기	대한민국 수산업의 경쟁력 미약으로 최소한의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산업에 대한 국내적 제한이 필요

대한민국

분야	가스 산업
하위분야	
현행법령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19조(법률 제6836호, 2002. 12. 30) 한국가스공사정관 제11조(주식소유의 제한 등)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가스 산업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현재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도입, 도매, 전국 주배관망의 운영 등에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의 한국가스공사 주식 취득은 법률에 의하여 제한된다.
유보목적 또는 동기	국가적 에너지 안보의 필요성

대한민국

분야	원자력 산업
하위분야	원자력 발전 핵연료의 생산과 공급 방사성 폐기물 처리, 처분
현행법령	전기사업법 제12조(법률 제7508호, 2005. 5. 2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법률 제7281호, 2004. 12. 31)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 18736호, 2005. 3. 8)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 제5조(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4-51호, 2004. 5. 11) 원자력법 제11조, 제21조, 제33조, 제34조, 제43조, 제57조, 제64조, 제76조, 제86조, 제90조의4(법률 제7428호, 2005. 3. 31)
유보내용	대한민국은 원자력 산업과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유지하거나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외국투자자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원자력연료의 제조와 공급, 원자력발전소 운영과 관련된 사업, 방사성 폐기물 관리와 같은 원자력발전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외국인은 원자력발전사업에 투자할 수 없다.
유보목적 또는 동기	국가 안보와 직결된 원자력 산업의 특수성

부속서 Ⅱ
제12조에 규정된 아이슬란드의 유보

아이슬란드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현행법령	민간 유한회사에 관한 법률 제138조/1994, 공공 유한회사에 관한 법률 제2조/1995, 비거주자의 기업 투자에 관한 법률 제34조/1991
유보내용	민간 유한회사 또는 공공 유한 회사의 설립자 과반수는 아이슬란드 또는 기타 유럽경제지역(EEA) 회원국에 거주해야 한다. 상무부 장관은 이러한 제한으로부터의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민간 유한회사 또는 공공 유한회사의 경영자(들)와 적어도 이사회의 절반은 아이슬란드 혹은 기타 EEA 회원국에 거주해야 한다. 상무부 장관은 이러한 제한에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목적 또는 동기	이사회와 경영진 과반수의 법적 근거가 아이슬란드 사법권 내에 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아이슬란드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현행법령	부동산의 소유와 사용권한에 관한 법률 제19조/1966년, 비거주자의 기업 투자에 관한 법률 제34조/1991년
유보내용	소유권과 사용이 투자가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부동산의 투자와 연계되어 있지 않는 한, 아이슬란드의 시민과 아이슬란드의 법인 및 기타 EEA 회원국의 시민과 법인만이 아이슬란드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만약 리스의 지속기간이 3년을 초과할 경우 부동산의 임대차에도 적용된다. 이러한 제한은 적어도 5년 이상 아이슬란드에 거주해온 비 EEA 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제한에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
목적 또는 동기	외국의 가능한 초과수요에 기인한 부동산 가격의 변동이 주택과 별장의 국내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이슬란드

분야	어업
하위분야	고기잡이, 고래잡이
현행법령	아이슬란드 경제구역 내 외국선박의 어획과 어류가공에 관한 법률 제22조/1998, 비거주자의 기업 투자에 관한 법률 제34조/1991, 고래잡이에 대한 법률 제26조/1949
유보내용	아이슬란드의 통제를 받는 아이슬란드 시민과 아이슬란드 법인만이 아이슬란드 경제구역에서 어업을 하도록 허용된다. 동 조항은 포경업에도 적용된다.
목적 또는 동기	어류와 어류제품이 국가 외화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이루는 아이슬란드에 있어서 어업의 상대적인 경제적 중요성과 동시에 아이슬란드의 어류 자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한 아이슬란드의 결정이다. 아이슬란드의 어류 자원의 보존에 관한 통제와 감독은 아이슬란드의 사법권 하에 있어야 한다.

아이슬란드

분야	어업
하위분야	어류가공
현행법령	비거주자의 기업 투자에 관한 법률 제34조/1991
유보내용	아이슬란드의 시민과 아이슬란드의 법인만이 아이슬란드에서 어류가공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할 수 있다. 여기서 어류가공업이란 냉동, 염장, 건조 및 초기에 어류와 어류제품을 보존하기 위한 기타 공정을 의미하며, 해동과 육류가공을 포함한다. 이 유보는 2차 어류가공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목적 또는 동기	어류 가공업에 대한 유보는 어업과 포경업 분야에 있어서 통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어업이 외화 획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아이슬란드에 있어서 어업의 상대적인 중요성과 더불어 어류 비축량으로부터 꾸준한 생산량을 유지하기 위한 아이슬란드의 결정이기도 하다. 아이슬란드의 어류 비축량의 보존에 관한 통제와 감독은 아이슬란드의 사법권 하에 있어야 한다.

아이슬란드

분야	어업
하위분야	어류 경매
현행법령	어류의 경매에 관한 법률 제123조/1989
유보내용	아이슬란드의 시민과 아이슬란드의 법인만이 아이슬란드에서 어류 경매에 종사하는 기업을 소유하고 경영할 수 있다.
목적 또는 동기	어류 경매에 관한 유보는 어업과 포경업 분야에 있어서 통제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다. 어류와 어류제품이 국가 외화소득의 절반 가까이 구성하는 아이슬란드에게 있어서 어업의 상대적인 경제적 중요성과 어류 비축량으로부터 지속적인 산출량을 유지하기 위한 아이슬란드의 결정이다. 아이슬란드의 어류 비축량의 보존에 관한 통제와 감독은 아이슬란드의 사법권 하에 있어야 한다.

아이슬란드

분야	항공업
하위분야	항공 운수
현행법령	비거주자의 기업 투자에 관한 법률 제34조/1991
유보내용	아이슬란드의 시민과 법인, 그리고 기타 EEA 회원국가의 시민과 법인만이 항공운수에 종사하는 기업의 지분을 49% 이상 소유할 수 있다.
목적 또는 동기	소규모 국내 시장에서 광범위한 서비스의 필요가 특정 규제 및 자국 통제를 요구

아이슬란드

분야	에너지
하위분야	에너지 생산과 분배
현행법령	비거주자의 기업투자에 관한 법률 제34조/1991
유보내용	아이슬란드의 시민과 법인, 그리고 기타 EEA 회원국가의 시민과 법인만이 개인의 가정용 사용이 아닌 목적으로 수력발전과 지열 에너지를 이용할 권리를 소유할 수 있다. 이는 전력 생산과 분배에 종사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에도 적용된다.
목적 또는 동기	어류 비축량을 제외하고, 수력과 지열 에너지는 아이슬란드의 가장 중요한 천연 자원이다. 그 사용은 허가와 공동 생산협정을 통해 집중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전력 생산과 분배는 상당 부분 공공 독점기업으로서 운영되는 공익사업이다.

부속서 III
제12조에 규정된 리히텐슈타인의 유보

리히텐슈타인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현행법령	1969년 12월 10일의 Gewerbegegesetz(상법에 관한 법), LR(리히텐슈타인 법의 체계적 집합) 930.1, 제2항에서 언급된 관련 법, 그 법의 단락 1, 그리고 관련된 국회 또는 정부 결정
유보내용	법인에 의한 상업적 주재의 설립(지점을 포함)은 국가경제의 이유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되지 않아야 하는 요구조건을 필요로 한다. (국내와 외국 자본의 균형 잡힌 비율, 거주자의 인구수 대비 외국인의 균형 잡힌 비율, 거주자 인구수에 비해 경제 내 적당한 고용비율, 균형 있는 지리적 상황, 분야 간과 분야 내에서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목적 또는 동기	국가의 특정한 지리적 상황, 제한된 자원과 작은 인력시장을 고려한,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리히텐슈타인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현행법령	1969년 12월 10일의 Gewerbegegesetz(상법에 관한 법), LR 930-1 1926년 1월 20일의 Personen und Gesellschaftsrecht(회사법), LR 216.0
유보내용	<p>개인에 의한 상업적 주재의 설립은 특정 기간 동안의 이전 거주요건과 리히텐슈타인 내 영구적 주소지 요건을 필요로 한다.</p> <p>법인(지점 포함)에 의한 상업적 주재의 설립은 다음의 요건을 필요로 한다. 적어도 한명의 경영진이 리히텐슈타인에서 특정 기간 동안 거주했어야 하며 영구거주를 하여야 한다. (법인을 경영하고 대표하도록 승인된) 관리자들의 과반수는 리히텐슈타인에 거주해야 하며 리히텐슈타인 시민이거나 혹은 특정기간 동안의 리히텐슈타인 내에 거주했어야 한다. 무한 그리고 유한 파트너쉽은 유한책임을 가진 기업(법인)과 동일한 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또한 회원의 과반수는 리히텐슈타인 시민이거나 특정기간 동안 리히텐슈타인 내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p> <p>리히텐슈타인 회사법은 합자회사가 정관에서 등록된 지분의 양도를 사전에 제한하거나 저지하는 것을 금하지 않는다.</p>
목적 또는 동기	사법 소송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리히텐슈타인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현행법령	1992년 5월 2일 유럽경제지역(EEA) 협정
유보내용	<p>EEA 회원국의 법에 따라 설립되고 등록 사무실이 있으며, 중앙 행정 또는 주된 사업장이 EEA 회원국 내에 있는 경우 제3국의 지사에게 부여되는 대우는 제3국 회사에 의하여 EEA 회원국내에 설립된 지점이나 대리점까지 확대되지 않는다.</p> <p>제3국의 지사가 EEA 회원국의 영역 내에 등록 사무실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들이 EEA 회원국 중 한 나라의 경제와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연계를 가진다고 보이지 않는 한, 덜 우호적인 대우가 부여될 수 있다.</p>
목적 또는 동기	EEA 협정으로부터 얻는 혜택이 제3국에게 자동적으로 용인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리히텐슈타인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현행법령	1992년 12월 9일 Grundverkehrsgesetz(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법), LR 214.11
유보내용	모든 부동산의 취득은 승인을 요한다. 그러한 승인은 거주 또는 사업의 목적을 위한 실제적이고 증명된 요건이 주어졌고 특정기간 동안의 거주가 완료된 경우에만 주어진다. 비거주자는 부동산의 취득에서 제외된다.
목적 또는 동기	이용 가능한 토지의 극심한 부족. 거주 인구에 대한 부동산 접근 보호와 균형 있는 지리적 상황 유지.

리히텐슈타인

분야	전력과 에너지 분야
하위분야	-
현행법령	적용 불가능
유보내용	리히텐슈타인은 전력과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유지하거나 채택할 권리(?)를 유보한다.
목적 또는 동기	에너지 정책 고려와 국가 안보

리히텐슈타인

분야	항공 운수
하위분야	항공 등록
현행법령	2002년 5월 15일 항공법과 2003년 1월 27일의 민간항공에 관한 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 간의 협정, LR 0.748.091.11
유보내용	항공기는 전적으로 리히텐슈타인 시민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리히텐슈타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의하여 소유되고 리히텐슈타인 또는 스위스에서 출발하는 여행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거나, 또는 리히텐슈타인에 기반을 두고 등록된 회사에 의해 소유되지 않는 한, 리히텐슈타인에서 등록되지 못한다.
목적 또는 동기	항공기와 그 소유주 간의 실효적인 연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리히텐슈타인

분야	항공 운수
하위분야	리히텐슈타인 항공운수업체의 소유권
현행법령	2002년 5월 15일 항공법, LR 748.0과 2003년 1월 27일 민간 항공에 관한 리히텐슈타인과 스위스 간의 협정
유보내용	사람과 물품의 상업적 수송에 대한 외국 회사의 접근은 국제 협정에 의해 지배된다. 그러한 조약의 부재 시, 외국기업은 특정 수송 항로를 운항하기 위한 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한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외국 기업은 특히, 리히텐슈타인 내 법적 소재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리히텐슈타인 항공 수송 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보통 회사 지분의 40%를 초과하지 못한다.
목적 또는 동기	항공 운수 정책

리히텐슈타인

분야	항공 운수
하위분야	보조 서비스
현행법령	2002년 5월 15일 항공법(리히텐슈타인 법의 체계적 집합) 748.0
유보내용	리히텐슈타인은 EU 지침 96/67을 적용한다. 공항 당국은 영구적인 제한 또는 일시적 조치에 의해 특정 서비스를 위한 공급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지침 제20조는 호혜 조항을 포함한다.
목적 또는 동기	공항 기반시설을 위한 제한된 공간 (주: 리히텐슈타인은 현재 공항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다.)

부속서 IV
제12조에 규정된 스위스의 유보

스위스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현행법령	스위스 민법전에 부속되는 1911년 3월 20일 연방법(의무법) (연방법과 규정의 체계적 집합 [RS], 220조)
유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위스내 절대 다수의 회사는 주식회사로 구성되는데, 이는 미리 결정된 자본과 투자한 명목 자본에만 한정되는 주주의 책임으로 특징지어진다. 스위스 주식회사의 이사회 멤버 중 과반수는 스위스에 거주하는 스위스 시민이어야 한다. 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 유한책임 회사는 할당된 유한 자본으로 특징지어진다. 유한책임 회사에서 적어도 한명의 경영진 간부는 스위스에 거주해야만 한다. - 외국 기업은 또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지점을 스위스에 설립할 수 있다. 적어도 지점 사무소의 대표 중 한명은 스위스에 거주하여야 한다.
목적 또는 동기	사법적 소송 절차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스위스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현행법령	해외에 있는 사람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1983년 12월 16일 연방법(RS 211.412.41)
유보내용	스위스에 거주하지 않는 해외 동포와 해외에 설립되거나 해외로부터 통제받는 회사는 주거용 부동산 시장(상업적 주재와 연계된 거주지 제외)과 농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휴가용 별장의 취득에 대해서는 주의 허가가 요구된다.
목적 또는 동기	이용 가능한 토지의 부족

스위스

분야	에너지
하위분야	석유 시굴과 개발
현행법령	석유 시굴과 개발에 관한 1955년 9월 24일 협약(RS 931.1)
유보내용	주간 협정(10개 주간)은 석유 면허가 적어도 75% 이상 스위스 소유의 회사에게만 주어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 밖의 주들은 유사한 제한을 적용한다.
목적 또는 동기	에너지 정책 고려와 국가 안보

스위스

분야	에너지
하위분야	원자력 에너지
현행법령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로운 사용에 관한 1959년 12월 23일 연방법(RS 732.0); 원자력 에너지법에 관한 1978년 10월 8일 연방령(RS 732.01)
유보내용	원자력 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승인은, 스위스에 주소지를 가진 스위스 시민과 스위스 법에 종속되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스위스 소유법인에게만 부여된다.
목적 또는 동기	에너지 정책 고려와 국가 안보

스위스

분야	에너지
하위분야	수력 발전
현행법령	수력 발전 전력의 사용에 관한 1916년 12월 22일 연방법(RS 721.80)
유보내용	면허를 줄 때, 스위스 연방 州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특히 면허권자는 관련 州에 그 등록 사무실을 가지고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목적 또는 동기	에너지 정책 고려와 국가 안보

스위스

분야	에너지
하위분야	수송관
현행법령	액체와 가스 연료를 위한 수송관에 관한 1963년 10월 4일 연방법(RS 746.1)
유보내용	외국인 소유 혹은 외국인에 의해 지배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스위스 내에 하나의 등록 사무실과 경영진의 실재가 요구된다.
목적 또는 동기	에너지 정책 고려와 국가 안보

스위스

분야	항공 수송
하위분야	항공기 등록
현행법령	1948년 12월 21일 연방 항공법(RS 748.0)
유보내용	항공기는 전적으로 스위스 시민에 의해 소유되거나 스위스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의해 소유되고 스위스에서 출발하는 여행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거나, 또는 스위스에 기반을 두고 등록된 회사에 의해 소유되지 않는 한, 스위스에서 등록되지 못한다.
목적 또는 동기	항공기와 그 소유주 간의 실효적인 연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위스

분야	항공 운수
하위분야	스위스 항공 수송 회사의 소유권
현행법령	1948년 12월 21일 연방 항공법(RS 748.0)
유보내용	사람과 재화의 상업적 수송에 대한 외국 기업의 접근은 국제 협정에 의해 지배된다. 그러한 협정의 부재 시, 외국 기업은 특정 상업적 수송 항로를 운항하도록 면허를 받을 수 있다. 그러한 면허를 받기 위하여, 외국 기업은 특히, 스위스에 법적 소재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스위스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은 보통 회사 지분의 40%를 초과하지 못한다.
목적 또는 동기	항공 수송 정책

스위스

분야	항공 운수
하위분야	보조 서비스
현행법령	공항 규정
유보내용	스위스는 EU 지침 96/97을 적용한다. 공항 당국은 영구적인 제한 또는 일시적 조치에 의해 특정 서비스를 위한 공급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지침 제20조는 호혜 조항을 포함한다.
목적 또는 동기	공항 기반시설을 위한 제한된 공간

부속서 V

제12조에 규정된 모든 EFTA 당사국의 유보

모든 EFTA 당사국들

분야	모든 분야
하위분야	-
현행법령	적용 불가능
유보내용	단체저작권 또는 인접 권리의 관리체계 언어적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하고 촉진시키기 위한 인세, 과세, 보조금 및 기금
목적 또는 동기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 공화국(이하 “아이슬란드”라 한다)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이하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이 이 협정의 서명일에 서명되었음을 상기하며,

이 협정이 자유무역협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문서의 일부를 구성함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협정은 다음 상품의 무역에 적용된다.

-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 체계(이하 “HS”라 한다) 제1류 내지 제24류로 분류되는 것으로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V 및 V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상품. 그리고
- 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II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상품

제 2 조 관세양허

1. 대한민국은 아이슬란드를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이 협정의 부속서 I에 규정된 대로 관세양허를 부여한다. 아이슬란드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이 협정의 부속서 II에 규정된 대로 관세양허를 부여한다.

2. 특혜 관세율이 이 부속서에 “B2”로 기재된 상품에 대하여, 관세율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첫 번째 단계가 시행되면서 동등한 6단계로 점진적으로

철폐되고, 후속 단계는 2007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매년도 1월 1일에 시행되며 2011년 1월 1일부터 완전 철폐된다.

제 3 조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1.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의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에 적용된다. 그 부속서에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 언급된 것은 아이슬란드를 언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의 제3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의 제2조에 불구하고, 이 협정의 의미 내에서 타방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는 당해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로 간주되며 그러한 재료가 그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충분한 공정 또는 가공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나, 공정 또는 가공은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의 제6조에 규정된 것 이상이어야 한다.

제 4 조 대화

양 당사국은 그들의 농산물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조사하며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5 조 추가적 자유화

양 당사국은, 당사국간 농산물 무역의 패턴, 그러한 상품의 특수한 민감성 및 양측 농업정책의 발전을 고려하여, 그들의 농산물 교역의 추가적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한다. 일방 당사국이 특정 상품

의 추가적 자유화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타방 당사국은 추가적 자유화를 협의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제 6 조 자유무역협정 규정

자유무역협정상의 다음 규정들은 양 당사국 간에 이 협정에 준용된다.

제1.2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9조·제2.11조·제2.12조·제2.13조·제10.1조 및 제9장

제 7 조 농업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농업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제 8 조 수출보조

일방 당사국이 제2조에 따라 관세양허의 대상이 되고 타방 당사국과 무역되는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보조를 도입하거나 재도입하는 경우, 타방 당사국은 그 시점에 발효되고 있는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까지 그러한 수입에 대하여 세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제 9 조 부속서

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10 조 개 정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합의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개정은 나중의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된다.

제 11 조 발 효

1. 이 협정은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양 당사국 간에 교환되어야 한다.
2. 이 협정은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 간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에 발효된다.

제 12 조 이 협정과 자유무역협정 간의 관계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양 당사국이 자유무역협정의 당사국으로 남아있는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들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12월 15일, 홍콩에서 영어본으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아이슬란드공화국을 대표하여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이하 “노르웨이”라 한다)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이하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이 이 협정의 서명일에 서명되었음을 상기하며,

이 협정이 자유무역협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문서의 일부를 구성함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적용범위

이 협정은 다음 상품의 무역에 적용된다.

-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 체계(이하 “HS”라 한다) 제1류 내지 제24류로 분류되는 것으로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V 및 V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상품. 그리고
- 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II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상품

제 2 조 관세양허

대한민국은 노르웨이를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이 협정의 부속서 I에 규정된 대로 관세양허를 부여한다. 노르웨이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이 협정의 부속서 II에 규정된 대로 관세양허를 부여한다.

제 3 조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1.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의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에 적용된다. 그 부속서에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 언급된 것은 노르웨이를 언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의 제3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의 제2조에 불구하고, 이 협정의 의미 내에서 타방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는 당해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로 간주되며 그러한 재료가 그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충분한 공정 또는 가공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나, 공정 또는 가공은 자유무역 협정 부속서 I의 제6조에 규정된 것 이상이어야 한다.

제 4 조

대 화

양 당사국은 그들의 농산물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조사하며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5 조

추가적 자유화

양 당사국은, 당사국 간 농산물 무역의 패턴, 그러한 상품의 특수한 민감성 및 양측 농업정책의 발전을 고려하여, 그들의 농산물 무역의 추가적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한다. 일방 당사국이 특정 상품의 추가적 자유화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타방 당사국은 추가적 자유화를 협의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제 6 조

자유무역협정 규정

자유무역협정상의 다음 규정들은 양 당사국 간에 이 협정에 준용된다.
제1.2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2.5조·제2.6조·제2.7조·제2.9
조·제2.11조·제2.12조·제2.13조·제10.1조 및 제9장

제 7 조 농업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농업에 관한 세계
무역기구협정상의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제 8 조 수출보조

일방 당사국이 제2조에 따라 관세양허의 대상이 되고 타방 당사국과 무
역되는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보조를 도입하거나 재도입하는 경우, 타방 당
사국은 그 시점에 발효되고 있는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까지 그러한 수입에
대하여 세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제 9 조 부속서

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10 조 개 정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합의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개정은 나중의 비준서·수
락서 또는 승인서의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된다.

제 11 조
발효

1. 이 협정은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양 당사국 간에 교환되어야 한다.
2. 이 협정은 대한민국과 노르웨이 간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에 발효된다.

제 12 조
이 협정과 자유무역협정 간의 관계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양 당사국이 자유무역협정의 당사국으로 남아있는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들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12월 15일, 홍콩에서 영어본으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노르웨이왕국을 대표하여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이하 “스위스”라 한다)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이하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이 이 협정의 서명일에 서명되었음을 상기하며,

이 협정이 자유무역협정 제2.1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문서의 일부를 구성함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적용범위

1. 이 협정은 다음 상품의 무역에 적용된다.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 체계(이하 “HS”라 한다) 제1류 내지 제24류로 분류되는 것으로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V 및 V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상품. 그리고

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II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상품

2. 이 협정은 「1923년 3월 29일의 스위스와 리히텐슈타인공국 간의 관세동맹조약」이 효력을 유지하는 동안, 리히텐슈타인공국에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 2 조 관세양허

1. 대한민국은 스위스를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이 협정의 부속서 I에 규정된 대로 관세양허를 부여한다. 스위스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농산물에 대하여 이 협정의 부속서 II에 규정된 대로 관세양허를 부여한다.

2. 특혜 관세율이 이 부속서에 “B4”로 기재된 상품에 대하여, 관세율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첫 번째 단계가 시행되면서 동등한 11단계로 점진적으로 철폐되고, 후속 단계는 2007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매년도 1월 1일에 시행되며 2016년 1월 1일부터 완전 철폐된다.

제 3 조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1.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의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는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에 적용된다. 그 부속서에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으로 언급된 것은 스위스를 언급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2. 이 협정의 목적상,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의 제3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의 제2조에 불구하고, 이 협정의 의미 내에서 타방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는 당해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로 간주되며 그러한 재료가 그 당사국의 영역 안에서 충분한 공정 또는 가공을 거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러나, 공정 또는 가공은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의 제6조에 규정된 것 이상이어야 한다.

제 4 조 대 화

양 당사국은 그들의 농산물 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조사하며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 5 조 추가적 자유화

양 당사국은, 당사국간 농산물 무역의 패턴, 그러한 상품의 특수한 민감성 및 양측 농업정책의 발전을 고려하여, 그들의 농산물 무역의 추가적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한다. 일방 당사국이 특정 상품의 추가적 자유화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타방 당사국은 추가적 자유화를 협의할 수 있는 적절한 기회를 제공한다.

제 6 조 자유무역협정 규정

자유무역협정상의 다음 규정들은 양 당사국 간에 이 협정에 준용된다.

제 1.2조·제 1.5조·제 1.6조·제 1.7조·제 2.5조·제 2.6조·제 2.7조·제 2.9조·제 2.11조·제 2.12조·제 2.13조·제 10.1조 및 제 9장

제 7 조 농업에 관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농업에 관한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한다.

제 8 조 수출보조

일방 당사국이 제2조에 따라 관세양허의 대상이 되고 타방 당사국과 무역되는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보조를 도입하거나 재도입하는 경우, 타방 당사국은 그 시점에 발효되고 있는 최혜국대우 실행관세율까지 그러한 수입에 대하여 세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제 9 조 부속서 및 부록

이 협정의 부속서 및 부록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10 조 개 정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합의할 수 있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개정은 나중에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의 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1일에 발효된다.

제 11 조 발 효

1. 이 협정은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서·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양 당사국 간에 교환되어야 한다.
2. 이 협정은 대한민국과 스위스 간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에 발효된다.

제 12 조 이 협정과 자유무역협정 간의 관계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양 당사국이 자유무역협정의 당사국으로 남아있는 동안 효력을 유지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들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12월 15일, 홍콩에서 영어본으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스위스연방을 대표하여

부속서 I의 부록

스위스 치즈

특혜 대우는 치즈가 첨부된 증명서 서식에 따라 적합한 정의에 정확하게 부합함을 증명하는 진품 증명서 제출을 필요로 한다.

가) 정의

이름 :	에멘탈* 또는 에멘탈러*(Emmental or Emmentaler)
모양 및 외관 :	프로피온산 발효를 통해 가공한 생우유로 만든 하드치즈임. 치즈덩어리는 단단한 황갈색 외피를 가짐. 습한 환경에서 저장된 치즈는 갈색에서 검은색에 이르는 색깔을 떨 수 있음.
높이 :	16 ~ 27 cm
지름 :	80 ~ 100 cm
무게 :	75 ~ 120 kg
질감 :	탄력적이고 접착력이 없는 덩어리로 작은 것부터 중간 사이즈에 이르는 구멍을 가짐.
색상 :	아이보리에서 황색에 이른다.
맛 :	약간의 신맛, 단맛, 짠맛, 향긋함.
특징 :	건조품의 지방함량 45 ~ 55 % 수분 함량 최대 38 %

이름 :	스브린츠*(Sbrinz)
모양 및 외관 :	생우유로 만든 하드치즈임. 치즈 덩어리는 둥글고 짙은 연노란색에서 금색을 가짐. 최소 16개월동안 숙성시킴.
높이 :	12 ~ 15 cm
지름 :	45 ~ 65 cm

* “스위스산” 문구가 덧붙을 수도 있다.

무게 :	25 ~ 45 kg				
질감 :	약간 탄력적인 덩어리로 조금 부서지기 쉬우며 접착력이 있음. 약간 건조하며 상당히 까칠까칠함.				
색상 :	아이보리에서 연노란색에 이른.				
맛 :	과일맛, 향긋함, 약간 구운맛, 짠맛, 약간 단맛, 과일향이 나는 구운 치커리로 맛이 강조되며 파인애플 맛을 연상시킴.				
특징 :	<table border="0"> <tr> <td>건조품의 지방함량</td> <td>약 45 %</td> </tr> <tr> <td>수분 함량</td> <td>약 35 %</td> </tr> </table>	건조품의 지방함량	약 45 %	수분 함량	약 35 %
건조품의 지방함량	약 45 %				
수분 함량	약 35 %				
이름 :	그뤼에르* 또는 그뤼에르 달파쥐*(Gruyere or Gruyere d'alpage)				
모양 및 외관 :	생우유로 만든 하드치즈임. 치즈덩어리는 흠이 없고 균일한 갈색을 띤 외피를 가짐. 모양은 균형이 잘 잡힘.				
높이 :	9 ~ 12 cm				
지름 :	50 ~ 65 cm				
무게 :	20 ~ 40 kg				
질감 :	표면은 부드럽고 조금 습하며 잘 부서짐.				
색상 :	아이보리에서 연노란색에 이른.				
맛 :	다소 짠맛이 남. 산 발효 과정과 저장실 숙성이 결합되어 약간의 과일 맛이 남.				
특징 :	<table border="0"> <tr> <td>건조품의 지방함량</td> <td>49 ~ 53 %</td> </tr> <tr> <td>수분 함량</td> <td>34 ~ 38 %</td> </tr> </table>	건조품의 지방함량	49 ~ 53 %	수분 함량	34 ~ 38 %
건조품의 지방함량	49 ~ 53 %				
수분 함량	34 ~ 38 %				
이름 :	전지 아펜젤러* 및 25% 아펜젤러*(Appenzeller full fat and Appenzeller $\frac{1}{4}$ fat)				
모양 및 외관 :	생우유로 만든 하드치즈임. 치즈덩어리는 저장소에서 숙성과정을 통한 황갈색 외피를 가짐.				
높이 :	6 ~ 9 cm				
지름 :	30 ~ 33 cm				

* “스위스산” 문구가 덧붙을 수도 있다.

b) 진품 증명서

첨부된 서식에 따른 진품 증명서는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위임한 기관에서 발행된다. 사후 확인요청서는 스위스연방농업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진품 증명서

1. 수출자(성명 및 주소)	아래 명시된 치즈 증명서 (HS 품목분류체계에 의한 코드번호)	
	일련번호	진품
2. 수하인(성명 및 주소)	3. 위임기관	
주석	4. 송장 번호 및 발행일자	
5. 화인과 수량-번호와 포장종류	6. 총 중량(kg)	
	7. 순 중량(kg)	
8. 위임기관 사증		
<p>위에 언급된 송장은 대한민국과 스위스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I의 부록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 명시된 스위스 치즈를 포함함을 증명한다.</p> <p>발행장소 및 발행일자 : 서명: 위임기관 직인(인장):</p>		
9. 대한민국 세관당국용		